월간

재정포럼 11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09년 11월호 제161호

현안분석 •
- 부담금 증가율 조절 및 연체 가산금제도에 대한 소론 / 정재호
- 일본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 원종학

주요국의 조세동향 • 미국 2009회계연도 예산실적 발표 외

정책흐름 • 08회계연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결산서 국회에 제출 외

KIP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9.11_vol.161

CONTENTS |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재정건전성과 조세정책 · 곽태원

현안분석
06 부담금 증가율 조절 및 연체 가산금제도에 대한 소론 · 정재호
23 일본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 · 원종학

주요국의 조세동향
37 미국 2009회계연도 예산실적 발표 외

정책흐름
44 08회계연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결산서 국회에 제출
57 2009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60 '09년 11월중 국고채 발행 · 조기상환 · 교환 계획 및 10월중 발행실적
62 복권기금, '10년 소외 · 취약계층에 7,600억원 지원
64 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조사결과
67 납세자와 함께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도입
70 e세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
73 어렵고 복잡한 세무문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재정통계
77 상속세 결정현황(2005~) 외

이슈 & 포커스
88 성장률 · 조세수입 전망 '들쭉날쭉' 외

권말부록
91 최근 5년간 『재정포럼』 총목차

월간 재정포럼 2009년 11월호 통권 제161호·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전화 02-2186-2130·3 **홈페이지** : www.kipf.re.kr

재정건전성과 조세정책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

작년 말이나 금년 초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벌써' 출구전략을 논의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도 청년일자리 문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서민생활도 여전히 힘든 것이 사실이다. 불황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업종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1930년대보다 더할 수도 있다던 공포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고 외환위기 때와 같은 구조조정의 태풍이나 노숙자 홍수 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은 채 우리 경제는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문 앞에 다다라 있는 것이다. 이 문턱을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다시 터널의 중심 쪽으로 빨려들어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출구전략이 거론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

출구전략의 요체는 위기 대응과정에서 과도하게 방출된 통화가 자산시장이나 상품시장에서 강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통화환수 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 재정 쪽에서는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위기 극복과정에서 대폭적인 지출증가로 적자기조의 재정운영이 불가피했는데 이와 같은 재정기조를 경기회복과 함께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수지의 문제이므로 세입과 세출의 상대적 크기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 규모의 문제이고 또 정부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본다.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인가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본질이라는 것이다. 큰 정부를 지향하기 시작하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단계에서는 수지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장기적으로 정부의 규모를 급속하게 크

게 할 수 있는 복지제도의 도입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효율의 요구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정부의 생산성을 높인다면 더 작은 지출로 공공재 수요를 채워줄 수 있다. 정부의 규모와 지출 내용, 그리고 운용의 효율성 등은 특히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경제성장잠재력은 재정운용의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을 결정해 주는 매우 근본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건전한 재정의 바탕이 되는 것은 건강한 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GDP가 커지면 더 큰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있다.

조세정책은 재정수입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재정건전성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핵심요소이지만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중요변수들, 즉 규모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그리고 성장잠재력 등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의 생산성을 높인다면 더 작은 지출로 공공재 수요를 채워줄 수 있다. 정부의 규모와 지출 내용, 그리고 운용의 효율성 등은 특히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효율적인 조세는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요인

조세가 재정규모나 운영효율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지출의 편익과 납세자들의 부담이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지출의 규모가 커지고 납세자들에 의한 지출 내용에 대한 감시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능력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현대 조세에서 지출의 편익과 세금 부담 간에 직접적인 연결이 설정되기는 어렵지만 정부지출의 증가가 다수의 납세자들의 부담증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소득세 납세자 비율이 매우 낮다면 공공재의 내용에 상관없이 그러한 공공재의 공급이 증가할 때 순편익이 늘어나는 투표자들의 비율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우에도 새로운 지출의 증가가 주민들의 세부담 증가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지출이 방만해질 것이라는 점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조세의 이런 요소들은 재정의 규모뿐 아니라 재정운용의 효율성과도 관련을 가지고 있다. 목적세가 많은 것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규모의 팽창을 억제하는 데 수입 측면의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조세는 그 자체의 효율성에 의해서도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효율적인 조세로는 같은 베이스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장잠재력에 중요한

지출의 과감한 축소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차제에 지출 내용의 최적성에 관한 검토는 더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효율적인 조세가 가져다주는 사회적인 부담은 대체로 자원배분의 왜곡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요인이 된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경제가 완전하게 개방된 상황에서는 잘못된 조세정책으로 자본이나 고급인력 등 중요한 생산요소를 국외로 밀어내어서 성장잠재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같은 내국세이지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국제경쟁력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국경조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만 법인세는 국경조정이 허용되지 않고 있고 허용된다고 해도 간단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세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추진되어야

최근의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는 지출을 어떤 속도로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줄여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아울러서 내년에 이루어질 추가감세계획의 유보 여부 문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출의 과감한 축소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이루어졌던 지출확대는 처음부터 임시성을 강조했던 것이고 위기를 벗어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제에 지출 내용의 최적성에 관한 검토는 더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법인세의 감세계획은 그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인세는 성장잠재력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세이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회복되는 경기와 맞물려 기업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해 준다면 고용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빈곤율의 저하와 분배의 개선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KIPF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안분석

■ **부담금 증가율 조절 및 연체 가산금제도에 대한 소론**
정재호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일본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
원종학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부담금 증가율 조절 및 연체 가산금제도에 대한 소론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jcheung@kipf.re.kr)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법적으로 관리되는 부담금 개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부담금 징수실적은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전까지 부담금 징수실적은 약 4조원이었으나 2008년 부담금 징수실적은 약 15조원에 달한다.

Ⅰ. 서론

우리나라의 부담금 제도는 1990년 이후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전체 부담금 수를 보면 1980년대 34개에서 1990년대 95개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도입하여 부담금을 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법적으로 관리되는 부담금 수는 2001년 이후 100~102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3년과 2006년에 실시된 부담금운용평가 결과에 의해 몇몇 부담금이 폐지되었지만, 그만큼의 새로운 부담금이 신설되어 전체적인 부담금 개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부담금 개수와는 달리 부담금 징수실적은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전까지 부담금 징수실적은 약 4조원이었으나 2008년 부담금 징수실적은 약 15조원에 달한다. 이런 부담금 징수규모는 GDP 대비 2000년 0.75%에서 2007년 1.6%로 약 2배 증가하였고, 국세 대비 규모도 2000년 4.5%에서 2008년 약 9%로 역시 약 2배 증가하였다.

조세와 부담금은 개념적으로 엄격히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하고 구체적인 관계가 있는 원인자(또는 수혜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의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무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과하지만 조세는 국가 일반사업을 위해

부과하며, 부담금은 특별하고 구체적인 관계가 있는 원인자(또는 수혜자)에게 부과하지만 조세는 일반국민에게 부과한다. 또한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소요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조세는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한다. 이런 차이 등으로 부담금과 조세가 구별된다. 따라서 부담금 징수 금액을 모두 국민의 조세부담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손괴자부담금의 경우 손괴자가 해당 부담액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연하다.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해당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조세부담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하고 구체적인 관계가 있는 원인자(또는 수혜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의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부담금 중에는 조세와 부담금의 중간적 위치에 있어 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현재 부담금 중에서 부과목적이 광범위하여 특정성이 떨어지고, 부과 대상자와 해당 공익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해당 목적사업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조세와 부담금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부담금을 준조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준조세 또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기준이 없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모호하다.

본고에서는 부담금 규모의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향후 부담금 증가율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개별 부담금별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개념적으로 가장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부담금 징수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고려해 보고자 한다. 현재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담금 연체에 따른 가산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부담금별로 다양한 가산금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가산금제도가 미비한 부담금도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보다도 가중되게 가산금이 부과되는 부담금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였다.

Ⅱ. 부담금 징수

1. 부담금 징수액 추이

부담금은 1961년에 도로 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대공사비용부담금, 손괴자부담금 및 산림사업에 따른 보안림수익자부담금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60~1970년대에는 부담금 신설이 많지 않았

신설된 부담금들을 살펴보면,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00년 이후에 신설된 총 41개 부담금 중 68.3%인 28개가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에 해당된다.

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부담금이 증가하여 총 20개의 부담금이 추가로 설치되었고, 1990년대에는 62개의 부담금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었다.

〈표 1〉 연도별 부담금 수 추이(2000년 이전)

(단위: 개)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부담금수	7	14	34	95
증가	7	7	20	62
감소	–	–	–	1

자료: 기획재정부(2009a)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도입된 이후인 2002년부터는 부담금이 약 10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3년과 2006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에 의해 상당수의 부담금이 폐지되었지만, 그만큼의 부담금이 새로이 신설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03~2004년에 신설된 부담금은 8개, 폐지된 부담금은 8개이며, 2006~2007년 기간 동안에는 신설된 부담금은 14개, 폐지된 부담금은 14개였다.

〈표 2〉 연도별 부담금 수 추이

(단위: 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부담금수	98	101	102	100	102	102	100	102	101
증가	3	12	2	6	2	1	6	8	1
감소	–	9	1	8	–	1	8	6	2

자료: 기획재정부(2009a)

신설된 부담금들을 살펴보면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건설 및 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담금의 신설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 이후에 신설된 총 41개 부담금 중 68.3%인 28개가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에 해당된다.

부담금 징수실적 증가율은 200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2007년 잠시 상승하였다가 2008년에는 다시 하락하였다.

〈표 3〉 신설된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 추이

(단위: 개, %)

	합 계	1960~1989	1990~1999	2000~2008
총 신설된 부담금(A)	128	34	62	41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B)	68	15	29	28
• 환경부	25	5	12	11
• 건설교통부	32	10	14	8
• 타 부처	11	–	3	9
기타 부담금	60	19	33	13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신설 부담금비율(B/A)	53.1	44.1	46.8	68.3

자료: 기획재정부(2009a)

전체적인 부담금 개수에는 2001년 이후 약 100여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징수실적은 증가하고 있다. 2000년까지의 부담금 징수실적은 약 4조원이었으나, 2008년의 부담금 징수실적은 약 15조원에 이른다.

[그림 1] 연도별 부담금 징수실적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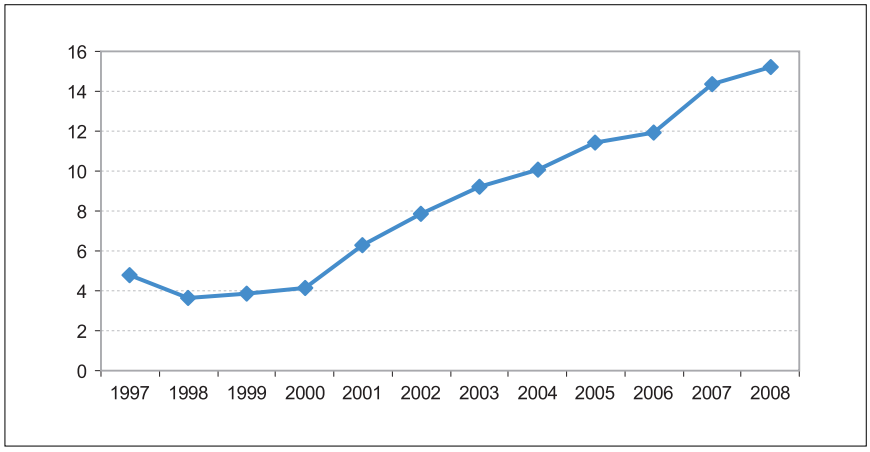

부담금 징수실적 증가율은 200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2007년 잠시 상승하였다가 2008년에는 다시 하락하였다. 2001년에는 IMT-2000 출연금(1.3조원),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신설 등으로 부담금 징수 증가율이 51%에 이르렀다. 이후 2006년까지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07년에 다시 증가했다. 2007년의 증가는 주로 농지 및 산지 전용면적 증가, 건설관련 부담금 등 개발관련

국세 수입을 기준으로 부담금 규모는 2000년 국세 대비 4.5%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9% 수준으로 약 2배 정도 상승하였다.

부담금 증가에 기인한다. 2007년 소관 부처별 부담금 증가율을 보아도 농림부 66.6%, 건교부 50.6%, 산림청 27.2% 등의 증가율이 높다.

[그림 2] 전년 대비 부담금 징수실적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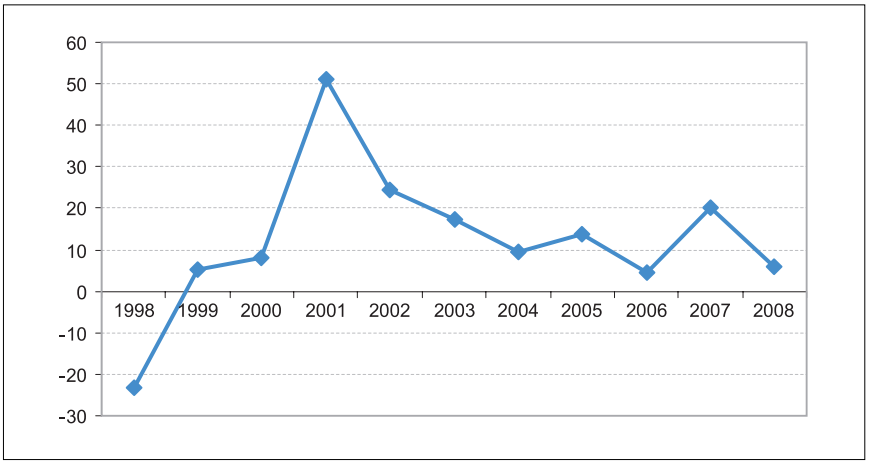

국세 수입을 기준으로 부담금 규모는 2000년 국세 대비 4.5%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9% 수준으로 약 2배 정도 상승하였다. 최근 3~4년간 부담금 징수 규모는 국세 수입 대비 약 9%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연도별 국세대비 부담금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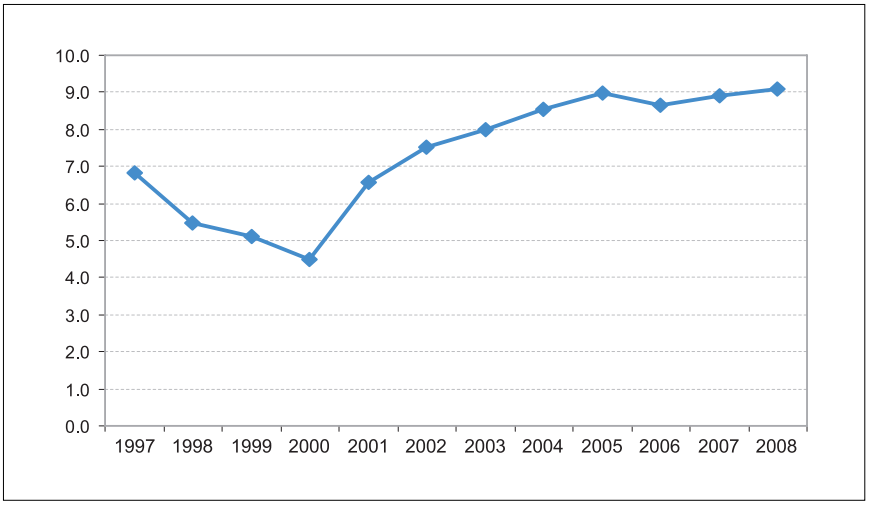

부담금 규모 15조원은 국세 수입의 3대 세목(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부담금 규모 15조원은 국세 수입의 3대 세목(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국세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약 44조원), 법인세(약 39조원), 소득세(약 36조원)의 3가지 세목이 국세수입의 약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밖에 주요 세목인 교통세 11.9조원, 관세 8.8조원, 개별소비세 4.5조원, 교육세 4.2조원 순으로 국세수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담금 규모 15조원은 이들 세목의 세수입보다 크다.

[그림 4] 주요 세목별 수입과 부담금 규모 비교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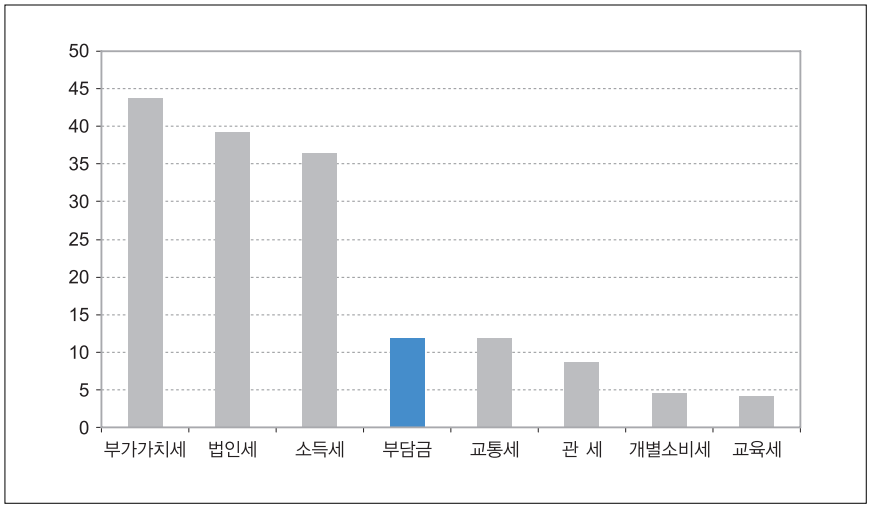

또한 부담금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담금 규모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말까지는 약 0.75% 수준이었으나 부담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GDP 대비 약 1.6% 수준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부담금을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각각 24개, 23개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림 5] 연도별 GDP 대비 부담금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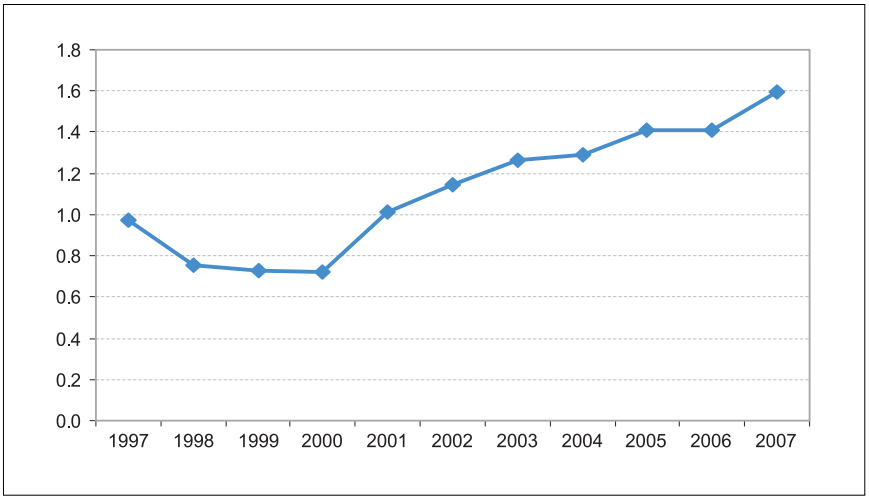

2. 부처별 징수실적

부담금을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각각 24개, 23개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신설된 부담금 중에서도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 11개, 지식경제부 10개, 금융위원회 8개 등 총 16개 부처가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표 4〉 부처별 부담금 수

(단위: 개)

합 계	국토 해양부	환경부	농림 수산 식품부	지식 경제부	금융 위원회	문화 체육 관광부	산림청	교육 과학 기술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 가족부 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101	24	23	11	10	8	6	5	3	각 2	각 1

자료: 기획재정부(2009a)

2008년 기준 부처별 징수금액은, 지식경제부가 가장 많은 3조 5,472억원으로서 전체 징수실적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금융위원회가 2조 6,105억원으로 17.1%를, 환경부가 2조 2,491원으로 15.9%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외교통상부와 소방방재청은 각각 626억원, 516억원, 35억원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징수실적 상위 5개 부처의 부담금 총액은 11조 7,535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76.9%를 차지한다.

징수실적 상위 5개 부처(지식경제부 · 금융위원회 · 환경부 · 보건복지가족부 · 농림수산식품부)의 부담금 총액은 11조 7,535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76.9%를 차지한다. 반면에 징수실적 하위 5개 부처(소방방재청 · 외교통상부 · 중소기업청 · 행정자치부 · 방송통신위원회)의 부담금 총액은 3,884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2008)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금액	구성비	소관부처	금액	구성비
지식경제부	3,547,217	23.2	교육인적자원부	355,761	2.3
금융위원회	2,610,482	17.1	노동부	249,619	1.6
환경부	2,432,327	15.9	방송통신위원회	157,378	1.0
보건복지가족부	1,636,923	10.7	행정안전부	113,308	0.7
농림수산식품부	1,526,573	10.0	중소기업청	62,585	0.4
산림청	1,193,903	7.8	외교통상부	51,631	0.3
국토해양부	965,327	6.3	소방방재청	3,486	0.02
문화체육관광부	371,473	2.4	기획재정부	–	–
합계	15,277,993	100.0			

자료: 기획재정부(2009a)

3. 징수실적 상위 부담금

2008년 기준 부담금 징수실적 상위 10개 부담금의 징수규모는 약 10조원이며 전체 부담금의 약 66.4%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15개까지의 부담금 징수규모는 전체 부담금의 약 76.0% 차지하고, 상위 20개 부담금의 징수규모는 전체 부담금의 약 81.4%를 차지한다.

2008년 기준 부담금 징수실적 상위 10개 부담금의 징수규모는 약 10조원이며 전체 부담금의 약 66.4%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2008년 징수실적 상위 20개 부담금

(단위: 백만원, %)

	부담금	금 액	구성비
지식경제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	1,882,968	12.3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636,923	10.7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1,412,643	9.2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1,110,614	7.3
산림청	산림복구비용예치금	1,034,048	6.8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779,336	5.1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747,159	4.9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624,515	4.1
환경부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478,289	3.1
금융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37,873	2.9
금융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30,633	2.8
환경부	물이용부담금(한강)	386,266	2.5
지식경제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250,149	1.6
환경부	원인자부담금(수도법)	218,168	1.4
환경부	물이용부담금(낙동강)	186,040	1.2
지식경제부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182,650	1.2
교육인적자원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171,532	1.1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160,086	1.0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157,378	1.0
국토해양부	과밀부담금	155,821	1.0

〈표 7〉 상위 20개 부담금의 부처별 징수실적

(단위: 십억원, %)

소관부처	금 액	구성비	소관부처	금 액	구성비
지식경제부(4)	3,426	22.4	방송통신위원회(1)	157	1.0
금융위원회(5)	2,555	16.7	문화체육관광부	–	–
환경부(5)	1,893	12.4	노동부	–	–
보건복지부(1)	1,637	10.7	행정자치부	–	–
농림수산식품부(1)	1,413	9.2	중소기업청	–	–
산림청(1)	1,034	6.8	기획재정부	–	–
국토해양부(1)	156	1.0	외교통상부	–	–
교육인적자원부(1)	172	1.1	소방방재청	–	–
합 계	12,443	81.4			

Ⅲ. 부담금 증가율 조절방안 검토

1. 조절 방안들

향후 부담금 증가규모를 조절하는 방안으로 부담금 부담의 상한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부담금 증가율을 조절하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기간별 구분이다. 기간별 구분에는 연도별로 부담금 증가율을 조절하는 방안과 일정기간(예를 들어 3년 또는 중기재정계획 설정기간인 5년) 동안 조절하는 방안이 있다. 매년 불규칙한 요인 또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부담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연도별로 조절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기간은 3년 혹은 중기재정계획 기간인 5년을 고려할 수 있다. 3~5년의 기간을 설정한다면 개별 부담금별로도 중기 목표를 가지고 부담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부담금 증가율 상한을 국세수입증가율로 설정하는 방안과 국세수입 증가율의 일정비율(예를 들어 80~90%)로 설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안들은 결국 장기적으로 부담금 증가율이 국세수입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방안이다. 국세수입 증가율은 예를 들어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하는 5년간 연평균 총국세수입 증가율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셋째는 부담금별로 구분하는 방안으로 개별 부담금별로 조절하는 방안과 소관 부처별로 조절하는 방안이 있다. 소관 부처별로 조절할 경우의 장점은 부처별로 소관 부담금 사업의 경중에 따라 부과요율을 조정할 수 있고, 혹은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부처가 자율적으로 부담금관련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안을 종합해보면, 일정기간 예를 들어 3~5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국세수입 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부담금 증가율을 설정하고 소관 부처별로 부담금 증가율을 조절하여 소관 부처가 해당 부담금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2. 고려해야 할 문제점

부담금 증가율을 조절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안을 종합해보면, 일정기간 예를 들어 3~5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국세수입 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부담금 증가율을 설정하고, 소관 부처별로 부담금 증가율을 조절하여 소관 부처가 해당 부담금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부담금 증가율을 조절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첫째, 부담금 중 예치금, 보증금은 증가율 조절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 예치금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이행 등을 전제로 이를 수행할 경우 예치금을 반환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예치금을 이용하여 해당 사업을 이행하는 제도로 예치금액이 인하되면 사업 이행의 인센티브가 작아져 사업 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예치금에는 농지복구비용예치금, 원상회복예치금, 복구예치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이 있다. 현재 예치금 자체를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둘째,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증가율 조절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괴자부담금의 경우 손괴자가 해당 부담액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연하며, 원인자(하수도, 상수도, 사방사업)부담금, 부대공사비용부담금,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전기사용자 부담금 등의 부담금은 공사비로서 일방적으로 낮출 경우 공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실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금 중 대부분은 징수금액이 없거나 적고, 혹은 증가율이 낮아, 증가율 조절대상에 포함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부대공사비용부담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사방사업법) 등은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이 없어 부담금평가단에서 폐지를 제안하였고, 전기사용자 부담금은 수수료 전환을 제안하였다. 건설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은 징수규모가 2000년 초 약 1천억원에서 2007년 약 2천억원, 2008년 2,500억원으로 최근 급증하였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소관 부담금 총액이 3.5조원으로 집단에너지 공사비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여 증가율 조절대상에 포함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환경부 소관 부담금 중 원인자부담금(수도법, 하수도법)은 환경부 부담금징수액 2.4조원의 각각 9%와 20%를 차지하고 있다[1]. 이 부담금도 건설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해당 원인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증가율 조절대상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담금 증가율 조정을 위해 매년 부과요율을 조정할 경우 부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동일인이 매년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새롭게 건별로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연도별로 부과요율이 달라짐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5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고 부처가 계획을 가지고 부담금을 운용한다면 부과요율을 매년 큰 폭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비권장 재화인 담배, 카지노 등의 수요가 급증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

1) 원인자부담금(수도법)과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의 2008년 징수규모는 각각 약 2,2천억원과 약 4.8천억원이다.

금, 카지노사업자부담금 등의 부과요율을 낮춰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건강증진부담금, 카지노사업자부담금 등 사회적으로 권장되지 않은 비권장 재화(demerit goods)에 대해 부과요율을 낮출 명분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를 통해 이들 비권장 재화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부처 입장에서도 이들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유지하면서 조세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 인상을 제안(찬성)할 것으로 여겨진다. 5년 동안 부담금 증가율을 조정할 경우 조세를 통한 이들 재화에 대한 수요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대안으로 부담금의 부과요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부과요율을 인하하고 조세를 인상함으로써 조세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들 부담금은 조세로의 전환이 바람직하고, 부과대상에 대해 부담금과 조세가 중복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세와 통합하여 조세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다.

부담금 증가율 조정을 위해 매년 부과요율을 조정할 경우 부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다섯째, 부담금 증가율 상한에 국가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하는 5년간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을 사용할 경우, 우선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하는 5년간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은 단순 계획치이고 실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부담금 징수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계획치와 실적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항력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치인 증가율을 염두에 두고 부담금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담금 증가율을 조절하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방법이 모호하다.

Ⅳ. 연체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1. 부담금의 가산금제도 현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들로부터 부과되는 조세, 사회보험료,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일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또는 연체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가산금 또는 연체료는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로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진다. 즉,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규정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체납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이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세금의 1.2%를 중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부담금 연체에 대한 가산금/연체료 부과방식은 개별 부담금별로 매우 다양하다. 우선 가산금 등과 관련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부담금도 50개 있다.

부담금 연체에 대한 가산금/연체료 부과방식은 개별 부담금별로 매우 다양하다. 우선 가산금 등과 관련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부담금도 50개 있다. 국세나 지방세와 유사하게 3%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부담금이 11개가 존재하며 이 중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언급한 부담금은 6개로 이들 부담금만이 국세나 지방세 관련 규정(국세징수법)을 준용해서 운용하고 있다. 반면, 국세나 지방세보다 높은 5%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부담금이 22개이고 이 중 추가적으로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언급한 부담금 3개이다. 이 밖에 다양한 형태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부담금이 18개로 조사되었으며, 연체금/가산금은 없으나 납부지연기간에 따라 징수수수료 요율(부가금액의 2%)을 감액 징수하는 부담금(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도 있다.

〈표 8〉 부담금의 가산금/연체료 유형

(단위: 개)

가산금/연체료 유형	부담금 개수
관련규정 없음	50
가산금/연체료 요율 3%	15(7)
가산금/연체료 요율 5%	18(2)
기타	18

주: ( ) 안은 중가산금 제도가 있는 부담금

[그림 6] 가산금/연체료 유형별 부담금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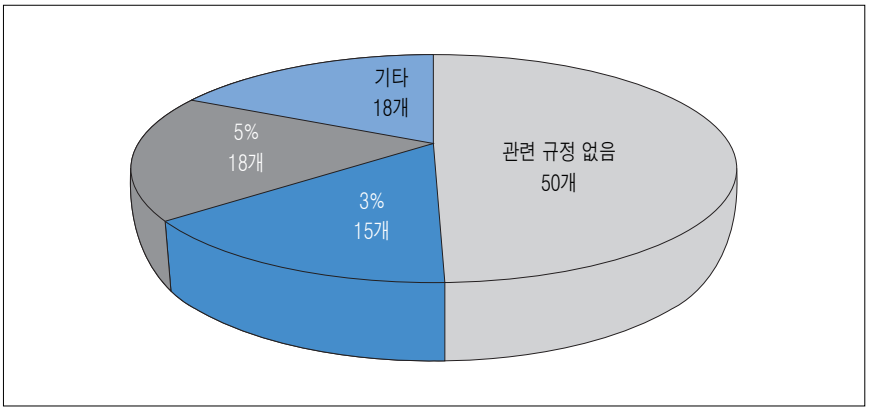

〈표 9〉 기타 유형(부담금의 가산금/연체료)

(단위: 개)

가산금/연체료 유형	개수	부담금 명칭
10%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0.03%/1일 (약 11%/1년)	1	석유및석유대체 연료 수입 판매부과금
– 보문단지: 연체기간 1월 미만 연12%, 1~3월 연13%, 3~6월 연14%, 6월 이상 연15% – 중문단지: 한국관광공사 주거래은행 연체율	1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과태료 : 미납 금액의 1.2배(최고 1,000만원)	1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독촉기간 3개월 이내 3%, 3~6개월 4%, 6개월 이상 5%	1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연체금 : 체납된 금액의 1.2% 중가산금 1.2% 가산금 : 부담금의 10%	2	장애인고용부담금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미납액×연체이자율×납부지연일수/365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부과원금×연체일수/365×기금 연체대출금리	1	대체초지조성비
연체금/가산금은 없으나 납부지연기간에 따라 징수 수수료율(2%) 감액징수 : 1~30일 10%, 31~60일 20%, 61일 이상 30%	1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 부가금
0.05%/1일(5% 범위 내 에서)	1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 1월 이하 : 1.5%/1일 – 1월~2월 미만: 1월 이하의 가산금+1%/1일 – 2월 이상: 부담금의 2.5% (최대 5%)	1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시장별로 0 또는 5%	1	쓰레기유발부담금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감안	1	재건축부담금
회사별로 상이: 은행 일반대출 평균연체율 등	1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수익자분담금
과태료(자치단체별로 상이(5배 이내))	1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과태료(위반차량)	1	혼잡통행료
과태료(이행보증 미납 시 허가 취소)	1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합 계	18	

기타 다양한 형태의 가산금/연체료 중에는 매우 높은 연체요율을 적용하는 부담금도 있다.

기타 다양한 형태의 가산금/연체료 중에는 매우 높은 연체요율을 적용하는 부담금도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영화상영관입장부과금은 미납금액의 1.2배(1,000만원 한도)를 부과하고,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 15%의 가산금을 적용하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은 0.03%/1일로 연이율이 약 11% 정도이며, 징수실적은 약 1.8조원으로, 부담금 중 징수규모가 가장 크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0%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연체료 수준을 국세나 지방세 수준보다 높지 않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를 적용하고, 징수규모는 약 1.6조원으로 부담금 중 징수규모가 2번째로 크다. 그밖에 은행의 시중금리, 연체대출금리 등과 연계시킨 경우와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해 다양하게 정해진 경우 등의 경우가 있다. 이 외에도 가산금이 연체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부담금도 있다.

2. 제안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연체료 수준을 국세나 지방세 수준보다 높지 않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소요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조세는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담세능력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담세능력을 고려한 국민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금보다 더 높게 부과될 이유는 적다고 생각한다.

연체요율이 3%를 초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체요율을 국세/지방세의 연체요율에 근거하여 3%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개별 부담금별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연체요율이 정해져 있어 수평적 형평성을 감안하여 국세/지방세의 연체요율을 근거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세징수법에서 명시하는 중가산금제도는 부담금의 성격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세의 가산금보다 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한 부담을 높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현재 중가산금제도가 없는 부담금에 새롭게 중가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향후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부담금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납부기한을 하루만 넘기더라도 3% 이상의 가산금/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체 일수에 비례하게 연체요율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체 일수에 비례하게 연체요율을 설정할 경우 3%/개월에 근거하여 0.1%/일을 넘지 않게 설정할 수 있으며, 가산금의 최대한도는 국세징수법의 중가산금 제도에 근거하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산금이 연체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부담금을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대체초지조성비,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근거법에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근거규정이 없는 부담금의 대부분은 현재까지 운영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경우가 없어 가산금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가산금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산금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납부기한을 하루만 넘기더라도 3% 이상의 가산금/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체 일수에 비례하게 연체요율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부담금 징수규모가 증가하여 부담금 징수의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고민 속에서 개별 부담금별 평가에 의한 부담금 징수규모 조절에 한계가 있다면, 부담금 증가율 조절을 하나의 차선책으로 제안하였다. 현재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본고의 이런 제안은 제도를 당장 실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본고의 제안을 통해 향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제도를 검토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부담금 증가율 조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국세 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을 설정하여 부처별로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해보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 각종 예치금에 대하여는 조절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부과요율 변화에 따른 부과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야 하며, 비권장 재화의 수요가 급증하여 부과요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를 통해 이들 비권장 재화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부담금 연체에 대한 가산금/연체료 수준은 국세나 지방세 수준보다 높지 않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담금 연체에 대한 가산금이 국민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금보다 더 높게 부과될 이유는 적다고 생각한다. 연체 일수에 비례하게 연체요율 설정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연체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그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부담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중장기 부담금 증가율을 관리하고, 부과목적 및 지출소요 등에 비해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과 징수액 증가율이 큰 부담금은 부과요율 인하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2].

2) 기획재정부(2009b)

정부에서도 부담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지고 있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0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기획재정부, 2009a.
기획재정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2009b.

일본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jweon@kipf.re.kr)

Ⅰ. 서론

2009년 8월 30일 일본의 중의원 선거 결과 야당이던 민주당의 의석수가 115석에서 304석으로 200석 가까이 늘어 제1당으로 부상하면서 집권당이 되었다. 선거 전 300석에 달했던 자민당의 의석수는 115석으로 1/3 수준으로 떨어졌고,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형성하고 있는 공명당도 31석에서 20석으로 1/3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번 선거로 1955년 이후 지속되어 온 자민당 정권이 54년 만에 실질적으로 붕괴되었다. 지난 1993년에도 자민당을 탈당한 의원들과 야당이 연합하여 정권을 획득한 적이 있으나, 당시 자민당 의석수는 과반수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여서 자민당은 공명당과 연합정권을 형성하면서 1년여 만에 다시 정권을 되찾았다.

2009년 8월 30일 일본의 중의원 선거 결과 야당이던 민주당의 의석수가 115석에서 304석으로 200석 가까이 늘어 제1당으로 부상하면서 집권당이 되었다.

〈표 1〉 중의원 선거 결과

(단위: 석)

	선거 전	선거 후
자민당	300	115
공명당	31	20
민주당	115	304
사민당	7	6
국민당	4	3
일본당	0	1

하토야마 정권은 '5원칙 5책'으로써 추구하는 개혁방향 및 정부운영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중의원은 총 480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240석이 과반수이고, 안정다수 252석, 절대안정다수 269석이 되며 개헌논의가 가능한 재적의원 2/3는 320석이다. 8 · 30 선거 결과만 본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절대안정다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선거 전 사민당, 국민당, 일본당 등과 연립정권을 형성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4당 연합체제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Ⅱ. 민주당의 정책구상(Manifesto)

가. 기본방침

하토야마(鳩山由起夫, Hatoyama Yukio) 정권은 '5원칙 5책'으로써 추구하는 개혁방향 및 정부운영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이 추구하는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5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관료에게 전부 맡기는 정치에서 집권당이 책임을 지는 정치가 주도의 정치로

② 정부와 여당으로 분리된 이원체제로부터 내각이 정책결정을 하는 일원화 체제로

③ 각 부처의 칸막이식 부처이익으로부터 수상관저 주도의 국익으로

④ 종적인 이권 사회로부터 횡적인 연대 강화 사회로

⑤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정부운영의 기본틀을 제시한 5책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에 장관, 차관, 정무관(이상 정무3역), 장관보좌관 등 국회의원 약 100명을 배속시키고, 정무3역이 주축이 되어 정치주도로 정책을 입안, 정리, 결정한다.

② 각 장관은 각 부처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내각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관료위원회'를 활용하여 각료를 필두로 정치가 스스로 곤란한 과제를 조정한다. '사무차관회의'는 폐지하고 의사결정은 정치가가 내린다.

③ 수상관저 기능을 강화하고,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국'을 설치하여 관민 협력하에 우수한 인재를 집결하여 신시대 국가 비전을 만들고, 정치 주도로 예산의 골격을 짠다.

④ 사무차관, 국장 등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정치 주도하에 업적평가에 근거하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확립한다. 정부에서 간부직원의 행동 규범을 정한다.

⑤ 낙하산 인사, 민간기업 취업 알선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 전반을 재검토하는 '행정쇄신회의'를 설치하고, 모든 예산이나 제도에 대한 정밀검사(精査)를 실시함으로써 낭비와 부정을 방지한다. 관 · 민, 중앙 · 지방의 역할분담에 관해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국가행정조직법을 개정하여 부처 편성을 기동적(機動的)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집권당이 된 민주당의 새로운 주요 의사결정기구로는 국가전략국, 각료위원회, 행정쇄신회의 그리고 행정부에 배속된 100여명의 국회의원을 들 수 있다.

[그림 1] 민주당의 정권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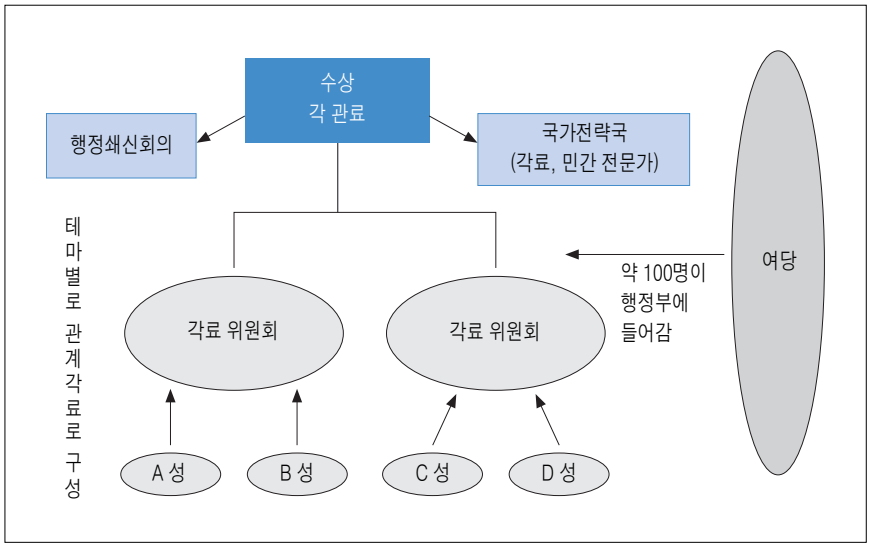

집권당이 된 민주당의 새로운 주요 의사결정기구로는 국가전략국, 각료위원회, 행정쇄신회의 그리고 행정부에 배속된 100여명의 국회의원을 들 수 있다([그림 1] 참조).

이 중 국가전략국은 예산의 기본 틀이나 외교방침을 결정하는 수상직속기관으로서 재무성은 국가전략국이 정한 골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이외에도 국가전략국에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자치체 대표자의 참가를 요청하여 국가 비전을 수립하는 기능도 맡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은 총예산 207조엔을 철저히 효율화하여 불필요한 지출, 불요불급한 사업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료위원회는 각료회의에 앞서 관계각료들이 중요 안건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복수의 부처에 걸친 과제 또는 정책에 대해 각 사안별로 정치가가 조정을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구의 신설로 각료회의 안건을 사전에 정하는 사무차관회의는 폐지되었다.

행정쇄신회의에서는 모든 예산 및 제도에 대한 정밀조사를 담당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부처별 칸막이식 행정의 시정과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삭감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한다. 정부의 정책 · 지출 전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부 의견도 참조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며, 불필요한 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철저히 배제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행정부에 들어간 여당 의원들은 각각 장관, 차관, 정무관이나 장관보좌관 직위에 임명된다. 각 부처의 정책은 장관 · 차관 · 정무관을 통칭하는 정무3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입안, 결정되는데 이는 민주당이 천명한 5원칙에 나타나듯 정부와 여당의 일원화를 추진하여 정치 주도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주요 정책 내용

1) 예산 · 세출

예산 · 세출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 총예산 207조엔을 전면적으로 재정립
② 세금의 불필요한 지출과 낙하산 인사 근절
③ 국회의원의 세습과 기업단체헌금 금지
④ 중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80명 삭감
⑤ 특별회계, 독립행정법인, 공익법인의 업무를 철저히 재검증
⑥ 관제담합과 불투명한 수의계약의 일소
⑦ 국가공무원 총인건비 20% 삭감
⑧ 중앙이 지방에 사용처를 지정하는 '조건부 보조금'의 폐지

예산 및 세출에 관한 주요 정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토야마 정권은 총예산 207조엔을 철저히 효율화하여 불필요한 지출, 불요불급한 사업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듯 민주당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은 뒤에서 설명할 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재원확보 방안 가운데 하나로 우선 공공사업, 인건비, 보조금 등에 대한 예산을

정밀하게 재검증할 경우 2009년도 예산에서 9.1조엔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매장금(埋藏金, Maizoukin)[1]' 이나 정부 자산의 계획적인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2009년도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 난립한 기금,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 외국환율자금 특별회계 운용익(양 특별회계에서 5조엔: 2008년도 전망) 등의 일부를 정책경비로 충당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한편, 조세특별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효과가 미약한 것, 역할이 종료된 것은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제에서 수당으로의 전환을 위해 소득세의 배우자공제, 부양공제를 폐지하고 '자녀수당' 을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의 정책을 모두 실현할 경우 2013년까지 16.8조엔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이를 적게 낳는 이른바 소자화(小子化) 현상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출산시 55만엔의 일시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2) 양육 · 교육

민주당은 아이를 적게 낳는 이른바 소자화(小子化) 현상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출산시 55만엔의 일시금을 지급(2009년 10월 현재 42만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2011년부터 아동 1인당 연 31만 2천엔(월 26,000엔)의 '자녀수당' 을 중학교 졸업 때까지 15년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2010년에는 우선 그 절반인 1만 3천엔이 매월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덧붙여 공립고교생에게는 수업료를 무상화하고,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12만엔을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방안도 발표하였다. 부모의 수입이 연간 50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그 두 배인 24만엔을 지원한다. 대학생, 전문학교생에 대해서는 희망자 전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학금제도의 창설을 계획 중이다.

그 밖에도 생활보호수당에 대한 모자(母子) 가산을 부활하는 한편 부자(父子) 가정에도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빈 교실 등을 활용하여 보육원 수를 늘림으로써 대기 아동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3) 연금 · 의료

향후 2년 간 '사라진 연금', '지워진 연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납부한 보험료, 수급 연금액을 언

1) 일본정부의 특별회계 잉여금이나 적립금을 속칭하여 매장금이라고 한다.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라는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은 외교 · 안전보장 등에 특화하고 지방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은 지방으로의 이전이 추진된다.

제든 확인할 수 있는 '연금통장'을 전 가입자에게 교부하고 연금 보험료의 유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연금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월 7만엔의 최저보장연금을 실현하고자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는 폐지하되 국민개보험은 유지할 방침이다. 2008년 6월에 도입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데 이로 인한 부담은 국가 5, 기존세대 4, 고령자 본인 1의 수준으로 고령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08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정책이다.

이외에도 의료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의대생을 1.5배 늘려 의사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의 증원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이들의 급여를 월 4만엔 인상함으로써 돌봄 분야의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4) 지역주권: 지역재생정책

하토야마 정권이 표방한 5원칙 중 하나인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라는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은 외교 · 안전보장 등에 특화하고 지방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은 지방으로의 이전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조건부 보조금(사회보장 · 의무교육 관련 제외)'을 폐지하고 지방의 자주재원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중앙정부 직할 사업에 대한 지방의 부담금도 폐지한다.

휘발유세, 경유거래세, 자동차중량세, 자동차취득세 등의 잠정세율 폐지를 통하여 2.5조엔 규모의 감세를 단행한다. 2012년 완전 실시를 목표로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의 무료화가 추진되는데, 이를 통해 물류비용 · 물가 인하와 더불어 지역 및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별소득보상제도'를 창설하여 농업을 재생시키고 식량 자급률의 향상을 도모한다. 축산업, 낙농업, 어업에 대해서도 판매가격과 생산비용의 차액에 근거한 소득보상제를 실시하고 임업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우정사업 민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한다.

5) 고용 · 경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현행 18%에서 11%로 낮추고, 융자에 대한 개인보증을 재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부당한 가격삭감이나 강제판매 등을 금지하는 '중소기업차별방지법' 이 제정되며, 직업훈련기간 동안 최대 월 10만엔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직자지원제도' 의 도입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진다. 상용고용의 확대를 도모하며, 제조현장으로의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늘려 시간당 최저임금을 700엔에서 1,000엔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하였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삭감하기 위해 배출량 거래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지구온난화대책세' 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패널, 환경대응차, 에너지 절전형 가전 등의 구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신산업 육성에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쏟을 예정이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삭감하기 위해 배출량 거래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지구온난화대책세' 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표 2〉 주요 정책내용

정책			변화 내용
2010년부터 실시	생활	자녀수당	중학교 졸업까지 자녀 1인당 월 26,000엔(2010년은 반액) 지급. 전액지급에 맞추어 배우자공제, 부양공제는 폐지
		고교수업료	공립고교는 무상, 사립고교도 상당액 지급
		잠정세율 폐지	휘발유세의 경우 잠정세율 폐지로 1리터당 25엔 인하
		고속도로 무료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 완전 실시
4년 후까지는 실시	생활	소비세	세율 인상은 4년간 동결
		연금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같은 제도에 가입. 전직을 해도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짐
			월 7만엔의 최저보장연금을 창설
		의료 · 돌봄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폐지하고, 현역세대와 같은 제도에 가입
			돌봄 노동자의 임금을 월 4만엔 인상
		고용대책	제조현장으로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새로운 전문직 제도를 도입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전국 최저임금(시급 800엔)을 설정. 전국평균으로 시급 1,000엔을 목표로 함
		농가호별소득보상	판매가격과 생산비용과의 차액에 근거하여 소득을 보상. 2011년부터 실시
	기업	중소기업대책	법인세율을 18%에서 11%로 인하
		지구온난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삭감(현행 2005년 대비 15% 삭감보다 엄격)
		우정개혁	4분사화를 재검토하여 우체국에서 우정 3사업의 서비스 제공을 보장

하토야마 정권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경우 2013년 기준 16.8조엔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하토야마 정권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경우 2013년 기준 16.8조엔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정책수행 스케줄

항 목	2010	2011	2012	2013
자녀수당 · 출산지원 연 31.2만엔의 자녀수당, 출산 일시금	자녀 수당 반액 실시 2.7조엔	5.5조엔		
공립고교의 실질 무상화 시립고교생에게도 상당액 조성	0.5조엔			
연금제도의 개혁 연금기록 문제 대응, 새로운 연금제도의 창설	기록문제 집중 대응기간(0.2조엔) (연금제도에 관한 국민적 합의)		제도설계 새로운 제도의 결성 (법안작성, 관련법안 성립)	
의료 · 돌봄의 재생 의사부족해결,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의사부족 해소 등 단계적 실시 1.2조엔		1.6조엔	
농업의 호별 소득보장 판매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을 보장	조사 · 모델사업 · 제도설계	1.0조엔		
점정세율의 폐지 휘발유세 등의 잠정세율의 폐지 · 감세	2.5조엔			
고속도로 무료화 원칙적으로 고속도로를 무료화	단계적 실시			1.3조엔
고용대책 고용보험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확대적용, 구직자 지원 등	0.3조엔	0.8조엔		
소요액 계산	7.1조엔	12.6조엔	13.2조엔	13.2조엔
상기 이외의 정책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폐지, 대학장학금 확충, 최저임금인상, 중소기업 지원 등	재원을 확보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실시			3.6조엔

Ⅲ. 주요 정책 내용의 검토

자녀수당 지급은 민주당 정책 가운데에서도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은 정책이었으나 재원확보 문제와 정책의 효과성, 정당 간의 의견차로 인해 정권출범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현재 벌써부터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가. 자녀수당

민주당에서 발의한 정책안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2만 6천엔(2010년은 반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국고부담액은 약 5.3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녀수당 지급을 위한 5.3조엔 규모의 재정소요액은 방위관계비 예산이 4.8조엔, 문교 · 과학기술진흥비 예산이 5.3조엔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소득세 공제의 일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자녀수당이 도입되면 소득세의 공제 항목 중 배우자공제 및 일반부양공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현행 배우자공제액은 38만엔으로 이로 인한 세수감소액은 0.6조엔에 달한다. 일반부양공제액도 동일하게 38만엔이나 이로 인한 세수감소액은 0.8조엔이다. 그러므로 이들 공제를 폐지하면 세수가 1.4조엔 정도 늘어날 것이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여 자녀수당 도입을 위한 재원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자녀수당은 자녀가 있는 전 가구에 무차별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소득보전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소득보전 정책의 속성상 자녀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소비 증대가 아닌 저축 증대로 이어져 내수진작을 위한 경제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하여 연립정권 내에서도 적정 지급금액을 둘러싸고 정당별로 온도 차가 존재하는데, 민주당과 연립정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민당, 국민신당의 경우 자녀수당으로 월 1만엔 정도를 주장하고 있다. 자녀수당 지급은 민주당 정책 가운데에서도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은 정책이었으나 재원확보 문제와 정책의 효과성, 정당 간의 의견차로 인해 정권출범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현재 벌써부터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나. 연금개혁

아래 〈표 3〉은 현재 시행중인 연금제도와 민주당에서 제시한 개혁안을 서로 비교한 것이다.

납부실적에 관계없이 최저보장연금제도를 실시한다면 연금 미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연금재정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표 3〉 연금개혁안

	현행 제도	민주당 안
골격	• 국민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 등 서로 다른 제도가 공존	• 연금제도를 일원화 • 소득비례연금과 최저보장연금이라는 2개의 급부체계로 전환
보험료, 재원	• 기초연금의 재원은 1/2이 세금 • 후생연금의 보험료는 약 15% (노사 1/2 부담)	• 최저보장연금의 재원은 전액 소비세 •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는 15% (회사원은 노사 1/2 부담)
급부	• 40년 납부하면 기초연금은 월 66,000엔 • 25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없음	• 최저보장액은 월 7만엔 • 소득비례연금의 수급액은 납부한 보험료에 연동

개혁안을 보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정해지는 '소득비례연금'을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자에게는 소비세를 재원으로 최저보장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무연금자가 45만명에 달하고 미납 기간이 길어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118만 명 정도가 연금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에서 납부실적에 관계없이 최저보장연금제도를 실시한다면 연금 미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연금재정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 민주당의 정책공약에는 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정확한 시행시기뿐만 아니라 급부와 부담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문제의 핵심을 회피한 것으로 향후 문제화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예컨대 정책공약은 이행기간을 장기로 설정해놓고 있으나, 최저 7만엔이 실현되는 데는 적어도 20~4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납세자번호를 부여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강한 편이라 도입이 가능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세청과 사회보험청을 통합한 '세입청'의 신설을 추진중이나,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다. 최저임금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급 1,000엔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평균으로 시급 1,000엔의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현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과연 실현가능한 목표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수정 발표된 지역별 최저임금의 전국평균은 전년대비 약 10엔이 상승한 시급 713엔이며, 문제는 이 수치가 3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라는 데 있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급 1,000엔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은 우선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국이 최종 결정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기업실적이 향상되지 않는 가운데 최저임금만을 무리하게 인상하는 것은 기업, 특히 중소영세기업에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경기회복 이전에는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우정사업 민영화 동결

2007년 시작된 우정사업의 민영화는 당초 아래 그림과 같이 우편국회사, 우편사업회사, Yucho은행, Kanpo생명[2]의 4개사로 분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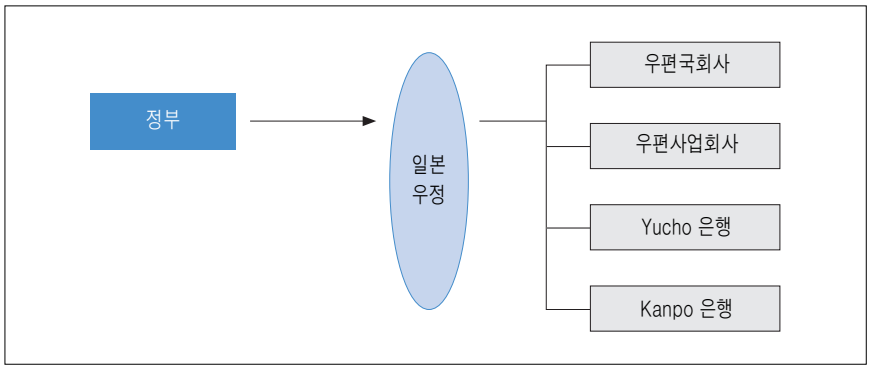

우정사업의 민영화는 2010년 후반부터 일본우정, Yucho은행, Kanpo생명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하여 2017년 완전 민영화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었다. 민영화가 완료되면 정부의 일본우정 출자비율이 크게 낮아져 1/3

2) Yucho는 우편저금(郵便貯金, Yubin Chokin), Kanpo는 간이보험(簡易保健, Kani Hoken)의 머리글자의 일본어 발음을 나타낸다.

민주당은 금번 8 · 30 선거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대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책이 선택되었다기보다는 자민당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상으로 조정되며 Yucho은행, Kanpo생명과의 자본관계도 소멸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2007년 이후 진행되어 온 우정사업 민영화를 백지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우선 2009년 10월 정기국회에 우정사업의 주식판매를 동결하는 법률을 상정하였다. 민주당이 우정사업 민영화를 폐지하려는 이유로는 우정사업이 민영화될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국민 생활의 편리성이 저하된다는 점, 사업을 담당하는 4개사의 장래 경영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민영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으로 자산불하 도중 헐값매각 의혹(Kanpo생명)이 제기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정부시책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하여 향후 커다란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사업 민영화를 포기할 경우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안이 부재된 상태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또한 2007년 이전과 유사한 형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성장에 도움이 될지 역시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Ⅳ. 민주당 정권하에서 일본은 변화할 것인가?

민주당은 금번 8 · 30 선거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대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책이 선택되었다기보다는 자민당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1955년 집권한 자민당은 선거에 도움이 되는 특정 집단에 지원을 하는 이익유도형 정치시스템을 유지하여 왔다. 전통적으로 자민당의 지지기반은 농촌으로 대표되는 지방이었으며, 정책결정은 관료에 의존한 결과, 정치가와 관료의 유착이 강화되었으며, 설령 비효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이익유도형 정치시스템은 고도 성장기에는 유지가 가능하였으나,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그 비효율성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정책결정의 비효율성은 필연적으로 재정구조의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고이즈미 정권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고이즈미 정권 이후 실시된 자민당의 구조조정 정책은 주로 복지예산 및 지방예산 삭감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이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소득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띠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 이익보다는 당내의 파벌 이익에만 집착하는 자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한 염증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민주당의 재정개혁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여 온 복지형 지출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주당에서 내건 정책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정책공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으며 추진되더라도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 내건 정책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의 정책공약에 대한 관료와 산업계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장 예산안 작성에서부터 많은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의 경우 큰 폭의 경제성장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수치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며, 온난화 대책 또한 민주당의 강화된 배기가스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려면 크게 증가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민주당의 권력구조를 살펴보면 당내에 7개의 파벌이 존재하여 자민당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주당 간사장을 맡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는 140명의 의원이 속한 최대 파벌을 거느린 실질적인 권력자이다. 수상으로 선임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起夫)의 경우 파벌 의원 수가 45명이고 국가전략국 장관에 임명된 칸 나오토(菅直人) 또한 파벌 의원 수가 40명에 불과하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최대 파벌이 가장 강한 발언권을 갖고 있으므로 향후 정국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주당의 개혁적인 정책제언은 국가전략국 장관인 칸 나오토의 노선에 기초하고 것인 반면 당내 실질적 권력자인 오자와 이치로는 현실주의자로서 타협을 통해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9년 8월의 선거 결과, 1955년 자민당이 집권한 이래 실질적으로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정권교체로 일본 사회가 변화할 것이라는 점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로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공약의 실현가능성, 민주당 내의 파벌관계 등으로 판단할 때 자민당 집권시와 비교하여 복지 측면에서는 향후 소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로 인해 경제의 기본구조를 변화시키는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세출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 개발과 복지지출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향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KiPF

〈참고〉 일본 민주당 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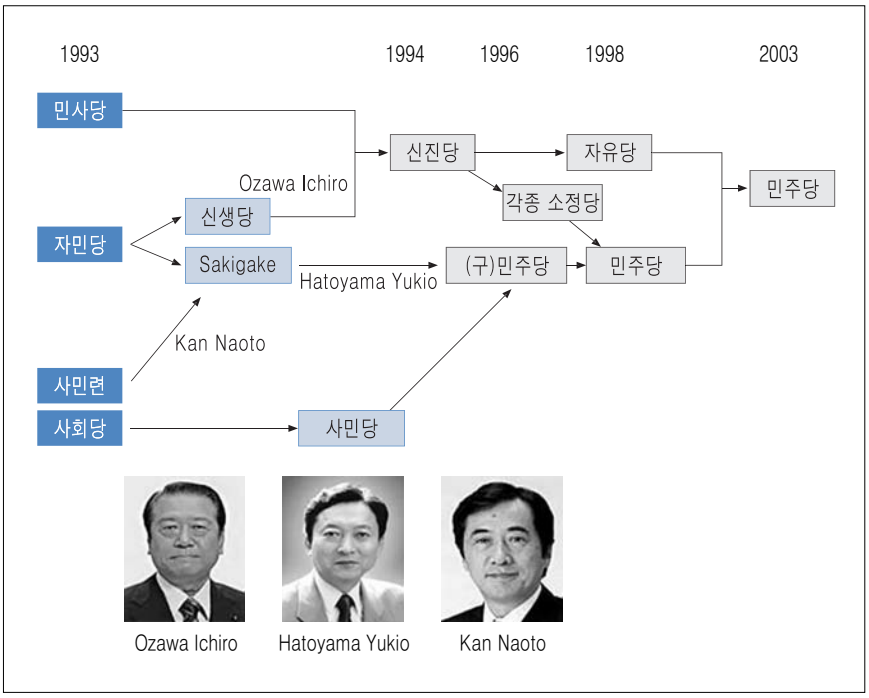
1993
1994
1996
1998
2003
민사당
신진당
자유당
민주당
Ozawa Ichiro
신생당
각종 소정당
자민당
Sakigake
Hatoyama Yukio
(구)민주당
민주당
Kan Naoto
사민련
사회당
사민당
Ozawa Ichiro
Hatoyama Yukio
Kan Naoto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동향 09-21

요 약

■ 9월 말로 끝난 미국의 2009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 4,170억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함
- 금융자산을 차감한 연방정부의 부채규모는 $6조 7,110억(GDP의 47.2%)을 기록함

■ EU 경제재무장관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2009년 10월 2일 신규 세원 창출 및 화석연료 소비 감소를 위해 EU 차원의 탄소세 도입을 논의함

■ 벨기에 정부는 지난 2009년 10월 1일 경기회복을 위한 감세에 초점을 둔 세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주요 내용은 법인세 분야에서 참가면세제도 적용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미납부세액 가산세 면제, 소득세 분야에서 식사 쿠폰 등에 대한 과세 면제, 기부금 공제대상 확대, 전기차량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임

1. 미국 2009회계연도 예산실적 발표

■ 9월 말로 끝난 미국의 2009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 4,170억(GDP의 10%)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함
- 이는 2008회계연도의 3배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9,620억 증가한 것임
- 금융자산을 차감한 연방정부의 부채규모는 $6조 7,110억으로 GDP의 47.2%에 달함

■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과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16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경기부양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지출은 늘어난 반면 경기침체와 감세로 세수는 줄어 재정적자가 크게 늘었다고 밝힘
- 2009회계연도 적자의 대부분은 부시 행정부로부터 넘어온 정부지출과 조세정책의 산물로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 진행 중이던 극심한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인해 심화됨
-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한 경기부양 대책인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ARP)과 경기부양법(recovery act)의 시행으로 인한 적자는 전체 적자의 24%를 차지함

■ 2009회계연도의 재정수입은 $2조 1,050억인 반면 재

정지출은 $3조 5,220억을 기록함

• 2009회계연도의 재정수입은 2008회계연도에 비해 $4,190억(16.6%) 감소함

– 2008회계연도의 재정수입은 GDP의 17.5%였으나, 2009회계연도에는 14.8%로 떨어짐

– 재정수입이 감소한 주된 원인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개인과 기업의 소득이 줄어들었고, 2009년 2월에 시행된 경기부양법의 영향으로 세금감면액이 증가했기 때문임

• 2009회계연도의 재정지출은 2008회계연도에 비해 $5,430억(18.2%) 증가함

– 2008회계연도의 재정지출은 GDP의 20.6%였으나, 2009회계연도에는 24.8%로 증가함

– 재정지출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금융자산구제프로그램(TARP), 패니메이와 프래디 맥의 우선주 구입, 경기부양법(Recovery Act) 등과 같은 임시조치의 시행 때문임

– 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medicaid),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과 같은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를 통한 지출의 증가 역시 재정지출 증가의 원인이 됨

〈표 1〉 총수입, 지출 그리고 재정적자

(단위: $10억)

	수입	지출	재정적자
2008회계연도 실적	2,524	2,978	– 455
2009회계연도 추정			
2009년 5월 예산	2,157	3,998	–1,841
2009년 8월 중간 session 검토	2,074	3,653	–1,580
2009회계연도 실적	2,105	3,522	–1,417

■ 2009회계연도의 실제 재정적자는 2009년 5월과 8월의 예상치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나, 향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5월에는 $1조 8,410억, 8월에는 $1조 5,800억의 재정적자가 예상되었으나, 실제 재정적자는 이보다 각각 $4,240억과 $1,630억이 적은 $1조 4,170억을 기록함

•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를 지탱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2. EU 탄소세 도입 논의

■ EU 경제재무장관 정상회담(EU Council of Economic and Finance Ministers)에서는 지난 2009년 10월 2일 신규 세원 창출 및 화석연료 소비 감소를 위해 EU 차원의 탄소세 도입을 논의함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0년 교통수단 및 가정용 난방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해 탄소세의 도입을 제안할 예정임

– 탄소세는 탄소배출량에 기초하여 과세될 예정이며, 탄소세의 도입으로 현재 EU 배출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TS)를 적용받지 않는 오염원에 대해서도 과세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또한 탄소세의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는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세 지원 및 빈곤국가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 climate change agreement) 체결비용 지원을 위해 사용할 계획임

■ 탄소세 도입 논의는 CO_2에 대한 과세를 위한 첫 번째 시도로 탄소세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27개 EU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탄소세에 대한 EU 회원국의 지지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슬로베니아의 경우 이미 탄소세를 도입한 바 있음
  - 또한 프랑스의 경우 지난 9월 30일 발간한 2010 예산안을 통해 EU 배출거래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문에 대한 탄소배출량의 감소를 목적으로 탄소세의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아일랜드 정부 역시 12월에 발표될 예정인 2010 예산안에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증세보다는 재정지출 축소에 초점을 둘 것이나 정부의 선결과제인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탄소세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 벨기에 재무부 장관 Reynders는 고용활성화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 탄소세의 도입은 노동에서 다른 분야로 과세전환이 이루어지는 좋은 기회라고 입장을 표명함
- 한편, 영국은 EU 차원의 탄소세 도입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로, 몇몇 회원국의 경우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유엔기후변화회의 결과 체결 예정인 국제기후변화협약의 비용 충당을 위해 환경세로 신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음

3. 벨기에 2010 예산안

■ 정부는 지난 2009년 10월 1일 경기회복을 위한 감세에 초점을 둔 세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법인세

- 참가면세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 참가면세제도에 의하면 배당소득 중 95%가 과세 면제되는데, 그 요건으로는 지분율 요건(10% 이상)과 금액 요건(€1.2 million 이상)이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신용기관, 보험회사,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배당소득공제 요건으로 금액 요건만을 적용함
- 중소기업의 경우 설립 후 첫 3년 동안 발생한 법인세 중간예납 미납부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 및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세액공제와 이자공제를 승계받을 수 있음

■ 개인소득세

- 식사, 스포츠, 문화 및 환경쿠폰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 면제함
  - 단, 쿠폰은 근로소득, 이자 및 기타소득을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야 함
- 기부금공제 적용 대상기관을 대학병원, 연구기관, 노인 · 장애인 등의 요양시설, 장애인 고용기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에 설립된 유적 및 자연보호 기관으로 확대함
  - 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함
- 전기차량, 오토바이 및 삼륜차량에 대해 취득가액의 15%를 세액공제함
  - 단, 전기차량의 경우 €3,280, 오토바이 및 삼륜차량의 경우 €2,000을 한도로 공제함
- 연소득이 €12,300을 초과하지 않는 운동선수, 교관, 심판원에게 적용되는 33%의 단일세율을 15세 초과 26세 미만인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16.5%로 인하 적용함
-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연금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벨기에에서 과세됨

- 연금 불입금이 벨기에에서 공제된 경우
- 벨기에에서 수행한 근로의 대가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향 09-22

요 약

■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 2009년 10월 13일 2010 예산안(Budget Bill for 2010)을 의회에 제출함
- 세법개정 관련 주요 내용은 부유세 과세최저한 인상, 거주주택 및 사업용 토지에 대한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 NOK10,000 초과 현금결제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임

■ 스웨덴 정부는 지난 2009년 10월 14일 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주요 내용은 거주주택에 부과되는 공공요금의 과세대상 범위 확대, 거주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구입시 자본이득세 과세이연금액 축소 등임

■ 호주는 2010년 7월 1일부터 R&D 조세지원제도를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임
- 현재 125%, 150%의 소득공제에서 45% 환급가능 세액공제 및 40% 환급불가능 세액공제로 전환할 예정임

1. 노르웨이 2010 예산안(Budget Bill for 2010)

■ 정부는 지난 2009년 10월 13일 2010 예산안(Budget Bill for 2010)을 의회에 제출함
- 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부유세(net wealth tax)
- 부유세 과세최저한을 현 NOK470,000에서 NOK

700,000으로 인상함

- 그 결과 부유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수가 120,000명 만큼 감소하고 약 NOK7억 6천만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택 및 사업용 토지에 대해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함

- 거주주택(별장, 농장 및 해외 주택 제외)은 주택의 규모에 기초하여 평가하며 이는 지리적 위치, 주택의 종류, 건설연도 등에 따라 조정됨
- 사업용 토지는 지리적 위치, 토지규모 및 유형에 기초한 규정된 공식에 따라 평가함[1)]
- 단, 주택의 평가액은 추정 시장가치의 30%, 토지의 평가액은 추정 시장가치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해운회사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 현행규정

- 해운회사는 특별과세제도(special tax regime)에 따라 해운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고 대신 톤세(tonnage tax regime)를 적용할 수 있음
- 단, 외화헤지거래로 발생한 자본손익 등 순투자소득의 경우 일반 법인세율(현 28%)로 과세되고 있음

• 개정안

- 해운사업 소득과 관련하여 외화헤지거래로 발생한 자본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면제함

■ 부가가치세(VAT)

• 반조세회피 조치(anti-avoidance measures)

- NOK10,000[2)]을 초과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NOK10,000을 초과하는 서비스를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서비스 공급자가 과세관청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는 서비스 공급자의 조세채무 관련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또는 단독으로 부담하게 됨

2. 스웨덴 부동산 세제 개정

■ 정부는 지난 2009년 10월 14일 부동산 세제(real estate taxation)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부동산세(real estate tax)

• 거주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공공요금[3)]의 부과대상 범위를 확대함

-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및 평가금액이 SEK50,000 이하인 거주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공공요금을 부과함

■ 자본이득세(tax on capital gains)

• 현행규정

-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자본이득은 (1) 양도주택이 납세자의 거주주택에 해당하고, (2) 자본이득이 SEK50,000을 초과하고, (3) 납세자가 신규 거주주택을 구입한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함

1) 현재 노르웨이에서 부유세는 자산의 추정 시장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고 있음
2) 이는 2009년 11월 5일자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로 평가했을 때 KRW2,081,000임
3) 2008년 1월 1일부터 거주주택에 대한 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요금(kommunal fastighetsavgift)으로 변경된 바 있음

– 과세이연금액 한도는 SEK160만으로 연간 0.5%의 이자가 적용됨
– 또한 추후 과세시점에는 과세이연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과세이연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함

• 개정안
– 최대이연금액을 현 SEK160만에서 SEK145만으로 축소함
– 과세이연 기간이 1년 이내인 과세이연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10%의 수수료를 폐지함

3. 호주

■ R&D 지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의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임

• 현행 R&D 조세지원제도: 소득공제방식
– 당해연도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125%를 소득공제하고, 과거 3년 평균 연구개발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법인의 경우에는 150%의 소득공제를 적용함
– 연간 매출이 AUD5백만 미만이면서 R&D 지출이 연간 AUD2만~100만인 법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했을 때 감면되는 금액을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tax offset)으로 공제할 수 있음

• 개정된 R&D 조세지원제도: 세액공제방식
– 매출액 AUD2천만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R&D 지출액의 45%에 상당하는 환급가능 R&D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되고, 매출액이 AUD2천만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R&D 지출액의 40%에 상당하는 환급불가능 세액공제가 적용됨
– 법인세율이 30%인 점을 고려할 때, 45%의 세액공제는 150% 소득공제를 하는 것과 효과가 동일하고, 40%의 세액공제는 133%의 소득공제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
– 환급불가능 세액공제의 경우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정책흐름

- 08회계연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결산서 국회에 제출
- 2009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 '09년 11월중 국고채 발행 · 조기상환 · 교환 계획 및 10월중 발행실적
- 복권기금, '10년 소외 · 취약계층에 7,600억원 지원
- 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조사결과
- 납세자와 함께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도입
- e세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
- 어렵고 복잡한 세무문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8회계연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결산서 국회에 제출

* 본 자료는 2009년 11월 3일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발표한 「08회계연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결산서 국회에 제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결산 개요

• 기획재정부는 2008회계연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결산서를 감사원 결산검사와 함께 국무회의에 보고(09. 11. 3)한 후 국회에 제출함

•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두 번째 결산임

■ 08년 회계연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 총매출은 154조원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하였으나 순이익은 2.8조원으로 전년 대비 53.3% 감소하였음

– 08년 세계경기 침체,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요금인상 지연 등 전년 흑자(1.6조원)에서 적자(3.0조원)로 전환된 전력공사를 제외할 경우 순이익은 5.8조원으로 전년 대비 32.2% 증가함

• 총자산은 379.8조원, 총부채는 213.0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4%, 25.6% 증가함

–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투자 확대와 재원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 등으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였음

– 특히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높으나 부채 증가(43.4조)와 동시에 자산도 증가(47.9조원)하고 있어 향후 재정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음

■ 08년 회계연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수익성 · 안정성 분석

• 공기업 전체 수익성은 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원가율 상승과 요금인상 지연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반면, 준정부기관은 비중이 큰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이익 증가 등으로 상승하였음

* 공기업 매출액 순이익률(%): 6.3(06) → 6.7 → 0.3(08)

* 준정부기관 매출액 순이익률(%): 2.9(06) → 1.5 → 4.3(08)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안정성은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채권 발행 등으로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다소 악화되고 있음

* 공기업 부채비율(%): 85.5(05) → 97.6(06) → 107.2(07) → 133.4(08))

* 준정부기관 부채비율(%): 91.1(06) → 93.8(07) → 105.3(08))

2008회계연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결산 내용

Ⅰ.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결산 개요

■ 공공기관 결산 개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 공기업[1]과 준정부기관[2]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결산서를 기획재정부와 주무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음
- 기획재정부와 주무기관은 확정된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결산서를 감사원에 09. 6. 30까지 제출
-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결산서(감사원 결산 검사 첨부)를 총괄하여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주요 결산내역 추이(5개년 평균)

- 자산은 연 13.9%, 부채는 연 18.9% 증가
- 순이익은 연 22.1% 감소(한전 제외시 4.4% 증가)

공기업 · 준정부기관 주요 결산내역 추이

(단위: 조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자 산	225.7	266.4	298.8	331.9	379.8
부 채	106.6	124.6	146.6	169.6	213.0
총 수 익	94.6	107.0	117.3	135.0	166.0
총 비 용	86.8	101.3	111.7	129.0	163.2
순 이 익 (한전 제외시)	7.8 (4.9)	5.7 (3.2)	5.6 (3.5)	6.0 (4.4)	2.8 (5.8)

자료: www.alio.go.kr

Ⅱ. 2008회계연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결산 내용

1. 경영성과

■ (매출) 총 154.0조원으로 전년 대비 25.3조원(19.7%) 증가

- 공기업 : 가스공사(8.9조원), 전력공사(2.5조원), 토지공사(2.2조원)[3]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17.5조원(22.5%) 증가
- 준정부기관 : 건강보험공단(4.5조원), 국민연금공단(1.0조원)[4]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7.8조원(15.4%) 증가

매출(영업수익) 상위 주요 공기업 · 준정부기관

(단위: 조원)

순위	기 관 명	08	증감액	증감률	순위	기 관 명	08	증감액	증감률
1	전력공사	31.5	2.5	8.8%	6	마사회	7.4	0.9	13.5%
2	건강보험공단	30.2	4.5	17.5%	7	국민연금공단	6.6	1.0	17.9%
3	가스공사	23.2	8.9	62.4%	8	체육진흥공단	4.1	0.3	8.9%
4	토지공사	9.0	2.2	32.4%	9	철도공사	3.6	0	1.7%
5	주택공사	7.9	1.5	23.5%	10	도로공사	3.3	0	-1.3%

■ (순이익) 총 2.8조원으로 전년 대비 3.2조원(53.3%) 감소하였으나, 전력공사 제외시 총 5.8조원으로 1.4조원(32.2%) 증가

- 공기업 : 매출 비중(33.1%)이 큰 전력공사[5]가 원자재 가격 상승, 요금인상 지연으로 순손실(△3.0조원)이 발생하였으나,

1)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기관으로 시장형 공기업(6개)과 준시장형 공기업(18개)으로 세분됨
2)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 공공기관 중 국가재정법의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13개)과 정부사업을 위탁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4개)으로 세분됨
3) * 가스공사: 원료비 연동제도에 따라 원자재 가격 · 환율 상승에 따른 매출(8.2조원) 증가
   * 전력공사: 산업용 · 주택용 전기 판매 증가에 따라 매출 증가(2.5조원) 등
   * 토지공사: 신도시 상업지구 매출, 준공 완료로 인한 토지 매출 증가(3.2조원)
4) * 건강보험공단: 보험료율 인상(6.4%), 보험료 부과자료 연계(과세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 수익(3.7조원)이 크게 증가
   * 국민연금공단: 보험급여 지급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에서 전입되는 수입금(1.0조원) 증가
5) * 전력공사: 매출 증가(2.5조)원에 비해 전력구입비(6.4조원) 증가, 자회사 손실에 대한 지분법이익 감소(0.8조원) 등으로 전년도 흑자(1.6조원)에서 당기 적자(3.0조원)로 전환

– 토지공사, 철도공사 등은 순이익이 오히려 증가하였음

• 준정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이익[6]이 증가하여 준정부기관의 이익은 전년 대비 1.7조원(226.5%) 증가

순이익 상위 주요 공기업 · 준정부기관

(단위: 조원)

순위	기 관 명	08	증감액	증감률	순위	기 관 명	08	증감액	증감률
1	건강보험공단	1.8	1.7	1,325%	6	마사회	0.3	0	29.6%
2	토지공사	1.1	0.2	20.1%	7	주택공사	0.3	−0.3	−52.8%
3	예금보험공사	0.9	0.3	45.9%	8	석유공사	0.2	0	20.1%
4	철도공사	0.5	0.4	285.6%	9	주택보증	0.2	−0.3	52.8%
5	가스공사	0.3	0	−9.3%	10	인천국제공항	0.15	0	25.9%

2. 재무상태

■ (전체) 총자산은 379.8조원, 총부채는 213.0조원을 기록

• 사업확장 등으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나, 부채 증가율(25.6%)이 자산 증가율(14.4%)보다 높음

공기업 · 준정부기관 재무상태

(단위: 조원, %)

	2007			2008			증감(률)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 공기업	267.5	138.4	129.1	309.8	177.1	132.7	42.3(15.8)	38.7(28.0)	3.6(2.8)
• 준정부기관	64.4	31.2	33.2	70.0	35.9	34.1	5.6(8.6)	4.7(15.1)	0.9(2.6)
• 소계	331.9	169.6	162.3	379.8	213.0	166.8	47.9(14.4)	43.4(25.6)	4.5(2.8)

■ (자산) 총 379.8조원으로 전년 대비 47.9조원(14.4%) 증가

• 총자산 중 유형(145.2조원) · 무형(47.4조원)자산이 50.7%를 차지하여 민간기업 평균 34.5%에 비해 크게 높음

– 사회기반시설과 그 관리권을 보유하는 특성에 기인

• 공기업: 주택공사(13.1조원), 가스공사(9.4조원), 토지공사(7.8원)[7] 자산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42.3조원(15.8%) 증가

• 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2.0조원), 주택금융공사(1.3조원)[8] 자산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5.6조원(8.6%) 증가

자산 상위 주요 공기업 · 준정부기관

(단위: 조원)

순위	기 관 명	08	증감액	증감률	순위	기 관 명	08	증감액	증감률
1	전력공사	66.9	1.2	1.9%	6	가스공사	21.9	9.4	74.4%
2	주택공사	64.2	13.1	25.7%	7	철도공사	16.0	1.8	12.6%
3	도로공사	42.1	3.3	8.5%	8	석유공사	13.0	3.6	38.5%
4	토지공사	41.1	7.8	23.3%	9	수자원공사	12.0	0.5	4.7%
5	철도시설공단	27.3	−0.5	−1.6%	10	인천국제공항	8.2	0.3	4.7%

■ (부채) 총 213.0조원으로 전년 대비 43.4조원(25.6%) 증가

• 공기업 · 준정부기관 모두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채권 발행 등에 기인함

6) * 건강보험공단: 보험료수익(4.5조원)이 크게 증가한 반면,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수진율이 감소하면서 보험급여비 등은 2.5조원 증가에 불과하여 순이익이 크게 증가

7) * 주택공사: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유형자산(6.1조원), 분양용 재고자산(3.6조원) 증가
* 가스공사: 요금인상 지연에 따른 미수금(3.5조원), 단가 상승으로 재고자산(2.8조원) 증가
* 토지공사: 신도시 개발 등 사업 확장으로 재고자산(5.0조원) 등 증가

8) *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이익 증가에 따라 금융자산(1.6조원) 증가 등
* 주택금융공사: 금융위기로 유동화증권 발생시장이 위축되면서 공사가 보유하는 매입주택 저당대출채권(1.3조원) 증가 등

부채비율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자산	부채	부채비율	자산	부채	부채비율	자산	부채	부채비율
• 공기업	240.8	119.0	97.6	267.5	138.4	107.2	309.8	177.1	133.4
• 준정부기관	58.0	27.6	91.1	64.4	31.2	93.8	70.0	35.9	105.3
• 소계	298.8	146.6	96.3	331.9	169.6	104.5	379.8	213.0	127.7

- 공기업 : 주택공사(12조원), 가스공사(9.1조원), 토지공사(6.9조원)[9]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38.7조원(28.0%) 증가
- 준정부기관: 철도시설공단(1.9조원), 주택금융공사(1.3조원)[10] 부채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4.7조원(15.1%) 증가

부채 상위 주요 공기업 · 준정부기관

(단위: 조원, %)

순위	기 관 명	08	증감액	증감률	순위	기 관 명	08	증감액	증감률
1	주택공사	51.8	12.0	30.0%	6	철도시설공단	11.9	1.9	18.9%
2	토지공사	33.9	6.9	25.5%	7	철도공사	6.8	0.8	14.3%
3	전력공사	25.9	4.3	20.0%	8	석유공사	5.5	1.8	49.5%
4	도로공사	20.2	2.4	13.3%	9	에너지관리공단	4.6	0.5	11.6%
5	가스공사	17.9	9.1	104.3%	10	인천국제공항	4.1	0	4.3%

■ (자본) 총 166.8조원으로 전년 대비 4.5조원(2.8%) 증가

- 공기업 : 석유공사(1.2조원), 주택공사(1.2조원) 출자 등으로 전년 대비 3.6조원(2.8%) 증가
- 준정부기관 :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자산 국가 귀속에 따른 기본재산 감소(2.3조원), 건강보험공단(1.8조원) 순이익 증가 등 전년 대비 0.9조원(2.6%) 증가

자본 상위 주요 공기업 · 준정부기관

(단위: 조원, %)

순위	기 관 명	08	증감액	증감률	순위	기 관 명	08	증감액	증감률
1	한국전력	40.9	-3.1	-7.0%	6	철도공사	9.2	0.9	11.4%
2	도로공사	21.9	0.9	4.4%	7	석유공사	7.5	1.8	31.4%
3	철도시설공단	15.4	-2.3	-13.2%	8	토지공사	7.2	0.9	13.9%
4	주택공사	12.3	1.2	10.3%	9	건강보험공단	6.8	1.8	36.1%
5	수자원공사	10.0	0	1.5%	10	인천국제공항	4.1	0	4.4%

3. 감사원 결산검사

■ (검사대상) 공기업 · 준정부기관 중 감사원법*에 따른 기관(20개)과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전력공사(1개)를 검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 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 (주택공사)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금과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평가하지 않아 평가손실 300억원 과소 계상
- (주택보증) 보증채무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102억원 과소 계상
- (석유공사) 광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98억원 과소 계상, 실패로 판명된 광구 투자자산 91억원 과다 계상
- (석탄공사) 특정금전신탁의 조건변경에 따른 대손상각비 39억원 과소 계상

9) * 주택공사: 주택 건설 사업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차입(2.4조원), 사채 발행(8.5조원) 등
* 가스공사: 요금 인상지연에 따른 단기차입금(2.8조원), 장기차입금 · 사채(3.8조원) 증가
* 토지공사: 토지 매각 선수금(1.9조원), 택지개발 등을 위한 채권 발행(3.2조원) 등

10) * 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사업의 자금조달로 사채 0.9조원, 선수금 0.6조원 증가
* 주택금융공사: 매입주택 저당대출채권의 재원조달을 위한 차입금 0.8조원 증가

• (지역난방공사) 저장품 및 예비부품 등에 대한 계정과목 분류 오류, 관리 부실로 이익 9억원 과소계상

• (기타) 개별 공공기관 운영감사시 '예산편성 · 집행 분야' 등 주요 사항 지적(각 기관에 처분요구 · 통보함)

■ 향후 조치사항

• 석유공사 등은 감사원 결과를 수용하여 차기 결산에 반영

감사원 결산 검사 대상기관

(단위: 백만원, %)

구분	기관명	납입 자본금(A)	정부 출자		
			금액(B)	지분율(B/A)	전년도대비 증 · 감(−)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6,623	6,623	100.0	−
	한국전력공사	3,207,839	677,604	21.1	−
	한국광물자원공사	531,932	529,232	99.5	138,469
	대한석탄공사	359,626	359,626	100.0	53,626
	한국석유공사	5,914,815	5,914,815	100.0	1,229,902
	한국지역난방공사*	43,419	20,000	46.1	−
	대한주택보증㈜	3,232,031	1,779,100	55.0	−
	부산항만공사	3,123,337	3,123,337	100.0	−
	인천항만공사	2,067,661	2,067,661	100.0	−
	인천국제공항공사	3,617,845	3,617,845	100.0	65,600
	한국공항공사	2,089,741	2,089,741	100.0	−
	한국철도공사	9,641,137	9,641,137	100.0	351,873
	대한주택공사	9,581,294	8,588,834	89.6	1,049,240
	한국도로공사	21,180,026	17,708,616	83.6	−204,976
	한국수자원공사	6,305,441	5,697,024	90.4	30,540
	한국토지공사	5,000,000	3,666,808	73.3	−
	한국관광공사	32,391	17,879	55.2	−
준정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000	16,000	100.0	−
	농수산물유통공사	66,200	66,200	100.0	−
	한국주택금융공사	676,600	366,600	54.2	200,000
	한국농어촌공사	1,290,029	1,290,029	100.0	20,000
	합계	77,983,987	67,244,711	86.2	2,934,174

*지방자치단체 보유지분: 13.8%

Ⅲ.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결산 주요 지표

1. 공기업

■ 매출액 순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가 08년 급격히 하락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요금인상 지연으로 한전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이익률 감소

– 순손실이 큰 전력공사를 제외할 경우 이익률 감소폭은 둔화

공기업 수익성 지표

(단위: 백만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매출액 영업이익률[1]	11.2	11.1	7.5	8.0	7.1	1.8
매출액 순이익률[2]	7.2	9.5	7.0	6.3	6.7	0.3
총자산 순이익률[3]	2.3	2.8	2.0	1.8	1.9	0.1
자기자본 순이익률[4]	4.2	5.2	3.7	3.6	4.0	0.2

1) 영업이익/매출액×100　　2) 순이익/매출액×100
3) 순이익/총자산×100　　4)순이익/자기자본x 100

주요 공기업 수익성(매출액 순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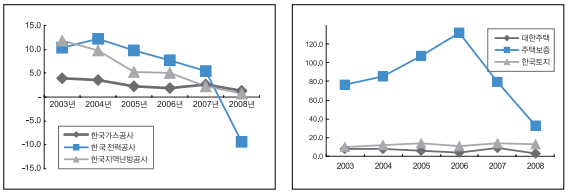

■ 부채비율 증가, 이자보상비율 감소 등 안정성 지표가 낮아지고 있음

• 전력공사와 가스공사는 08년 원자재가격, 환율 상승에 비해 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차입금 조달이 크게 증가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임대주택, 혁신도시 건설 등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채권 발행 등으로 부채가 증가

공기업 안정성 지표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유동비율[1]	140.1	171.8	164.6	175.0	190.3	180.8
부채비율[2]	85.3	85.2	85.5	97.6	107.2	133.4
자기자본비율[3]	54.0	54.0	53.9	50.6	48.3	42.8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비율[4]	241.9	282.0	199.6	212.1	179.9	47.1

1) 유동자산/유동비율×100　　2) 부채/자기자본×100
3) 자기자본/총자본×100　　4)영업이익/이자비용×100

주요 공기업 안정성(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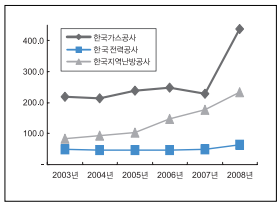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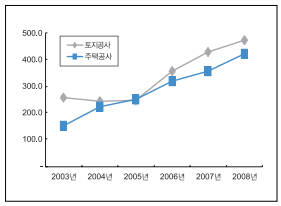

2. 준정부기관

■ 매출액 순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는 전년 대비 크게 상승

• 금융시장 불안 등 경영여건 악화로 수익성이 낮은 주택금융공사에 비해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전체 수익성은 향상

준정부기관 수익성 지표

(단위: %)

	2006	2007	2008	2008 (공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3.4	3.0	4.9	1.8
매출액 순이익률	2.9	1.5	4.3	0.3
총자산 순이익률	2.1	1.2	3.6	0.1
자기자본 순이익률	4.1	2.3	7.4	0.2

■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공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자보상비율도 높은 편임

• 준정부기관은 정부 사업을 위탁 · 관리하므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적어 부채비율 증가폭이 크지 않음

준정부기관 안정성 지표

(단위: %)

	2006	2007	2008	2008 (공기업)
유동비율	221.1	198.7	225.1	180.8
부채비율	91.1	93.8	105.3	133.4
자기자본비율	52.3	51.6	48.7	42.8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비율	279.4	265.7	472.3	47.1

참 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현황(09. 1. 30 고시 기준)

공기업 (24)	시장형 (6)	(지경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 시장형 (18)	(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농림부) 한국마사회 (지경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노동부) 한국산재의료원 (국토부)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준정부 기관 (80)	기금 관리형 (16)	(금융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교과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행안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문체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지경부)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 집행형 (64)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교과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행안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체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지경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KOTRA,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우편물류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방송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기청) 중소기업정보진흥원

참 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성과

■ 공기업

(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영업수익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수익	영업이익	순이익
한국가스공사	142,608	6,335	3,648	231,661	6,356	3,308
한국전력공사	289,839	3,300	15,568	315,224	−36,592	−29,525
인천국제공항	9,714	4,606	2,071	10,727	4,038	1,534
한국공항공사	3,450	271	757	3,977	265	416
부산항만공사	1,810	729	386	1,950	746	428
인천항만공사	623	53	23	781	146	131
한국조폐공사	3,348	280	178	3,811	152	93
한국관광공사	4,578	192	548	3,004	−313	332
한국방송광고	3,447	166	176	3,161	62	96
한 국 마 사 회	65,404	1,856	2,064	74,222	2,384	2,675
한국광물자원	657	28	44	1660	77	94
대한석탄공사	2,036	−504	−929	2,161	−517	−1,048
한국석유공사	10,693	3,291	1,667	17,475	6,031	2,002
한국지역난방	6,862	318	150	11,899	446	91
한국산재의료원	1,692	−155	−85	1,776	−144	−74
대한주택공사	63,742	7,306	5,601	78,690	5,044	2,645
대한주택보증	8,429	7,209	6,688	6,424	3,015	2,073
제주국제자유도시	2,091	453	357	2,414	602	483
한 국 감 정 원	1,077	48	37	1,170	54	49
한국도로공사	33,036	7,382	538	32,611	8,330	622
한국수자원공사	18,129	2,167	1,489	20,445	1,852	1,388
한국철도공사	35,703	−6,414	1,333	36,314	−7,374	5,140
한국토지공사	68,063	16,655	9,692	90,092	22,513	11,642
컨테이너부두	340	−308	−184	301	−349	−1285
합계	777,371	55,265	51,815	951,949	16,826	3,310

■ 준정부기관

(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영업수익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수익	영업이익	순이익
예금보험공사	13,768	12,331	6,353	14,862	13,365	9,270
한국주택금융공사	1,781	137	100	3,626	−2,558	−2,598
국민체육진흥공단	37,468	2,806	−	40,768	3,355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7,435	−	1	7,902	−	−
국민연금공단	56,206	31	−79	66,242	98	−21
근로복지공단	3,020	−29	6	3,081	−113	−60
한국자산관리공사	6,703	806	631	8,757	1,046	683
한국예탁결제원	1,479	626	922	1,119	356	68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26	−1	3	620	2	5
한국학술진흥재단	9,104	228	−7	9,829	−26	−1
한국과학창의재단	286	2	−	326		−
한국과학재단	10,325	−12	−4	12,954	−2	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684	7	21	719	33	47
대한지적공사	3,621	153	77	3,925	134	99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78	−31	−26	270	2	33
국제방송교류재단	390	−44	−40	385	−60	−57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534	−9	−10	472	−6	−7
농수산물유통공사	2,394	30	56	1,589	13	86
한국농어촌공사	24,423	232	113	26,360	−68	370
축산물등급판정소	74	−70	1	79	−77	3
한국석유관리원	269	−3	1	242	−39	−33
한국광해관리공단	3,973	−198	130	4,617	−256	99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39	15	118	2,348	−30	63
에너지관리공단	4,153	−80	188	5,401	−217	96
한국세라믹기술원	257	10	14	278	2	5
한국가스안전공사	1,032	12	6	1,062	30	33
한국디자인진흥원	542	−9	−9	409	−17	−18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118	1	3	113	2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09	24	40	726	47	53
한국산업기술재단	1,542	−12	3	2,102	−14	7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1,685	1	7	14,596	−2	2
한국산업단지공단	2,268	162	213	1,476	−295	−266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97	−12	−10	323	9	9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25	8	7	128	8	9
한국전기안전공사	2,074	123	68	2,252	205	197
한국전력거래소	653	4	32	686	9	6

(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영업수익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수익	영업이익	순이익
한국우편물류지원단	455	2	1	514	−14	−14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228	6	1	244	6	1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261	299	274	885	−68	−99
한국우편사업지원단	230	4	3	239	2	−6
한국인터넷진흥원	171	18	22	229	9	16
한국전파진흥원	400	35	83	448	59	97
한국정보문화진흥원	697	−34	−32	654	−8	−1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319	−6		354	3	6
한국정보화진흥원	4,063	1	−2	2,759	−4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40	50	47	1,717	183	188
국민건강보험공단	256,742	−2,791	1,269	301,545	12,856	18,07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10	1	−7	263	−2	1
국립공원관리공단	1,546	−45	−40	1,324	−17	8
한국환경기술진흥원	101	1	1	110	−	−
한국환경자원공사	967	−8	16	1,209	91	200
환경관리공단	7,699	32	85	9,716	94	130
한국고용정보원	386	−	1	422	−7	−1
한국노동교육원	153	−1	2	144	−2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19	−2	4	2,470	−40	−9
한국산업인력공단	2,583	30	77	5,385	88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936	−33	11	764	−43	−12
교통안전공단	1,431	36	91	1,376	−61	−34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37	6	10	148	−3	1
한국시설안전공단	285	−1	3	317	1	3
한국철도시설공단	5,976	195	−3,197	6,066	331	−3,269
선박안전기술공단	176	−13	−11	191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59	11	−8	176	17	1
독립기념관	163	−12	−16	141	−20	−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406	−87	−64	5,673	26	51
한국청소년수련원	136	−	1	142	6	9
한국청소년상담원	81	1	1	79	−	−
한국소비자원	208	−7	−5	224	13	15
도로교통공단	1,329	171	180	1,331	142	268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29	38	28	255	26	33
전 체	509,758	15,138	7,758	588,176	28,605	25,333

참 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재무현황

■ 공기업

(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한국가스공사	125,805	87,436	38,369	219,430	178,645	40,785
한국전력공사	656,426	216,119	440,307	668,682	259,292	409,390
인천국제공항	78,675	39,402	39,273	82,100	41,099	41,001
한국공항공사	25,302	1,876	23,426	25,657	2,196	23,461
부산항만공사	35,450	3,455	31,995	38,013	5,653	32,360
인천항만공사	20,969	344	20,625	21,104	348	20,756
한국조폐공사	3,930	938	2,992	4,054	1,016	3,038
한국관광공사	7,013	3,101	3,912	7,911	3,749	4,162
한국방송광고	10,443	7,265	3,178	8,561	5,313	3,248
한국마사회	20,431	3,749	16,682	21,864	3,711	18,153
대한광업진흥	8,538	4,341	4,197	11,325	5,234	6,091
대한석탄공사	7,002	12,232	−5,230	8,017	13,760	−5,743
한국석유공사	94,032	36,830	57,202	130,221	55,059	75,162
한국지역난방	19,985	12,794	7,191	23,829	16,670	7,159
산재의료관리원	2,113	704	1,409	2,277	804	1,473
대한주택공사	510,429	398,736	111,693	641,520	518,281	123,239
대한주택보증	52,700	15,425	37,275	53,142	14,210	38,932
제주국제자유	2,216	648	1,568	3,013	973	2,040
한국감정원	2,918	2,581	337	3,475	3,094	381
한국도로공사	387,713	178,302	209,411	420,689	202,095	218,594
수자원공사	114,438	15,756	98,682	119,817	19,623	100,194
한국철도공사	142,137	59,485	82,652	160,075	67,963	92,112
한국토지공사	333,398	270,353	63,045	411,071	339,244	71,827
컨테이너부두	12,889	11,891	998	12,386	12,674	−288
합계	2,674,954	1,383,764	1,291,190	3,098,233	1,770,708	1,327,525

■ 준정부기관

(단위: 억원)

구 분	2007			2008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예금보험공사	41,966	3,255	38,711	51,226	2,585	48,641
한국주택금융공사	12,845	8,211	4,634	25,699	21,185	4,514
국민체육진흥공단	11,185	7,714	3,471	12,178	8,708	3,471
정보통신연구진흥원	641	640	1	524	524	−
국민연금공단	5,490	6,472	−982	5,607	6,616	−1,009
근로복지공단	2,356	2,236	120	2,530	2,470	60
한국자산관리공사	17,975	13,005	4,969	27,883	22,452	5,432
한국예탁결제원	18,418	13,186	5,232	16,026	10,126	5,9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18	204	14	287	269	18
한국학술진흥재단	3,341	3,022	319	4,104	3,786	318
한국과학창의재단	52	40	12	65	52	13
한국과학재단	1,024	1,016	8	1,334	1,318	1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20	231	189	450	213	236
대한지적공사	2,345	1,603	742	2,386	1,544	842
방송영상산업진흥원	877	91	786	781	101	681
국제방송교류재단	1,011	53	958	971	71	90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592	322	269	580	318	262
농수산물유통공사	8,651	7,453	1,198	9,096	7,821	1,275
한국농어촌공사	52,126	37,214	14,912	52,865	37,396	15,469
축산물등급판정소	11	4	7	12	3	10
한국석유관리원	425	10	416	389	6	383
한국광해관리공단	7,765	2,392	5,374	7,988	1,933	6,0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06	427	379	868	428	440
에너지관리공단	42,207	41,405	802	47,091	46,192	899
한국세라믹기술원	489	139	350	520	165	355
한국가스안전공사	2,947	2,445	502	2,930	2,396	535
한국디자인진흥원	388	117	271	397	144	253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396	373	23	542	521	2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68	427	241	807	513	294
한국산업기술재단	650	297	353	785	425	36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954	1,839	114	1,877	1,763	114
한국산업단지공단	6,710	2,072	4,638	8,958	4,576	4,382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83	47	136	213	68	145
한국원자력문화재단	81	39	42	82	30	51
한국전기안전공사	935	1,409	−473	1,302	1,327	−25
한국전력거래소	1,568	154	1,414	1,527	106	1,421

(단위: 억원)

구 분	2007			2008		
	자 산	부 채	자 본	자 산	부 채	자 본
한국우편물류지원단	136	146	−10	103	127	−24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87	43	44	82	37	4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870	2,139	731	2,573	1,940	633
한국우편사업지원단	448	97	351	453	108	345
한국인터넷진흥원	223	43	180	255	59	196
한국전파진흥원	1,673	296	1,377	1,805	351	1,45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479	82	397	515	134	380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11	103	9	143	129	14
한국정보화진흥원	2,624	1,978	646	2,521	1,880	6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63	535	628	1,445	626	819
국민건강보험공단	56,899	6,843	50,056	77,182	9,050	68,13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5	31	65	101	36	65
국립공원관리공단	141	424	−283	262	536	−275
한국환경기술진흥원	449	445	5	548	544	5
한국환경자원공사	3,399	3,501	−103	3,791	3,694	98
환경관리공단	30,865	30,300	565	28,211	27,501	710
한국고용정보원	195	182	13	180	167	12
한국노동교육원	252	6	247	251	3	24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55	658	96	878	790	88
한국산업인력공단	1,537	557	980	1,705	725	980
장애인고용촉진공단	616	393	223	582	366	215
교통안전공단	2,606	572	2,034	2,531	532	1,999
건설교통기술평가원	100	61	39	148	107	41
한국시설안전공단	291	136	154	278	120	157
한국철도시설공단	277,073	99,825	177,248	272,618	118,712	153,906
선박안전기술공단	91	85	6	100	94	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00	58	42	135	93	43
독립기념관	571	100	471	532	76	45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989	1,187	3,802	5,507	1,322	4,185
한국청소년수련원	26	11	15	37	14	23
한국청소년상담원	24	10	15	24	10	14
한국소비자원	334	413	−79	337	401	−64
도로교통공단	2,615	862	1,752	2,324	304	2,02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50	59	391	492	68	425
전 체	644,003	311,745	332,339	699,531	358,807	340,724

참 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수익성 지표

■ 공기업

(단위: %)

	2007				2008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한국가스공사	4.4	2.6	2.9	9.5	2.7	1.4	1.5	8.1
한국전력공사	1.1	5.4	2.4	3.5	−11.6	−9.4	−4.4	−7.2
인천국제공항	47.4	21.3	2.6	5.3	37.6	14.3	1.9	3.7
한국공항공사	7.9	21.9	3	3.2	6.7	10.5	1.6	1.8
부산항만공사	40.3	21.3	1.1	1.2	38.2	22	1.1	1.3
인천항만공사	8.5	3.6	0.1	0.1	18.7	16.8	0.6	0.6
한국조폐공사	8.4	5.3	4.5	6	4	2.5	2.3	3.1
한국관광공사	4.2	12	7.8	14	−10.4	11	4.2	8
한국방송광고	4.8	5.1	1.7	5.5	2	3	1.1	3
한국마사회	2.8	3.2	10.1	12.4	3.2	3.6	12.2	14.7
한국광물자원	3.6	6.7	0.5	1	4.7	5.6	0.8	1.5
대한석탄공사	−24.8	−45.6	−13.3	17.8	−23.9	−48.5	−13.1	18.3
한국석유공사	30.8	15.6	1.8	2.9	34.5	11.5	1.5	2.7
지역난방공사	4.6	2.2	0.7	2.1	3.7	0.8	0.4	1.3
산재의료원	−9.1	−5	−4	−6.1	−8.1	−4.2	−3.2	−5
대한주택공사	11.5	8.8	1.1	5	6.4	3.4	0.4	2.1
대한주택보증	85.5	79.3	12.7	17.9	46.9	32.3	3.9	5.3
제주국제자유	21.6	17.1	16.1	22.8	24.9	20	16	23.7
한국감정원	4.4	3.4	1.3	11	4.6	4.2	1.4	13
한국도로공사	22.3	1.6	0.1	0.3	25.5	1.9	0.1	0.3
수자원공사	12	8.2	1.3	1.5	9.1	6.8	1.2	1.4
한국철도공사	−18	3.7	0.9	1.6	−20.3	14.2	3.2	5.6
한국토지공사	24.5	14.2	2.9	15.4	25	12.9	2.8	16.2
컨테이너부두	−90.5	−54	−1.4	−18.4	−116.1	−427.2	−10.4	446.7
전 체	7.1	6.7	1.9	4.0	1.8	0.3	0.1	0.2

주: 1) 영업이익/매출액×100
2) 순이익/매출액×100
3) 순이익/총자산×100
4) 순이익/자기자본×100

■ 준정부기관

(단위: %)

	2007				2008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예금보험공사	89.6	46.1	15.1	16.4	89.9	62.4	18.1	19.1
한국주택금융공사	7.7	5.6	0.8	2.1	-70.6	-71.7	-10.1	-57.6
국민체육진흥공단	7.5	-	-	-	8.2	-	-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0.0	0.1	95.7	-	0.0	0.1	92.5
국민연금관리공단	0.1	-0.1	-1.4	8.1	0.1	-0.0	-0.4	2.0
근로복지공단	-1.0	0.2	0.2	4.7	-3.7	-1.9	-2.4	-99.9
한국자산관리공사	12.0	9.4	3.5	12.7	11.9	7.8	2.5	12.6
한국예탁결제원	42.3	62.3	5.0	17.6	31.8	61.6	4.3	11.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0.1	0.5	1.2	19.2	0.3	0.8	1.6	25.4
한국학술진흥재단	2.5	-0.1	-0.2	-2.0	-0.3	-0.0	-0.0	-0.2
한국과학창의재단	0.8	-	-	-	0.0	-	-	-
한국과학재단	-0.1	-0.0	-0.4	-53.8	-0.0	0.1	0.6	52.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	3.0	4.9	10.8	4.5	6.5	10.4	19.8
대한지적공사	4.2	2.1	3.3	10.4	3.4	2.5	4.2	11.8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1.1	-9.4	-3.0	-3.3	0.9	12.3	4.3	4.9
국제방송교류재단	-11.3	-10.3	-4.0	-4.2	-15.6	-14.8	-5.9	-6.3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7	-1.9	-1.7	-3.8	-1.4	-1.4	-1.2	-2.6
농수산물유통공사	1.3	2.3	0.6	4.7	0.8	5.4	0.9	6.7
한국농어촌공사	0.9	0.5	0.2	0.8	-0.3	1.4	0.7	2.4
축산물등급판정소	-94.9	1.2	8.1	13.4	-98.1	3.8	24.1	31.4
한국석유품질관리원	-1.1	0.4	0.2	0.2	-16.1	-13.4	-8.4	-8.5
한국광해관리공단	-5.0	3.3	1.7	2.4	-5.5	21.5	12.4	16.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8	6.1	14.7	31.2	-1.3	2.7	7.2	14.2
에너지관리공단	-1.9	4.5	0.4	23.4	-4.0	1.8	0.2	10.7
요업기술원	3.8	5.4	2.9	4.0	0.7	1.8	1.0	1.4
한국가스안전공사	1.2	0.6	0.2	1.3	2.8	3.1	1.1	6.1
한국디자인진흥원	-1.6	-1.7	-2.3	-3.3	-4.1	-4.5	-4.6	-7.3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1.1	2.8	0.8	14.7	1.6	-0.3	-0.1	-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4	5.6	6.0	16.5	6.4	7.3	6.6	18.0
한국산업기술재단	-0.8	0.2	0.4	0.7	-0.7	0.3	0.9	2.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0	0.1	0.4	6.4	-0.0	0.0	0.1	1.8
한국산업단지공단	7.1	9.4	3.2	4.6	-20.0	-18.0	-3.0	-6.1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3.9	-3.3	-5.4	-7.2	2.7	2.7	4.1	6.1
한국원자력문화재단	6.0	5.6	8.6	16.5	6.6	6.8	10.7	17.0
한국전기안전공사	5.9	3.3	7.3	-14.5	9.1	8.7	15.1	-796.6

(단위: %)

	2007				2008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한국전력거래소	0.6	4.9	2.1	2.3	1.4	0.9	0.4	0.4
한국우편물류지원단	0.4	0.3	1.0	-14.5	-2.8	-2.8	-13.9	59.4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2.6	0.3	0.8	1.5	2.4	0.3	1.0	1.9
한국소프트웨어진원	23.7	21.7	9.5	37.5	-7.6	-11.1	-3.8	-15.6
한국우편사업지원단	1.8	1.2	0.6	0.8	1.0	-2.5	-1.3	-1.7
한국인터넷진흥원	10.8	12.9	9.9	12.3	4.0	6.9	6.2	8.1
한국전파진흥원	8.8	20.8	5.0	6.0	13.2	21.6	5.4	6.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4.9	-4.6	-6.6	-8.0	-1.2	-2.3	-2.9	-3.9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	0.1	0.3	3.8	0.7	1.6	3.9	39.4
한국정보사회진흥원	0.0	-0.1	-0.1	-0.3	-0.1	-0.2	-0.2	-0.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5	3.3	4.1	7.6	10.7	10.9	13.0	22.9
국민건강보험공단	-1.1	0.5	2.2	2.5	4.3	6.0	23.4	26.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7	-3.5	-7.7	-11.4	-0.8	0.3	0.9	1.3
국립공원관리공단	-2.9	-2.6	-28.1	14.0	-1.3	0.6	3.1	-2.9
한국환경기술진흥원	0.6	0.8	0.2	16.9	0.1	0.3	0.1	6.5
한국환경자원공사	-0.8	1.7	0.5	-15.7	7.6	16.6	5.3	205.1
환경관리공단	0.4	1.1	0.3	15.0	1.0	1.3	0.5	18.4
한국고용정보원	-0.0	0.2	0.4	5.8	-1.5	-0.3	-0.8	-11.2
한국노동교육원	-0.4	1.5	0.9	1.0	-1.3	1.0	0.6	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1	0.3	0.6	4.4	-1.6	-0.3	-1.0	-9.7
한국산업인력공단	1.2	3.0	5.0	7.8	1.6	0.0	0.0	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3.6	1.1	1.7	4.7	-5.7	-1.5	-2.0	-5.3
교통안전공단	2.5	6.3	3.5	4.5	-4.5	-2.5	-1.4	-1.7
건설교통기술평가원	4.6	7.1	9.8	24.8	-2.3	0.8	0.8	2.9
한국시설안전공단	-0.2	1.0	1.0	1.8	0.2	0.9	1.0	1.8
한국철도시설공단	3.3	-53.5	-1.2	-1.8	5.5	-53.9	-1.2	-2.1
선박안전기술공단	-7.2	-6.1	-11.8	-175.6	-0.2	-0.1	-0.1	-1.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6.7	-5.2	-8.2	-19.7	9.7	0.6	0.7	2.3
독립기념관	-7.6	-9.7	-2.8	-3.3	-14.0	-10.7	-2.8	-3.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6	-1.2	-1.3	-1.7	0.5	0.9	0.9	1.2
한국청소년수련원	-0.2	0.8	4.3	7.6	4.5	6.3	23.9	37.8
한국청소년상담원	1.6	1.6	5.2	8.6	-0.4	-0.4	-1.2	-2.0
한국소비자원	-3.4	-2.6	-1.6	6.9	5.7	6.5	4.3	-22.7
도로교통공단	12.9	13.6	6.9	10.3	10.7	20.1	11.5	1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6.5	12.0	6.1	7.0	10.3	13.0	6.7	7.8
전 체	3.0	1.5	1.2	2.3	4.9	4.3	3.6	7.4

참 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안정성 지표

■ 공기업

(단위: %)

	2007				2008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
한국가스공사	151.7	227.9	30.5	209.8	141.1	438	18.6	144.3
한국전력공사	52.8	49.1	67.1	54.8	53.7	63.3	61.2	-486.4
인천국제공항공사	10.4	100.3	49.9	273.5	14.4	100.2	49.9	273.1
한국공항공사	668.9	8	92.6	-	539.9	9.4	91.4	-
부산항만공사	46	10.8	90.3	449.8	127.9	17.5	85.1	371.8
인천항만공사	218.8	1.7	98.4	993.9	181.4	1.7	98.3	3,419.2
한국조폐공사	185	31.4	76.1	790.1	148.2	33.4	74.9	258
한국관광공사	113.5	79.3	55.8	285.6	71.7	90.1	52.6	-377.3
방송광고공사	109.9	228.6	30.4	-	115.2	163.6	37.9	-
한국마사회	390.3	22.5	81.6	-	431.4	20.4	83	-
광물자원공사	324	103.4	49.2	-	179.9	85.9	53.8	5111.2
대한석탄공사	27.2	-233.9	-74.7	-89.1	26.9	-239.6	-71.6	-73.1
한국석유공사	535.8	64.4	60.8	2,250.4	266.7	73.3	57.7	1,848.4
지역난방공사	265.4	177.9	36	83.9	137.3	232.8	30	87.9
한국산재의료원	457.1	49.9	66.7	-	356.8	54.6	64.7	-
대한주택공사	363.8	357	21.9	337.2	306.8	420.5	19.2	201.9
대한주택보증	-	41.4	70.7	-	미산정	36.5	73.3	-
제주국제자유도시	333.4	41.4	70.7	2,227.2	1,224.7	47.7	67.7	1,393.3
한국감정원	121.2	765.9	11.5	-	119.6	812.5	11	-
한국도로공사	11.1	85.1	54	105.5	16	92.5	52	103.4
한국수자원공사	142.1	16	86.2	952.2	106.2	19.6	83.6	688.6
한국철도공사	96.4	72	58.1	-248.5	90	73.8	57.5	-261.1
한국토지공사	200.7	428.8	18.9	270.5	202.6	472.3	17.5	358.1
컨테이너부두	93.4	1191.3	7.7	-	51.9	-4,406.5	-2.3	-
전체	190.3	107.2	48.3	179.9	180.8	133.4	42.8	47.1

주: 1) 유동자산/유동비율×100
2) 부채/자기자본×100
3) 자기자본/총자본×100
4) 영업이익/이자비용×100

■ 준정부기관

(단위: %)

	2007				2008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
예금보험공사	1,038.1	8.4	92.2	-	1,274.5	5.3	95.0	-
한국주택금융공사	-	177.2	36.1	-	-	469.3	17.6	-
국민체육진흥공단	228.8	222.3	31.0	3,394.0	259.5	250.9	28.5	4,195.1
정보통신연구진흥원	98.9	86,697.0	0.1	-	99.1	123,513.2	0.1	-
국민연금관리공단	122.9	-	-	356.3	127.8	-	-	997.8
근로복지공단	198.6	1,863.7	5.1	-	195.2	4,127.9	2.4	-
한국자산관리공사	136.5	261.7	27.6	178.3	262.3	413.3	19.5	190.0
한국예탁결제원	130.8	252.0	28.4	-	120.6	171.6	36.8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18.0	1,496.5	6.3	-	115.6	1,469.4	6.4	-
한국학술진흥재단	36.6	948.4	9.5	389,630.6	23.2	1,190.8	7.7	-
한국과학창의재단	102.2	341.1	22.7	-	102.1	401.0	20.0	-
한국과학재단	102.9	13,116.1	0.8	-	103.1	8,125.9	1.2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0.3	121.8	45.1	-	173.5	90.3	52.5	-
대한지적공사	300.8	215.9	31.7	-	330.4	183.4	35.3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416.4	11.6	89.6	-	286.2	14.8	87.1	-
국제방송교류재단	1,286.5	5.6	94.7	-	775.7	7.8	92.7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84.4	119.8	45.5	-	97.2	121.1	45.2	-
농수산물유통공사	104.5	622.3	13.8	807.3	107.5	613.3	14.0	389.6
한국농어촌공사	145.7	249.6	28.6	11,368.2	144.0	241.7	29.3	-
축산물등급판정소	679.5	64.8	60.7	-	860.6	30.4	76.7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787.7	2.3	97.8	-	1,131.6	1.6	98.4	-
한국광해관리공단	197.0	44.5	69.2	-	233.5	31.9	75.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42.3	112.8	47.0	871.8	148.2	97.3	50.7	-
에너지관리공단	109.8	5,162.1	1.9	-	113.0	5,140.4	1.9	-
요업기술원	107.0	39.8	71.5	-	117.5	46.5	68.3	-
한국가스안전공사	136.3	487.1	17.0	13,854	145.4	448.1	18.2	105,376
한국디자인진흥원	52.6	43.1	69.9	-	21.7	57.1	63.6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96.0	1,641.7	5.7	57.3	97.4	2,533.0	3.8	64.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9.0	177.0	36.1	4,849	106.5	174.4	36.4	-
한국산업기술재단	130.7	84.2	54.3	-	123.0	118.0	45.9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01.5	1,608.9	5.9	-	99.8	1,547.7	6.1	-
한국산업단지공단	224.7	44.7	69.1	9,725	230.1	104.4	48.9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00.2	34.6	74.3	-	125.6	47.1	68.0	4,971.6
한국원자력문화재단	68.2	91.5	52.2	410.0	75.7	59.5	62.7	535.1

(단위: %)

	2007				2008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
한국전기안전공사	37.7	–	–	780.3	52.9	–	–	1,174.5
한국전력거래소	643.7	10.9	90.2	37,207.1	1,210.0	7.5	93.1	–
한국우편물류지원단	103.7	–	–	–	111.9	–	–	–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547.5	96.8	50.8	–	766.5	82.8	54.7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325.8	292.5	25.5	1,823.9	235.8	306.7	24.6	–
한국우편사업지원단	203.1	27.5	78.4	–	188.1	31.3	76.1	–
한국인터넷진흥원	325.6	24.1	80.6	–	293.0	30.4	76.7	–
한국전파진흥원	1,326.8	21.5	82.3	–	705.6	24.1	80.6	2,561.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35.3	20.7	82.8	–	116.9	35.3	73.9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83.3	1,180.4	7.8	–	170.3	898.9	10.0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07.7	306.4	24.6	–	108.5	293.2	25.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56.4	85.1	54.0	1,235.7	258.9	76.5	56.7	1,940.3
국민건강보험공단	1,100.0	13.7	88.0	–	1,076.4	13.3	88.3	167,57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76.3	47.4	67.8	–	234.4	54.7	64.7	–
국립공원관리공단	99.7	–	–	–	114.1	–	–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87.7	9,859.2	1.0	–	88.5	11,777.7	0.8	–
한국환경자원공사	128.9	–	–	–	98.6	3,778.9	2.6	63.8
환경관리공단	410.7	5,360.4	1.8	27.1	292.7	3,873.1	2.5	78.4
한국고용정보원	142.9	1,350.9	6.9	–	110.0	1,382.8	6.7	–
한국노동교육원	698.6	2.2	97.8	–	1,340.5	1.2	98.8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04.3	683.6	12.8	–	286.9	900.2	10.0	–
한국산업인력공단	146.7	56.8	63.8	269.9	158.8	74.0	57.5	1,692.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673.9	176.3	36.2	–	1,491.4	170.2	37.0	–
교통안전공단	250.9	28.1	78.0	259.0	152.5	26.6	79.0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65.8	153.9	39.4	–	123.1	263.9	27.5	–
한국시설안전공단	242.7	88.2	53.1	–	315.4	76.4	56.7	–
한국철도시설공단	13.9	56.3	64.0	5.5	9.2	77.1	56.5	10.0
선박안전기술공단	232.8	1,389.8	6.7	–	217.7	1,568.6	6.0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40.9	139.7	41.7	–	120.7	216.4	31.6	–
독립기념관	139.9	21.3	82.5	–	142.7	16.7	85.7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52.3	31.2	76.2	–	276.9	31.6	76.0	–
한국청소년수련원	478.1	76.5	56.6	–	325.6	58.0	63.3	–
한국청소년상담원	994.3	65.8	60.3	–	3,156.3	73.2	57.7	–
한국소비자원	89.9	–	–	–	74.8	–	–	807.4
도로교통공단	212.1	49.2	67.0	–	2,217.5	15.0	86.9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773.3	15.1	86.9	–	879.9	16.0	86.2	–
전 체	198.7	93.8	51.6	265.7	225.1	105.3	48.7	472.3

2009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 본 자료는 2009년 11월 2일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에서 발표한 「2009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Ⅰ. 09. 10월 소비자물가동향(11. 2(월) 통계청 발표) 분석

요 약

■ 09.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0%(전월 대비 △0.3%) 상승

- 원자재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 효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보다 상승률이 △0.2%p 둔화되면서 5개월 연속 물가안정 목표범위(3.0±0.5%) 하회

  * 월별 소비자물가 동향(전년동월 대비, %): (09. 1) 3.7 (2) 4.1 (3) 3.9 (4) 3.6 (5) 2.7 (6) 2.0 (7) 1.6 (8) 2.2 (9) 2.2 (10) 2.0

- 전월 대비로는 변동성이 높은 농축수산물 및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여타 부문에 전반적인 물가안정 흐름이 지속되면서 08. 11월(△0.3%)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0.3%) 시현

■ 09.10월 근원물가 상승률(전년동월 대비)은 2.6%를 기록하면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2%대 안정세 지속

- 11월부터 환율하락 효과가 본격 반영되면서 근원물가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한편,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1.5% (전월 대비 △0.4%) 상승하여 안정된 수준 유지

■ 09년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수급 여건, 유가 추이 등에 따라 가변적이나 당초 전망한 2% 후반대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

-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환율하락으로 물가 파급효과가 다소 제한
- 09.4/4분기 물가도 당초 예상(2% 중후반대)보다 낮은 2% 초중반대 수준 예상

  * 분기별 소비자물가 동향(전년동분기 대비, %): (08. 1/4) 3.8 (2/4) 4.8 (3/4) 5.5 (4/4) 4.5 (09. 1/4) 3.9 (2/4) 2.8 (3/4) 2.0

Ⅱ. 09.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 09.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 대비)은 9월보다 △0.2%p 둔화된 2.0% 시현

* 소비자물가 동향(전년동월 대비, %): (09. 1) 3.7 (2) 4.1 (3) 3.9 (4) 3.6 (5) 2.7 (6) 2.0 (7) 1.6 (8) 2.2 (9) 2.2 (10) 2.0

■ (소비자물가) 09.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0%(전월 대비 △0.3%) 상승

- 물가안정 목표범위(3.0±0.5%)보다 낮은 상승률을 5개월 연속 시현하는 등 전반적인 물가안정

흐름 지속

• 전년도 기저효과 및 원자재가격 강세 등으로 상승률이 소폭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으나,

– 환율하락이 전 품목에 걸쳐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달보다 상승률이 △0.2%p 둔화

* 환율상승률(전월 대비, %) : (08. 10) 17.4 → (09. 10) △3.6

– 작년 10월보다는 하락폭이 크지 않았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이 다소 하락한 것도 09. 10월 물가안정에 일조

• 전월 대비로는 변동성이 높은 농축수산물 및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여타 부문에 전반적인 물가안정 흐름이 지속되면서 08. 11월(△0.3%)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0.3%) 시현

월별 소비자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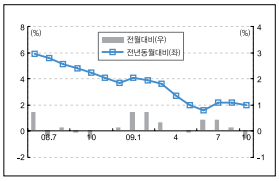

10월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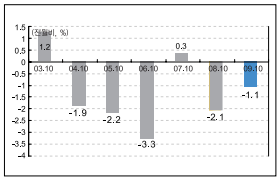

■ (부문별 동향) 농축수산물 및 석유제품 가격 등이 하락하면서 전월 대비 △0.3% 하락

• (농축수산물) 출하시즌 도래, 양호한 기상여건 등에 힘입어 전월 대비 △1.1% 하락

– 축산물은 계절적 수요감소로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이 하락한 반면 국내산 선호 증대(쇠고기이력제 등 영향)로 쇠고기 가격의 강세가 지속

– 수산물은 본격적인 성어기가 도래했으나 일부 어종(명태, 조기 등)의 어획량 부족으로 지난달보다 다소 가격 상승

* 주요 등락품목(전월 대비 상승률, %) : 쌀(0.0), 무(△3.6), 배추(△21.1), 포도(15.8), 국산쇠고기(3.7), 돼지고기(△4.1), 닭고기(△1.7), 고등어(△3.8), 명태(1.6), 조기(0.2)

• (공업제품) 석유제품의 경우 환율하락 및 9월말~10월초 국제가격 약세 등이 반영되어 전월 대비 △3.1% 하락 (다만, 11월에는 국제유가 강세, LPG 공급가 인상 등으로 10월보다 가격상승 전망)

* 두바이유($/배럴) : (09.4) 50.0 (5) 57.9 (6) 69.4 (7) 65.0 (8) 71.4 (9) 67.7 (10) 73.2

** 석유제품별 상승률(전월 대비, %) : (휘발유) △3.7, (경유) △3.3, (등유) △2.7,(LPG자동차용) △0.1, (LPG취사용) △0.1

– 여타 공업제품은 환율하락으로 가격 안정세가 지속된 가운데 자동차 가격은 상승(신차출하 효과)하고 컴퓨터제품 가격은 하락(환율하락 반영)

* 원/달러환율 : (09. 4) 1,342 (5) 1,259 (6) 1,261 (7) 1,264 (8) 1,238 (9) 1,219 (10) 1,175

• (공공요금) 일부 진료비 등 상승으로 전월 대비 0.1% 상승

* 공공요금 상승률(전월 대비, %) : (09. 5) △0.1 (6) 0.2 (7) 0.6 (8) 0.2 (9) 0.0 (10) 0.1

• (개인서비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외식요금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환율하락(국제항공료 등 인하) 및 디플레 갭 지속 등으로 전월 대비 보합 시현

* 개인서비스 상승률(전월 대비, %) : (09. 5) 0.1 (6) 0.1 (7) 0.2 (8) 0.2 (9) 0.0 (10) 0.0

09. 10월 부문별 소비자물가 동향

구 분	전체	농축 수산물	공업 제품	석유류	집 세	공공 요금	개 인 서비스
전월비(%)	△0.3	△1.1	△0.5	△3.1	0.1	0.1	0.0
기여도(%p)	△0.26	△0.09	△0.16	△0.18	0.01	0.01	0.00
전년동월비(%)	2.0	5.5	1.1	△10.6	1.1	2.3	2.0
기여도(%p)	1.98	0.45	0.36	△0.68	0.11	0.37	0.68

■ (근원물가) 09. 10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는 전월 대비 0.1%, 전년동월 대비 2.6% 상승

• 공급측 교란요인의 영향을 받는 부문을 배제한 채 전반적인 물가기조를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지속

⇒ 연초 환율상승 등으로 그간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 환율하락으로 소비자물가와의 괴리가 빠르게 축소되고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낮게 유지

■ (생활물가) 일반 국민들의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는 09. 10월 1.5%(전년동월 대비)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 지속

최근 근원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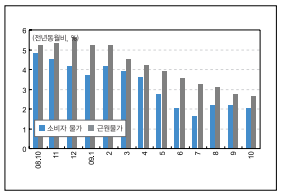

최근 생활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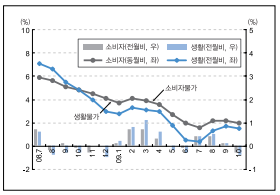

'09년 11월중 국고채 발행 · 조기상환 · 교환 계획 및 10월중 발행실적

* 본 자료는 2009년 9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에서 발표한 「'09년 11월중 국고채 발행 · 조기상환 · 교환 계획 및 10월중 발행실적」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09년 11월중 49,300억원 수준에서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임

- 11월 3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8,000억원은 "국고 0400-1206"으로 통합발행
- 11월 10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19,300억원은 "국고0500-1409"로 통합발행
- 11월 17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4,000억원은 "국고0575-1809"로 통합발행
- 11월 24일(화) 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8,000억원은 "국고0550-2803"으로 통합발행

※ (비경쟁인수권한Ⅰ)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9,860억원(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낙찰금리로 우선 배정

'09. 11월중 국고채권 발행일정

(단위: 억원)

구 분	입찰일	대금납입일	발행일	3년	5년	10년	20년
명 목	11. 2(월)	11. 3(화)	'09. 6.10	8,000			
명 목	11. 9(월)	11. 10(화)	'09. 9.10		19,300		
명 목	11. 16(월)	11. 17(화)	'08. 9.10			14,000	
명 목	11. 23(월)	11. 24(화)	'08. 3.10				8,000

※ 금융지원: 11월에 약 1.5조원 규모로 지원 예정

- PD가 보유 국고채를 담보로 제공시 저리에 자금 지원

■ 아울러 '09년 11월중 3회에 걸쳐 총 3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조기상환(buyback)하고,

- 총 1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교환(conversion offer)할 계획이며 구체적 내용은 별첨 1과 같음

별첨 1 '09년 11월중 국고채 조기상환 및 교환 계획

1. 국고채 조기상환 계획

■ 11월중 3회에 걸쳐 총 3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조기상환할 계획

- (대상 및 규모) 국고채 조기상환 세부종목 및 규모는 다음과 같음

일시	국고채 종목	규모
11.11(수) 10:40~11:00	■ '09.12월 만기도래물 (0475-0912, 3년 만기채) ■ '09.12월 만기도래물 (0350-0912, 5년 만기채) *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11. 6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1.0조원
11.18(수) 10:40~11:00	■ '11. 3월 만기도래물 (0500-1103, 5년 만기채) ■ '11. 4월 만기도래물 (0765-1104, 10년 만기채) ■ '11. 7월 만기도래물 (0691-1107, 10년 만기채) ■ '11. 9월 만기도래물 (0475-1109, 5년 만기채) ■ '11. 10월 만기도래물 (0662-1110, 10년 만기채) *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11. 13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1.0조원
11.25(수) 10:40~11:00	■ '11. 3월 만기도래물 (0500-1103, 5년 만기채) ■ '11. 4월 만기도래물 (0765-1104, 10년 만기채) ■ '11. 7월 만기도래물 (0691-1107, 10년 만기채) ■ '11. 9월 만기도래물 (0475-1109, 5년 만기채) ■ '11. 10월 만기도래물 (0662-1110, 10년 만기채) *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11. 20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1.0조원

• (기대효과)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과물 국고채를 매입하여 국채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만기분산을 통한 차환위험 완화 및 시장안정 효과 기대

2. 국고채 교환 계획

■ 총 1.0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교환할 계획

• (대상 및 규모) 국고채 교환 세부종목 및 규모는 다음과 같음

일시	발행대상 국고채종목	매입대상 국고채종목	규모
11.19(목) 10:40 ~ 11:00	국고 0400-1206 (2012 .6. 10 만기, 3년물)	▪ 국고 0475-1203 (2012. 3. 10 만기, 5년물) ▪ 국고 0728-1204 (2012. 4. 17 만기, 10년물) ▪ 국고 0664-1207 (2012. 7. 18 만기, 10년물) ▪ 국고 0525-1209 (2012. 9. 10 만기, 5년물)	1.0조원

• 국고채 교환일 및 차액정산 결제일 : '09. 11. 23(월) 15:50 까지

※ 구체적 실무내용은 공고문(11. 16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 (기대효과) : 유동성이 낮은 舊국고채가 유동성이 높은 新국고채로 대체되어 국채거래를 활성화

* 비지표 국고채는 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없어 유동성이 매우 낮은 반면, 신규 발행 지표 국고채는 투자의 기준이 되는 지표채권으로서 거래가 활발

별첨 2 '09년 10월중 국고채 발행 실적

■ '09년 10월중 7조 1,3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

'09. 10월중 국고채권 발행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경쟁입찰			비경쟁인수권한Ⅱ		국고채 교환 (C)	합 계 (A+B+C)
	입찰일	발행 계획	발행규모 (가평낙찰 금리,%) (A)	행사기간	발행 규모 (B)		
명목3년물 (국고0400-1206)	'09. 10. 5	13,030	15,000 (4.33)	'09. 10. 5~ 10. 8	-	-	15,000
명목5년물 (국고0500-1409)	'09.10.12	15,000	18,100 (4.84)	'09. 10. 12~ 10. 15	170	10,430[1]	28,700
명목10년물 (국고0575-1809)	'09. 10. 19	14,000	17,000 (5.54)	'09. 10. 19~ 10 .22	950	-	17,950
명목20년물 (국고0550-2803)	'09. 10. 26	8,000	8,370 (5.81)	'09.10. 26~ 10. 29	1,280	-	9,650
합 계		50,030	58,470		2,400	10,430	71,300

1」 '09. 10. 22일, 국고채 교환(10,430억원) 실시

복권기금, '10년 소외 · 취약계층에 7,600억원 지원

* 본 자료는 2009년 9월 2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사무처에서 발표한 「복권기금, '10년 소외 · 취약계층에 7,600억원 지원」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총 3조 335억원 규모의 '10년도 복권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였음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상

- 총수입은 복권판매 증가 등으로 2009년도 대비 10.7% 증가한 3조 335억원으로,
- 지출은 당첨금 등 복권판매사업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사업비로 9,182억원('09년 대비 1.5% 증가)을 배정하였음

■ 내년도 복권기금사업은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으로 구분 지원됨

- 법정배분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159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저소득가정지원사업에 107억원 등 10개 기관에 2,506억원
- 공익사업은 서민주거안정사업에 4,719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292억원 등 10기관 18개 사업에 6,676억원을 배정하였음

■ 복권기금사업 예산편성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대해 7,620억원을 집중 지원하여 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었음

☞ 복권판매수익금을 취약 · 소외계층 복지를 위해 환원한다는 의미

◈ 2010년도 복권기금사업비의 중점 재원배분 내역

i)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사업 지원(4,719억원)

–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 총 8,051호를 매입 또는 임대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사업

ii) 다문화가정 ·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1,409억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확대(만 10세 → 12세/559억원)

–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사회정착 기회 제공을 위한 이주여성 긴급구호(47억원) · 가족방문교육서비스(198억원) · 통 · 번역 서비스 제공(24억원) 등

iii)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80억원) 등 취약계층 지원(1,255억원)

– 국가보훈 대상자 복지시설 개선 사업(176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292억원),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사업(28억원) 등

iv) 도서 · 벽지 ·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소외지역 문화나눔 지원(237억원)

–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순회방문 문화공

연 지원(58억원) · 저소득층의 문화 향수 제공을 위한 문화바우처사업(50억원) 등을 통한 문화양극화 해소

■ 특히 내년도의 경우 복권기금 특성에 알맞는 취약계층 신규지원 사업을 발굴 · 선정

◈ 2010년도 신규사업 선정내역
- 노인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통해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취약계층소비자교육사업」 : 10억원
-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출소자기능취득 전문처우센터 구축」 : 28억원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의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안산에 「글로벌 다문화센터 구축」 : 20억원

■ 앞으로 복권기금지원 사업이 실효성 있게 소외계층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운영실태 점검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

참고 1 복권기금사업 배분 현황

(단위: 백만원)

법정대상 기관	배분비율	'10 예산*
과학기술진흥기금	12.583	31,529
국민체육진흥기금	10.371	25,988
근로자복지진흥기금	5.310	13,305
중소기업진흥기금	6.356	15,926
문화재보호기금***	14.286	35,840
지방자치단체	17.267	43,266
제주개발특별회계	17.267	43,26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286	10,739
산림환경증진자금	5.846	14,648
보훈복지의료공단	6.428	16,108

법정배분 사업** ····· 250,615

공익사업 분야	지원사업	'10 예산
임대주택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	471,936
국가 유공자복 사업 지원	국가유공자요양시설 건립	17,649
저소득층 · 장애인등 소외계층 복지	보조공학기기지원	8,000
	가정 · 성폭력피해여성지원	6,184
	한부모가족지원	55,934
	다문화가정지원	42,337
	금융소외자신용회복지원	2,800
	소외청소년자립생활관지원	2,120
	출소자기능취득지원	2,750
	아동청소년치료재활센터	2,964
	저소득층난방지원	29,200
	취약계층소비자교육	1,000
문화 · 예술진흥사업	문화나눔사업	23,700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재난재해)	재해재난구호	1,000

공익지원 사업 ····· 667,574

복권사업비 ····· 918,189

* 2010 예산은 국회제출 기준

** '10년부터 법정배분비율이 복권수익금의 30 → 35%로 변경

*** '10년부터 문화재보호기금은 공익사업에서 법정배분사업으로 변경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조사결과

* 본 자료는 2009년 9월 23일 국세청 소득지원과에서 발표한 「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조사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09. 10. 14 ~ 10. 18일까지 5일간 근로장려금 최초 수급자를 대상으로

• 근로장려세제 집행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전국 근로장려금 수급자 1,000명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현대리서치 의뢰)
◇ 조사시기 : '09.10. 14(수) ~ 10. 18(일)
◇ 신뢰수준 : 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
◇ 설문내용 : 근로장려세제 관련 만족도, 근로장려금의 실생활 도움정도 및 사용처, 제도 인지경로 등 13가지 항목

■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82.4%)를 보였으며

전반적 만족도

(단위: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37.0	45.4	15.6	1.4	0.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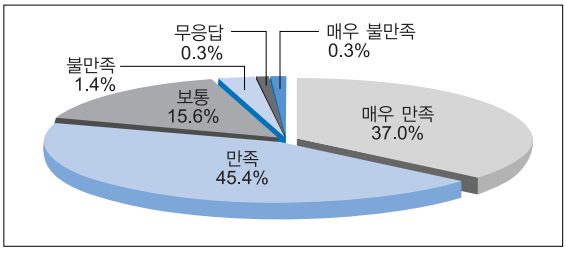

•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지급 및 처리과정 등 집행과정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음(86.5%~88.3%)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직원 안내태도 및 내용	39.2	47.3	7.8	4.8	0.2
지급 및 처리과정	36.3	52.0	7.7	3.2	0.2

•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남성근로자보다 여성근로자, 대도시보다는 군 · 읍 · 면 거주자가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참고 신청자 특성별 만족도 분포

(단위: %)

구 분 \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82.4	15.6	1.7
근로소득구간	점증	82.6	15.3	1.9
	평탄	88.8	9.6	0.8
	점감	76.3	21.5	2.2
성별	남성	81.5	16.4	1.8
	여성	86.0	12.6	1.4
연령	40대이하	82.1	17.0	0.9
	50대	81.5	16.1	2.1
	60대이상	84.6	13.9	1.1
거주지역	대도시	81.3	16.3	1.9
	중소도시	80.1	17.1	2.5
	군렝쓿면	85.4	13.7	0.8
자녀 수	1명	82.0	14.9	2.7
	2명	80.3	18.1	1.4
	3명이상	85.3	12.9	1.5

■ 근로장려금의 실생활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는 의견이 90.3%이고

– 특히, 최대금액인 120만원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98.4%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음

• 또한, 금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97.9%가 내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의사를 밝히고 있어

–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됨

■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대부분 생활비(60.8%)에 사용하고

• 자녀 교육비에도 30.7%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생활비	교육비	기타
60.8	30.7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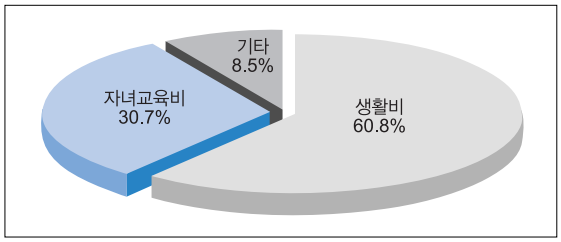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 리플릿, 안내문 등 유인물(42.9%)과 직원의 안내(28.5%)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정보를 얻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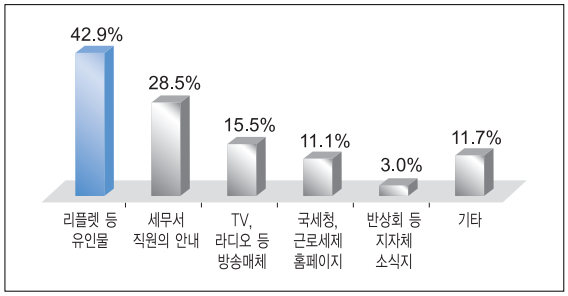

• 대부분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80.1%)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 분	계	방문신청	우편신청	전자신청	대리신청	무응답
응답비율	100%	80.1%	10.7%	5.1%	3.8%	0.3%

■ 방문신청한 이유는

• '인터넷 사용방법을 몰라서' (42.9%)와 세무서 '방문신청이 편해서' (38.1%)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음

• 또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청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복잡하다는 의견도 15.2%가 되어 향후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마지막으로, '만약 일을 많이 하여 급여가 많아질수록 근로장려금도 증가한다면, 내년부터 일을 더 많이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 응답자의 88.4%가 '더 일할 의향이 있다' 고 답변(연 800만원 미만의 점증구간은 90.5%)하였음

• 그러나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연구 · 검토되어야 할 과제임

■ 이와 같이 근로장려세제 집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 각계 국민과 관련 사업자의 협조 및 종사직원의 적극적인 집행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설문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근로장려세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참고 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 근로장려금 지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구 분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응답비율	100%	37.0%	45.4%	15.6%	1.4%	0.3%	0.3%

■ 근로장려금 상담직원의 안내태도 및 내용 만족도

구 분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응답비율	100%	39.2%	47.3%	7.8%	4.8%	0.2%	0.7%

■ 근로장려금 업무처리 만족도

구 분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응답비율	100%	36.3%	52.0%	7.7%	3.2%	0.2%	0.6%

■ 근로장려세제 인지경로(복수응답)

구 분	유인물	직원 안내	방송 매체	홈페 이지	반상 회보	기타
응답비율	42.9%	28.5%	15.5%	11.1%	3.0%	11.7%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인지도

구분	계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전혀 모름
응답비율	100%	19.5%	57.5%	23.0%

■ 근로장려금 신청시 도움받은 주체

구 분	계	스스로 작성	세무서 직원	세무대리인	기타
응답비율	100%	46.9%	46.8%	2.5%	3.8%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구 분	계	방문신청	우편신청	전자신청	대리신청	무응답
응답비율	100%	80.1%	10.7%	5.1%	3.8%	0.3%

* 군 · 읍 · 면 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우편신청 · 전자신청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세무서 방문신청 이유(세무서 방문신청자 : 801명)

구 분	계	인터넷 사용못함	편해서	전자 신청제도 몰라서	전자 신청이 복잡해서	기타
응답비율	100%	42.9%	38.1%	9.5%	5.7%	3.8%

■ 근로장려금 신청시 불편한 점

구 분	계	없음	용어 어려움	절차복잡	안내미흡	기타
응답비율	100%	77.3%	8.3%	5.9%	4.1%	4.4%

■ 근로장려금 실생활 도움 정도

구 분	계	매우 도움 됨	다소 도움 됨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무응답
응답비율	100%	52.9%	37.4%	8.0%	1.2%	0.5%

■ 근로장려금 사용처

구 분	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부채 상환	저축	기타
응답비율	100%	60.8%	30.7%	4.1%	0.9%	3.5%

■ 향후 근로장려금 신청의사

구 분	계	꼭 신청함	가급적 신청함	신청 안 함
응답비율	100%	85.5%	12.4%	2.1%

■ 근로장려금과 근로유인 관계

구 분	계	더 일할 의향 있음	더 일할 의향 없음	모르겠음
응답비율	100%	88.4%	5.9%	5.7%

* 점증구간이 상대적으로 근로유인 효과가 큼 (90.5%)

납세자와 함께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도입

- 15개 중견기업과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운영 -

* 본 자료는 2009년 9월 28일 국세청 법인과에서 발표한 「납세자와 함께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도입」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를 소중한 고객으로 섬기는 세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를 도입하여 이번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운영하게 되었음
- 지금까지 일부 남아있는 수직적 사고와 관행에서 벗어나 국세청과 납세자가 동반자로서 세무상 쟁점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같이 해 나간다는 것으로

– 국세청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활성화되는 경우

- 기업은 세무상 쟁점을 국세청과 공유하고 적시에 해결하여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및 납세협력비용 등의 절감을 가져오고
- 성실납세협약 체결 기업을 중심으로 최적의 성실신고 여건이 조성되는 등 소통 · 신뢰 · 협력의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국세청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1. 도입배경 및 필요성

■ 오늘날 기업은 대형화 · 국제화되고 거래가 다양해짐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세무 쟁점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며

- 세법도 다양한 경제현상만큼이나 복잡하고 기술적이며 수시로 변하는 속성이 있음
- 기업 CEO 입장에서 세금문제가 적시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투자 · 경영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을 수 있으며,

  * (예) 거액의 설비투자나 R&D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 기업이 세무쟁점을 제때에 해소하지 못하고 잘못 신고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되는 한편, 과중한 가산세와 불복비용 등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됨

■ 이에 따라 국세청과 납세자가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세무상 문제점을 꺼내 놓고 함께 고민하여 적시에 해결해 가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2. 제도의 개요

■ 윤리 · 투명경영을 선도하고 이를 담보할 적절한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Compliance Agreement)을 체결하여

- 정기 · 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공개 · 협의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등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선진국형 제도임

* 내부세무통제시스템 : 제반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법인 내부의 통제기준 및 통제절차

3. 대상 기업은?

■ 국세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이고 그간의 납세문화를 고려하여 올해 11월부터 내년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다양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 우선,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제도 시행에 대비한 시범실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함
- 앞으로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시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실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임

* 현행 세무관리의 단점을 보완 · 대체하여 성실신고 수준의 전반적인 제고를 목표로 함

4. 시범실시 참여 기업은?

■ 이번 시범실시를 위하여 총 40개 기업이 협약체결을 신청하였으나,

- 내부통제기준 등 요건심사 결과와 내 · 외국계 법인 비중, 업종 및 법인 규모별 분포, 시범운영 기간인 점 등을 감안하여, 25개 기업을 제외하고 부득이 15개 기업만을 선정하였으며
- 지난 10. 30(금) 15개 법인의 대표와 각 지방청 세원관리국장이 성실납세이행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새로운 수평적 납세문화 정착의 첫 걸음을 내딛었음

협약체결 기업 현황

구분	지방청별		내국 · 외국계별		상장구분		업 종 별			
	서울청	중부청	내국	외투	상장	비상장	제조	판매	어업	기타
법인 수	10	5	11	4	5	10	11	1	1	2

*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수상 : 7개 기업(훈포장 2, 대통령 4, 국세청장 1)

* 외투법인 투자국 : 일본 3, 미국 1

4. 세무쟁점 처리 절차는?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해 약정된 모든 세목(법인세 · 국제조세 · 부가세 · 원천세 등)을 대상으로

- 정기 또는 수시 미팅시 기업이 공개하거나 국세청이 도출하는 세무 쟁점은 물론 그 밖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 전담조직(서울청 5명, 중부청 3명)과 납세자가 납세현장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적극 해결하고
- 쟁점사항이 복잡 · 난해하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또는 「법령해석 질의」를 통해 해결되도록 조력하는 등 불확실한 세무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임

5. 외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 네덜란드,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중이거나 도입을 준비중이고 OECD에서도 기업과 발전적 신뢰 ·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성실신고 유도를 권고하고 있음

붙임 1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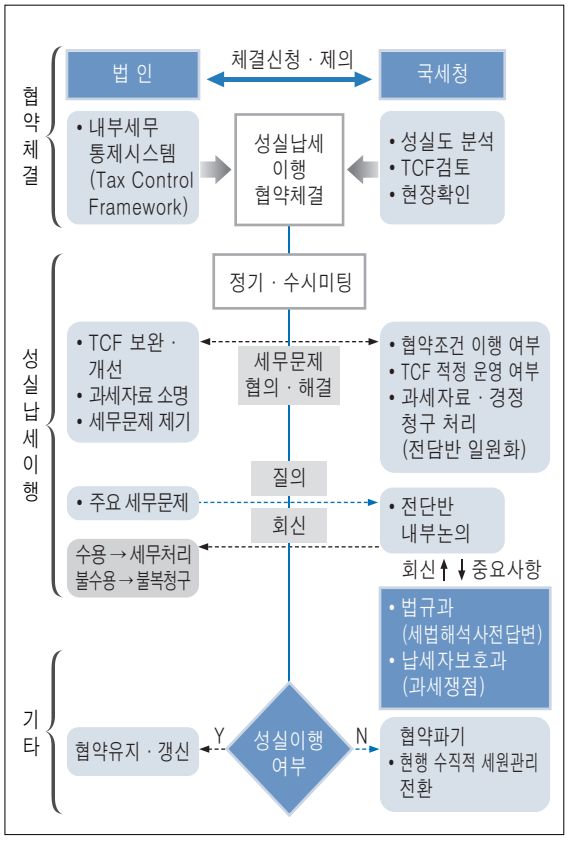

붙임 2 주요 국가별 유사제도 운영현황

구 분	네델란드	미 국	호 주
제도 명칭	수평적 세원관리 Horizontal Monitoring	납세성실도 사전확인제도 Compliance Assurance Process(CAP)	성실납세약정제도 Annual Compliance Arrangement(ACA)
제도 특징	• 국세청과 적절한 내부세무통제 시스템(TCF)을 갖춘 납세자가 성실납세 이행 협약을 체결 • 납세자가 사전에 중요한 세무문제를 공개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답변 · 해결 • 양방향 대화방식	• 국세청은 신청 납세자의 해당 연도 중요 거래 및 세무처리를 사업연도 중 실시간으로 조사 • 납세자는 모든 거래정보 및 세무처리방침 등을 공개 • 중요 세무문제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 · 합의	• ATO(국세청)가 제시한 건전한 기업경영구조 준수 의무 • 중요 세무문제 과세당국에 완전 공개, 공동으로 협의하여 문제 해결 • 매년, 수시 워크숍 개최
도입 시기	2005년	2005년	2008년
협약 체결 기업수	1,486개(2008년) -대기업, 중소기업-	95개(2008년) -대기업-	2개 -대기업-
대상 기업	• 내부세무통제 시스템(TCF)을 갖춘 모든 기업	• 대기업(업종 선도기업, 조세회피 없는 기업, 회계기준 준수기업 등) • TCF 기준 없음	• 건전한 기업경영 구조와 세무위험 관리체계를 갖춘 대기업
대상 세목	모든 세목 (일부 세목도 가능)	별도 규정 없음	법인세, 부가가치세

■ 네덜란드의 경우, '05년 도입(20개 기업 시범실시) 한 후 '08년 현재 1,486개 기업과 협약체결 실시 중

■ 미국은 엔론, 월드컴 등의 분식회계 여파에 따른 사베인-옥슬리(Sarbanes-Oxley)법과, 법인세 불확실성 회계처리 기준(Fin 48)이 제정된 이후에는

• 기업의 불확실한 세무처리의 원천적인 제거와 조기 해소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IRS에서는 다양한 세무쟁점 조기 해소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Pre-filing Agreement(신고전사전합의제), APA(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 Compliance Assurance Process(납세성실도사전확인제도) 등

e세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

* 본 자료는 2009년 10월 30일 국세청 전자세원과에서 발표한 「e세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11월 2일부터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연습 가능

■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사업자가 발행 방법 등을 미리 연습하여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11월 2일~12월 18일까지 시험 운영에 들어감

-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면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 전송시스템을 개발하여 왔음

■ 사업자는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서 가상 발행연습 및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음

- 「e세로」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e세로」에서 건별 발행 또는 일괄 발행 메뉴를 선택하면 됨
    * 일괄발행시에는 미리 내려 받은 엑셀 서식에 그날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입력한 후 "일괄 발행" 클릭하여 발행 · 교부
- 발행 · 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자 또는 수취자가 e세로에서 즉시 조회하고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 시험운영기간 중 「e세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연습발행으로, 실제 발생하는 거래는 금년 말까지는 현행 세법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함

- 대용량 연계사업자(ASP, ERP)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화인증(10월부터 진행)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업무도 함께 추진되고 있음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시스템 임대 운영사업자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 또한, 시험운영 기간에는 대용량 연계사업자로부터 가상자료를 전송받는 등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하므로 대용량 연계사업자의 많은 참여바람

2.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 전화발행(☎1544-2030) 가능

■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 방법을 마련하였음

- ARS 전화발행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 ARS 전화발행은 보안카드에 설정한 비밀번호 입

력 →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발행하면 됨

3. 상담센터 개설 및 사업자 개별 · 직접 홍보 실시

■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궁금증을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하기 위해 전용상담센터(☎1544-2030)를 11. 2일 개설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 활용방법,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 홈페이지 메뉴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됨

■ 시험운영 기간 중에는 전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인 발행방법 등에 대하여 개별 홍보 ·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할 것임

4. 사업자는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이메일을 미리 준비해야

■ 전자세금계산서 시험운영과 2010년 제도 시행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이메일을 준비해야 함

• 공인인증서는 홈페이지 가입, 로그인, 전자서명 등에 필요하며 거래처 이메일은 세금계산서 교부를 위해 필요

* 공인인증서의 구체적인 발급방법, 준비서류, 가격, 발급대행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인증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e세로에 전송된 시점에 수취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매출자 · 매입자 모두 불이익이 없도록 세법령을 보완중임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 이용방법

■ 회원가입 절차

① 「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②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최상단 회원가입 클릭

③ 사업장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개업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와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세무서에 「사용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록 필요

*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 가입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범위가 제한됨

④ 아이디,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소재지 등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으로 회원가입 절차 완료

■ 건별발행 및 일괄발행 절차

• 건별발행 절차

① 「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 건별발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중 선택

③ 세금계산서 분류(일반, 영세율, 위 · 수탁, 위 · 수탁 영세율) 선택

* ②에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정사유 선택 항목 추가

④ 세금계산서 기재항목 입력

⑤ 기재항목 입력완료 후 발행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⑥ 승인번호 생성과 함께 발행완료

• 일괄발행 절차

① 「e세로」에서 미리 내려 받은 엑셀 서식에 그날 교부할 세금계산서 내용 입력(최대 100건)

② 「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③ 일괄발행 화면에서 작업구분 표시에 「엑셀파일 등록」 선택, 세금계산서 종류 구분에 발행하고자 하는 일반(영세율)과 위 · 수탁(위 · 수탁 영세율) 중 선택

④ 「엑셀파일 일괄작성」 항목의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세금계산서 종류 구분과 일치하는 미리 작성된 엑셀파일 선택

⑤ 「전자세금계산서 일괄작성 파일변환」 버튼을 클릭한 후 발행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 중 최대 10건을 선택

⑥ 선택된 10건 확인 후 일괄발행 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⑦ 10건에 대한 승인번호 생성과 함께 발행완료, 나머지 건에 대하여 ⑤~⑦ 반복

■ 발행 · 수취내역 조회 절차

• 상세 목록조회 절차

① 「e세로(www.esero.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 발행 · 조회 서비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클릭

③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화면에서 매입 · 매출 구분, 조회기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 다양한 조회조건 입력

④ 조회된 목록 화면에서 「파일 내려 받기」 클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엑셀파일로 내려 받기 가능

* 조회된 목록에서 개별 세금계산서 클릭시 개별자료 상세조회 및 출력, XML 파일로 내려 받기 가능

• 매입 · 매출처별 합계표 조회 절차

① 「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② 발행 · 조회 서비스의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클릭 후 매출 또는 매입 합계표 선택

③ 조회범위 설정 후 조회 클릭하여 매출 또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총합계(매출 ·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등) 조회

④ 「명세서 조회」 클릭하여 매출 · 매입처별 명세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활용

어렵고 복잡한 세무문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1년간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 –

* 본 자료는 2009년 10월 28일 국세청 법규과에서 발표한 「어렵고 복잡한 세무문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Ⅰ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의 도입배경과 시행효과

■ 국세청은 기업활동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 지난해 10월 선진국의 Advance Ruling제도를 벤치마킹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도입, 시행 1년이 되었음

■ 사전답변제도는 사업자가 '실명'으로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사전(법정신고 기한 전)에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는 제도로서,

• 질의한 사실관계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할 경우 국세청이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는 구속력이 부여됨

* '08년까지 OECD 국가(30개) 중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Advance Ruling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호주 등 23개국임

■ 동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으므로

• 서면질의 · 전화상담과 달리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 사전에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 → 납세자 권익 보호

• 복잡한 세무문제를 로펌 · 회계법인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고, 과세관청과의 분쟁도 예방 → 납세협력비용 절감

Ⅱ 시행 1년간의 운영성과

■ 납세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세법 적용에 관한 애로사항 총 150건(월 평균 13건)을 접수하여, 127건을 해결하였으며, 현재 23건은 답변 준비 중에 있음

• 세무사 ·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이용이 62%(94건)로 많았으며,

– 외국기업도 외국인투자 감면 등의 문제로 사전답변을 활용

• 세목별로는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질의가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세(40건), 소득세(21건), 국제조세(7건) 순임

• 업종별로는 각종 설비투자, 공장 이전 등이 많은

제조업(30건)이 신청 빈도가 높았으며, 부동산업(23건), 금융보험업(22건), 서비스업(11건), 건설업과 도 · 소매업(각 8건) 순임

- 질의 시기는 세무신고 전에 답변을 받아 신고에 활용하기 위해 주로 결산시기 또는 신고기간에 집중

* 법인세의 경우 12월, 3월, 6월, 소득세의 경우 1월, 5월에 집중

■ 동 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행 1년간 89%의 만족도를 보였음

* 항목별 만족도 : 답변의 명확성 · 충분성 91%, 답변의 신속성 82%, 제도운영의 적정성 92%

- 이는 기존 서면질의와 달리 구속력 있는 답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08년 기존 서면질의 만족도 75%)

III 제도 시행 1년, 앞으로의 개선과제 및 발전방향

1. 내년부터 개선되는 사항

■ 현재 신청인이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사업자'(개인)는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음

- 내년부터 신청인을 '비사업자'까지 확대하되, 예상 수요와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세목별로 단계적으로 추진

* '10년 1월(소득세), 7월(상속 · 증여세), '11년(양도소득세)

■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되어야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있어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은 현재 답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미국, 일본도 사실판단 사항은 답변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사실판단과 법령해석이 혼재된 질의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을 주도록 개선

■ 현재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업상 비밀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답변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미국도 공개 원칙)

- 기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들이 답변 공개 연기를 신청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하도록 개선

2. 납세자를 위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

■ 현재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 제도운용을 뒷받침할 필요

■ 답변의 명확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변호사 등 민간 전문인력과 세정실무와 법령해석 경험이 풍부한 실무인력을 보강할 필요

* IRS 법무관 소속 변호사는 약 1,000여명이며, Private Letter Ruling 전담 변호사만 100명임('05년 조세연구원 자료)

IV 제도 시행 1년, 앞으로의 개선과제 및 발전방향

■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복잡한 세무문제에 대해 콕 집어서 명확한 답변을 주는 제도임

- 이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계획서 등에 의해 그 입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는

것과 유사한 제도

- 경제위기로 기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잡한 세무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가 있다면 지금 바로 사전답변을 신청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함

■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 링크' →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와 신청서식 등을 다운받을 수 있음

재정통계

- 상속세 결정현황(2005~)
- 상속재산가액, 과세표준 규모별 상속세 결정현황(2005~)
- 상속재산가액의 계급별 피상속인 수, 재산가액 및 상속세 결정현황(1995~2004)
- 상속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 상속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 상속세 소송사건

1. 상속세 결정현황(2005~)

(단위: 백만원)

구 분	피상속인 수	총상속재산가액			비과세재산가액			
		소계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2]	소계	금양임야[3]	문화재가액[4]	기타
	(1)	(2=3+4)	(3)	(4)	(5=6+7+8)	(6)	(7)	(8)
2005년[1]	1,816	3,799,637	3,638,902	160,735	46,027	-	-	-
2006년[1]	2,221	4,159,079	4,021,351	137,728	45,429	-	-	-
2007년[1]	2,603	5,794,589	5,639,492	155,097	27,667	9,355	151	18,161

구 분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제금액			
	소계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기타	소계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9=10+11+12)	(10)	(11)	(12)	(13=14+15+16)	(14)	(15)	(16)
2005년[1]	-	-	-	-	463,739	421,749	-	-
2006년[1]	-	-	-	-	446,704	409,545	-	-
2007년[1]	95,637	95,507	130	-	616,140	546,232	52,537	17,531

구 분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과세표준
	소계	증여재산	창업자금[5]		소계	기초공제	배우자공제[6]	기타인적공제	기타공제[7]	
	(17=18+19)	(18)	(19)	(20=2-5-9-13+17)	(21=22+~+25)	(22)	(23)	(24)	(25)	(26=20-21)
2005년[1]	845,274	-	-	4,135,145	1,489,310	47,426	763,963	25,562	652,359	2,645,835
2006년[1]	577,262	-	-	4,244,208	1,733,798	62,823	920,127	24,730	726,118	2,510,410
2007년[1]	748,272	748,272	-	5,803,417	2,186,698	61,741	1,140,435	24,401	960,121	3,616,719

구 분	산출세액	문화재 등 징수유예 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총결정세액
			소계	증여세액[8]	창업자금 증여	신고세액	단기상속[9]	외국납부 세액[10]		
	(27)	(28)	(29=30+~+34)	(30)	(31)	(32)	(33)	(34)	(35)	(36=27-28-29+35)
2005년[1]	1,032,624	-	337,886	230,792	-	62,622	-	-	30,967	725,607
2006년[1]	931,919	-	210,277	128,971	-	62,997	-	-	36,925	757,582
2007년[1]	1,390,659	-	276,810	154,683	-	101,020	21,101	6	52,706	1,166,555

주: 1) 각 연도 상속세 과세실적(과세미달 등 제외)을 기준으로 작성
2)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용도미입증액
3)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임야 및 묘토인 농지
4) 국가·시·도 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5) 창업을 위해 금전 등을 증여받을때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
6) 배우자공제(23)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7) 기타공제(25)에는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포함됨
8) 증여세액공제(30)는 사전증여재산가액(18) 결정시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공제
9) 이미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에 대하여 재상속이 될 경우 그 재상속이 개시되는 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
10) 외국법령에 의하여 상속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이중과세 방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상속재산가액, 과세표준 규모별 상속세 결정현황(2005~)

구 분		피상속인 수[1]	총상속재산가액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제금액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1)	(2)	(3)	(4)	(5)	(6)
2005년	상속재산가액 규모별[2]						
	합계	1,816	4,644,911	-		-	-
	1억원 미만	241	12,504	-		-	-
	1억원 이상	120	21,761	-		-	-
	3억원 이상	45	18,399	-		-	-
	5억원 이상	293	224,253	-		-	-
	10억원 이상	597	885,279	-		-	-
	20억원 이상	220	552,685	-		-	-
	30억원 이상	150	605,671	-		-	-
	50억원 이상	94	670,492	-		-	-
	100억원 이상	50	882,768	-		-	-
	500억원 이상	6	771,099	-		-	-
2006년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합계	2,354	5,451,543	63,263		632,531	457,888
	1억원 미만	32	1,697	-		94	90
	1억원 이상	35	6,351	-		497	826
	3억원 이상	64	23,700	-		1,687	3,187
	5억원 이상	479	341,239	1,724		34,088	17,035
	10억원 이상	990	1,350,489	4,780		136,644	66,937
	20억원 이상	355	817,707	5,887		103,190	46,002
	30억원 이상	204	730,103	4,586		98,256	63,609
	50억원 이상	118	714,240	5,262		96,031	99,073
	100억원 이상	73	1,149,467	40,764		156,822	155,439
	500억원 이상	4	316,550	260		5,222	5,690
	과세표준규모별						
	1억원 미만	413	359,195	4,190		63,239	5,675
	1억원 이상	526	571,157	2,695		99,633	19,867
	3억원 이상	333	422,327	1,268		55,188	19,986
	5억원 이상	446	784,299	2,667		105,519	37,334
	10억원 이상	332	817,192	3,359		85,927	57,685
	20억원 이상	122	474,481	6,386		58,416	46,089
	30억원 이상	87	494,640	3,106		67,424	73,775
	50억원 이상	46	371,006	15,603		30,893	78,193
	100억원 이상	45	840,696	23,729		61,070	113,594
	500억원 이상	4	316,550	260		5,222	5,690

(단위: 백만원)

상속세과세가액	상속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등	가산세	총결정세액
(7=2-3-4-5+6)	(8)	(9=7-8)	(10)	(11)	(12)	(13=10-11+12)
-	1,999,076	2,645,835	1,032,624	337,984	30,967	725,607
-	7,269	5,235	523	499	0	0
-	13,412	8,349	1,012	852	10	194
-	11,078	7,321	1,152	694	24	482
-	161,278	62,975	10,266	3,131	381	7,516
-	621,084	264,195	54,603	11,747	2,286	45,142
-	307,365	245,320	66,297	11,041	2,948	58,204
-	291,400	314,271	103,361	16,603	4,629	91,387
-	266,859	403,633	160,493	27,900	7,074	139,667
-	253,783	628,985	291,675	54,274	12,665	250,066
-	65,548	705,551	343,242	211,243	950	132,949
5,213,637	2,173,733	3,039,904	1,076,413	209,877	-	866,508
1,693	1,555	138	21	1	-	20
6,680	5,904	776	149	15	-	134
25,200	12,242	12,958	339	87	-	252
322,462	223,604	98,858	9,672	1,797	-	7,875
1,276,002	849,166	426,836	71,638	14,462	-	57,148
754,632	371,040	383,592	98,141	17,796	-	80,345
690,870	279,836	411,034	127,758	24,473	-	103,285
712,020	222,581	489,439	190,053	43,395	-	146,658
1,107,320	193,005	914,315	429,376	90,843	-	338,533
316,758	14,800	301,958	149,266	17,008	-	132,258
297,441	278,414	19,027	2,040	599	-	1,441
488,696	390,255	98,441	12,707	1,883	-	10,796
385,857	253,647	132,210	18,781	2,803	-	15,978
713,447	394,315	319,132	61,415	10,626	-	50,789
785,591	322,152	463,439	118,510	20,827	-	97,683
455,768	160,063	295,705	92,521	18,820	-	73,701
497,885	155,025	342,860	129,934	28,896	-	101,038
402,703	85,622	317,081	137,353	35,244	-	102,109
869,491	119,440	750,051	353,886	73,171	-	280,715
316,758	14,800	301,958	149,266	17,008	-	132,258

2. 상속재산가액, 과세표준 규모별 상속세 결정현황(2005~) 〈계속〉

구 분		피상속인 수[1]	총상속재산가액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제금액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1)	(2)	(3)	(4)	(5)	(6)
2007년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합계	2,603	5,794,589	27,667	95,637	616,140	748,272
	1억원 미만	259	2,429	-	451	1,230	11,821
	1억원 이상	169	13,828	-	-	937	14,628
	3억원 이상	78	16,496	-	-	1,154	14,624
	5억원 이상	436	284,711	644	306	23,539	37,757
	10억원 이상	903	1,203,744	3,575	1,078	109,291	113,347
	20억원 이상	330	747,757	3,126	1,562	93,664	70,223
	30억원 이상	208	709,791	1,201	5,510	83,428	112,650
	50억원 이상	134	820,232	1,097	4,963	113,380	139,783
	100억원 이상	82	1,417,020	18,024	29,673	172,433	218,031
	500억원 이상	4	578,581	-	52,094	17,084	15,408
	과세표준규모별						
	1억원 미만	746	346,226	735	1,100	49,672	36,179
	1억원 이상	492	456,259	1,162	1,101	51,775	47,018
	3억원 이상	304	398,588	962	1,903	56,321	42,357
	5억원 이상	429	729,205	2,647	1,428	86,501	79,760
	10억원 이상	313	794,325	2,503	7,742	86,175	98,320
	20억원 이상	115	470,849	948	70	84,354	80,064
	30억원 이상	84	418,977	616	210	46,436	104,695
	50억원 이상	63	553,078	496	3,580	50,815	91,278
	100억원 이상	53	1,080,866	17,598	26,409	88,045	160,417
	500억원 이상	4	546,216	-	52,094	16,046	8,184

(단위: 백만원)

상속세과세가액	상속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등	가산세	총결정세액
(7=2-3-4-5+6)	(8)	(9=7-8)	(10)	(11)	(12)	(13=10-11+12)
5,803,417	2,186,698	3,616,719	1,390,659	276,810	52,706	1,166,555
12,569	5,004	7,565	950	902	41	89
27,519	13,495	14,024	1,758	1,581	25	202
29,966	16,988	12,978	1,995	1,543	53	505
297,979	214,587	83,392	13,555	4,611	1,194	10,138
1,203,147	804,182	398,965	82,328	18,371	5,330	69,287
719,628	359,540	360,088	96,534	17,784	4,258	83,008
732,302	286,088	446,214	145,140	31,623	7,730	121,247
840,575	252,609	587,966	234,888	47,809	12,527	199,606
1,414,921	221,117	1,193,804	559,492	120,013	16,749	456,228
524,811	13,088	511,723	254,019	32,573	4,799	226,245
330,898	299,065	31,833	3,190	1,684	430	1,936
449,239	342,091	107,148	18,089	4,706	1,940	15,323
381,759	245,855	135,904	25,937	4,997	2,490	23,430
718,389	387,909	330,480	76,558	15,054	5,561	67,065
796,225	337,382	458,843	133,837	24,247	6,721	116,311
465,541	159,100	306,441	105,538	23,024	5,266	87,780
476,410	128,574	347,836	133,513	34,490	6,626	105,649
589,465	125,783	463,682	202,990	39,777	10,202	173,415
1,109,231	146,130	963,101	457,253	102,704	12,946	367,495
486,260	14,809	471,451	233,754	26,127	524	208,151

주: 1) 2007년 상속세 과세실적(과세미달 등 제외)을 기준으로 작성
2) 상속재산가액 규모별은 총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상속재산가액의 계급별 피상속인 수, 재산가액 및 상속세 결정현황(1995~2004)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계급	합계		과세			과세미달	
		인원	재산가액	인원	재산가액	총결정세액	인원	재산가액
1995	합계	307,516	25,582,588	3,464	3,300,717	880,967	304,052	22,281,871
	1억원 이하	237,243	11,055,137	377	11,343	779	236,866	11,043,794
	1억원 초과	62,919	9,414,761	1,146	218,268	23,684	61,773	9,196,493
	3억원 초과	5,760	2,116,901	555	199,713	22,101	5,205	1,917,188
	5억원 초과	853	570,452	647	448,122	40,490	206	122,330
	10억원 초과	289	346,023	287	343,957	48,212	2	2,066
	15억원 초과	132	232,523	132	232,523	41,141	-	-
	20억원 초과	123	298,521	123	298,521	73,742	-	-
	30억원 초과	92	340,089	92	340,089	103,310	-	-
	50억원 초과	62	407,462	62	407,462	174,907	-	-
	100억원 초과	43	800,719	43	800,719	352,601	-	-
1996	합계	234,945	22,605,980	2,850	3,086,530	720,296	232,095	19,519,450
	1억원 이하	174,231	8,442,678	273	19,757	1,227	173,958	8,422,921
	1억원 초과	50,741	7,871,961	692	114,295	6,972	50,049	7,757,666
	3억원 초과	7,069	2,600,114	495	184,755	17,867	6,574	2,415,359
	5억원 초과	2,053	1,284,909	540	362,805	38,120	1,513	922,104
	10억원 초과	335	409,919	334	408,519	56,224	-	1,400
	15억원 초과	161	283,588	161	283,588	52,516	-	-
	20억원 초과	153	376,305	153	376,305	91,016	-	-
	30억원 초과	113	444,792	113	444,792	130,504	-	-
	50억원 초과	62	425,487	62	425,487	154,959	-	-
	100억원 초과	27	466,227	27	466,227	170,891	-	-
1997	합계	270,144	25,144,520	2,805	3,651,648	779,527	267,339	21,492,872
	1억원 이하	209,656	10,252,214	87	2,331	291	209,569	10,249,883
	1억원 초과	51,628	8,793,178	403	83,461	4,587	51,870	8,709,717
	3억원 초과	6,381	2,328,875	511	207,394	20,770	5,870	2,121,481
	5억원 초과	1,623	1,048,758	956	645,081	71,424	667	403,677
	10억원 초과	554	822,675	546	814,561	122,767	8	8,114
	15억원 초과	130	330,828	130	330,828	68,959	-	-
	20억원 초과	93	362,855	93	362,855	93,487	-	-
	30억원 초과	53	366,043	53	366,043	117,118	-	-
	50억원 초과	24	426,384	24	426,384	145,337	-	-
	100억원 초과	2	412,710	2	412,710	134,787	-	-
1998	합계	267,701	21,502,309	3,455	4,555,897	727,852	264,246	16,946,412
	1억원 이하	215,364	6,028,004	157	12,918	525	215,207	6,015,086
	1억원 초과	40,875	7,036,139	390	78,866	5,504	40,485	6,957,273
	3억원 초과	7,509	3,101,604	500	180,974	14,107	7,009	2,920,630
	5억원 초과	2,480	1,716,723	989	732,910	53,834	1,491	983,813
	10억원 초과	1,035	1,346,822	985	1,289,125	130,768	50	57,697
	20억원 초과	213	493,963	211	489,150	84,241	2	4,813
	30억원 초과	112	411,352	110	404,252	88,327	2	7,100
	50억원 초과	77	529,892	77	529,892	135,967	-	-
	100억원 초과	33	645,423	33	645,423	179,594	-	-
	500억원 초과	3	192,387	3	195,387	34,985	-	-

3. 상속재산가액의 계급별 피상속인 수, 재산가액 및 상속세 결정현황(1995~2004) 〈계속〉

(단위: 명, 백만원)

연 도	계 급	합 계		과 세			과세미달	
		인 원	재산가액	인 원	재산가액	총결정세액	인 원	재산가액
1999	합계	163,162	11,504,632	2,020	3,826,440	711,384	161,142	7,678,192
	1억원 이하	140,087	2,694,440	84	39,015	69	140,003	1,655,425
	1억원 초과	16,772	2,834,636	239	76,055	3,008	16,533	2,758,581
	3억원 초과	3,378	1,304,031	222	94,446	7,993	3,156	1,209,585
	5억원 초과	1,875	1,327,167	526	415,740	29,605	1,349	911,427
	10억원 초과	668	984,647	577	872,951	86,726	91	111,696
	20억원 초과	197	551,286	189	491,473	76,834	8	19,813
	30억원 초과	98	390,714	97	387,574	83,878	1	3,140
	50억원 초과	49	346,800	48	338,275	78,935	1	8,525
	100억원 초과	32	540,834	32	540,834	149,845	-	-
	500억원 초과	6	570,077	6	570,077	194,491	-	-
2000	합계	211,619	13,578,639	1,389	3,413,441	513,720	210,230	10,165,198
	1억원 이하	181,514	2,592,927	118	60,903	179	181,396	2,532,024
	1억원 초과	20,911	3,572,249	97	57,053	651	20,814	3,515,196
	3억원 초과	5,070	1,967,235	55	38,196	1,172	5,015	1,929,039
	5억원 초과	3,035	2,123,914	254	214,855	10,102	2,781	1,909,059
	10억원 초과	699	970,993	484	713,184	46,082	215	257,809
	20억원 초과	163	406,338	156	390,554	48,153	7	15,784
	30억원 초과	107	409,310	105	403,023	65,465	2	6,287
	50억원 초과	78	542,712	78	542,712	107,275	-	-
	100억원 초과	39	709,115	39	709,115	192,019	-	-
	500억원 초과	3	283,846	3	283,846	45,667	-	-
2001	합계	219,264	11,496,878	1,982	3,081,159	401,147	217,282	8,415,719
	1억원 이하	193,473	2,496,288	388	36,847	320	193,085	2,459,441
	1억원 초과	19,010	3,115,663	198	46,712	1,303	18,812	3,068,951
	3억원 초과	3,386	1,305,089	106	50,308	1,871	3,280	1,254,781
	5억원 초과	2,197	1,559,512	325	271,596	10,736	1,872	1,287,916
	10억원 초과	814	1,170,570	598	910,589	47,149	216	259,981
	20억원 초과	171	432,324	159	402,897	42,522	12	29,427
	30억원 초과	115	444,059	112	434,025	62,323	3	10,034
	50억원 초과	70	492,469	69	484,766	107,353	1	7,703
	100억원 초과	28	479,570	27	442,085	127,309	1	37,485
	500억원 초과	0	1,334	0	1,334	261	0	0
2002	합계	241,193	12,772,043	1,661	2,993,597	473,674	239,532	9,778,446
	1억원 이하	210,060	2,524,062	347	32,617	227	209,713	2,491,445
	1억원 초과	23,156	3,886,847	213	54,780	1,122	22,943	3,832,067
	3억원 초과	4,676	1,802,863	85	36,218	1,140	4,591	1,766,645
	5억원 초과	2,363	1,625,319	254	191,458	6,848	2,109	1,433,861
	10억원 초과	583	826,851	423	634,932	31,123	160	191,919
	20억원 초과	162	406,627	154	387,522	43,134	8	19,105
	30억원 초과	92	365,537	85	341,382	52,102	7	24,155
	50억원 초과	65	454,891	65	454,891	98,549	0	-
	100억원 초과	35	683,491	34	664,242	205,340	1	19,249
	500억초과	1	195,555	1	195,555	34,089	0	-

3. 상속재산가액의 계급별 피상속인 수, 재산가액 및 상속세 결정현황(1995~2004)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계급	합계		과세			과세미달	
		인원	재산가액	인원	재산가액	총결정세액	인원	재산가액
2003	합계	227,209	11,995,521	1,720	3,127,966	462,331	225,489	8,867,555
	1억원 이하	199,347	2,364,252	272	13,529	198	199,075	2,350,723
	1억원 초과	20,479	3,371,613	160	29,455	866	20,319	3,342,158
	3억원 초과	3,960	1,521,412	67	28,184	1,025	3,893	1,493,228
	5억원 초과	2,241	1,554,298	293	227,646	7,785	1,948	1,326,652
	10억원 초과	765	1,072,710	532	790,232	39,814	233	282,478
	20억원 초과	191	480,851	176	444,648	47,067	15	36,203
	30억원 초과	127	483,366	125	476,245	74,637	2	7,121
	50억원 초과	68	527,882	64	498,890	115,167	4	28,992
	100억원 초과	29	501,299	29	501,299	138,033	-	-
	500억원 초과	2	117,838	2	117,838	37,739	-	-
2004	합계	258,021	15,668,786	1,808	4,791,927	953,973	256,213	10,876,859
	1억원 이하	223,981	2,925,745	231	12,591	54	223,750	2,913,154
	1억원 초과	25,258	4,209,142	125	22,902	440	25,133	4,186,240
	3억원 초과	4,742	1,827,002	63	25,428	631	4,679	1,801,574
	5억원 초과	2,666	1,847,670	266	205,959	7,869	2,400	1,641,711
	10억원 초과	892	1,246,570	661	961,593	47,481	231	284,977
	20억원 초과	235	581,981	217	539,701	60,124	18	42,280
	30억원 초과	127	487,517	125	480,594	70,109	2	6,923
	50억원 초과	78	570,440	78	570,440	122,191	0	0
	100억원 초과	33	629,613	33	629,613	182,306	0	0
	500억원 초과	9	1,343,106	9	1,343,106	462,768	0	0

주: 2005년 이후는 상속세 과세실적(과세미달 등 제외)을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통계 종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상속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처리세액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1965	38	-	38	35	1	14	20	-	1	3
1966	12	3	9	12	-	6	6	-	0	-
1967	17	-	17	17	3	6	8	-	1	-
1968	16	-	16	15	2	8	5	-	2	1
1969	20	1	19	17	1	10	6	-	24	3
1970	27	2	25	34	13	11	10	-	26	4
1971	30	4	26	25	1	16	8	-	1	5
1972	48	5	43	46	5	31	10	-	2	2
1973	29	2	27	28	5	20	3	-	3	1
1974	13	1	12	13	1	7	5	-	4	-
1975	10	-	10	9	1	6	2	-	9	1
1976	13	1	12	12	-	9	3	-	23	1
1977	12	1	11	12	1	7	4	-	2	-
1978	6	-	6	6	3	1	2	-	3	-
1979	8	-	8	7	1	6	-	-	-	1
1980	7	1	6	7	-	4	3	-	35	-
1981	44	-	44	43	10	15	18	-	324	1
1982	50	1	49	43	13	16	14	-	180	7
1983	34	7	27	33	7	22	4	-	23	1
1984	47	1	46	43	13	27	3	-	194	4
1985	63	4	59	58	19	29	10	-	55	5
1986	96	5	91	92	23	61	8	-	193	4
1987	45	4	41	41	10	27	4	-	111	4
1988	37	4	33	36	12	21	3	-	112	1
1989	44	1	43	41	13	20	8	-	198	3
1990	30	3	27	27	5	16	6	-	252	3
1991	35	3	32	31	9	17	5	-	160	4
1992	108	4	104	101	22	65	14	-	479	7
1993	121	7	114	117	37	67	13	-	1,113	4
1994	112	4	108	104	8	67	29	-	1,864	8
1995	149	8	141	140	28	66	46	-	2,887	9
1996	166	9	157	156	15	73	68	-	4,349	10
1997	121	10	111	110	7	39	64	-	5,590	11
1998	196	11	185	180	6	65	109	-	10,217	16
1999	273	16	257	237	13	107	117	-	6,434	36
2000	131	36	95	103	9	40	54	-	11,270	28
2001	158	28	130	136	5	75	56	-	3,376	22
2002	108	22	86	91	4	45	42	-	2,027	17
2003	93	17	76	83	7	30	46	26,400	6,100	10
2004	94	10	84	82	6	41	35	83,300	32,500	12
2005	99	12	87	94	4	51	39	38,217	2,349	5
2006	63	5	58	62	6	33	23	30,000	1,026	1
2007	58	1	57	53	4	25	24	9,327	2,570	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5. 상속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처리세액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1965	4	-	4	4	-	4	-	-	-	-
1966	-	-	-	-	-	-	-	-	-	-
1967	-	-	-	-	-	-	-	-	-	-
1968	4	-	4	3	1	-	2	-	7	-
1969	8	1	7	6	-	3	3	-	11	2
1970	10	2	8	10	-	6	4	-	12	-
1971	8	-	8	8	-	4	4	-	7	-
1972	17	-	17	16	-	11	5	-	52	1
1973	13	1	12	11	1	7	3	-	38	2
1974	14	2	12	11	1	7	3	-	2	3
1975	14	3	11	-	2	9	1	-	1	2
1976	16	2	14	14	-	11	3	-	8	2
1977	15	2	13	12	-	9	3	-	3	3
1978	23	3	20	21	4	9	8	-	100	2
1979	11	2	9	11	1	6	4	-	50	-
1980	7	-	7	5	1	2	2	-	11	2
1981	59	2	57	40	7	18	15	-	115	19
1982	75	19	56	71	6	42	23	-	276	4
1983	55	4	51	47	5	32	10	-	124	8
1984	65	8	57	54	11	37	6	-	159	11
1985	82	11	71	75	14	53	8	-	667	7
1986	122	7	115	107	7	93	7	-	81	15
1987	122	15	107	108	7	87	14	-	260	14
1988	108	14	94	96	5	78	13	-	819	12
1989	109	12	97	98	12	68	18	-	769	11
1990	114	11	103	104	10	71	23	-	1,956	10
1991	111	10	101	89	1	71	17	-	937	22
1992	357	22	335	328	27	247	54	-	2,342	29
1993	281	29	252	252	38	176	38	-	2,632	29
1994	370	29	341	330	17	254	59	-	4,963	40
1995	366	40	326	303	18	231	54	-	3,216	63
1996	398	63	335	378	17	290	71	-	11,441	20
1997	270	20	250	221	14	137	70	-	4,999	49
1998	406	49	357	330	5	196	129	-	14,367	76
1999	536	76	460	478	17	274	187	-	20,282	58
2000	128	58	70	116	6	49	61	-	18,752	12
2001	67	12	55	62	3	25	34	-	14,674	5
2002	39	5	34	31	0	13	18	-	21,909	8
2003	40	8	32	31	2	12	17	9,600	2,300	9
2004	42	9	33	31	0	12	19	12,200	2,500	11
2005	60	11	49	56	1	30	25	17,718	2,146	4
2006	28	4	24	20	5	7	8	6,506	1,092	8
2007	18	8	10	15	1	9	5	5,273	313	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6. 상속세 소송사건

(단위: 건)

연 도	처리대상건수			당년도종결건수							계류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제기	계	취하	각하	국승	국가일부패소	국패	기타	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1973	12	7	5	2	-	-	1	-	-	1	10	-	-	-
1974	13	10	3	5	-	-	3	-	1	1	8	-	-	-
1975	8	8	-	4	-	-	2	-		2	4	-	-	-
1976	7	4	3	2	-	-	2	-	-	-	5	-	-	-
1977	11	5	6	3	-	-	1	-	1	1	8	-	-	-
1978	14	8	6	5	-	-	1	-	3	1	9	-	-	-
1979	10	9	1	2	-	-	2	-	-	-	8	-	-	-
1980	11	8	3	4	-	-	3	-	1	-	7	-	-	-
1981	11	7	4	2	-	-	1	-	1	-	9	-	-	-
1982	33	9	24	9	-	-	4	-	4	1	24	-	-	-
1983	40	24	16	13	-	-	5	-	4	4	27	-	-	-
1984	49	27	22	19	-	-	6	-	8	5	30	-	-	-
1985	74	30	44	20	-	-	7	-	10	3	54	-	-	-
1986	90	54	36	32	-	-	10	-	10	12	58	-	-	-
1987	122	58	64	55	-	-	16	-	13	26	67	-	48	19
1988	125	67	58	44	-	-	8	-	13	23	81	-	53	28
1989	134	81	53	55	-	-	37	-	18	-	79	-	58	21
1990	119	79	40	43	-	-	31	-	12	-	76	-	60	16
1991	117	76	41	30	-	-	22	-	8	-	87	-	68	19
1992	154	76	78	42	-	-	30	-	12	-	112	-	86	26
1993	218	117	101	97	-	-	68	-	29	-	121	-	87	34
1994	229	121	108	79	-	-	50	-	29	-	150	-	123	27
1995	276	150	126	88	-	-	62	-	26	-	188	-	167	21
1996	318	188	130	111	-	-	77	-	34	-	207	-	173	34
1997	332	207	125	134	-	-	108	-	26	-	198	-	163	35
1998	278	198	80	129	-	-	101	-	28	-	149	41	74	34
1999	255	150	105	104	-	-	85	-	19	-	151	91	37	23
2000	309	151	158	87	-	-	82	-	5	-	222	155	42	25
2001	332	222	110	92	31	2	46	7	6	-	240	153	64	23
2002	314	240	74	132	37	1	75	15	4	-	182	95	62	25
2003	227	182	45	85	23	-	50	8	4	-	142	74	35	33
2004	175	142	33	64	20	1	28	13	2	-	111	45	47	19
2005	146	111	35	55	22	1	23	7	2	-	91	39	29	23
2006	141	91	50	47	12	0	23	7	5	-	94	48	33	13
2007	121	94	27	69	19	2	34	4	10	-	52	26	14	12

주: 2002년 『국세통계연보』부터 취하, 각하, 국가일부패소 란 추가, 기타 란 삭제.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성장률 · 조세수입 전망 '들쭉날쭉'

◇ 성장률 11년간 7차례 낙관.. 국세증가율 10%포인트 이상 오차도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1년간 정부의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실적치에 근접한 경우는 2번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모두 2% 포인트 이상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가 가장 적었던 해는 2000년으로, 전망치 8.0%, 실적치 7.8%로 –0.2%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또 2007년에는 전망치 6.7%, 실적치 7.3%로 0.6%포인트로 각각 1%포인트 이내 오차를 보였다.

하지만 이 두 해를 제외하면 모두 2%포인트 이상의 오차가 생겼다.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권에 있던 1999년은 4.7% 포인트의 격차가 났고, 2000년에는 전망치 8.0%, 실적치 14.0%로 무려 6%포인트의 오차가 발생했다.

특히 경상성장률은 실적치가 전망치보다 낮은 경우가 7차례나 돼 정부가 낙관론에 근거한 전망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조세수입 전망치도 편차가 심한 것은 마찬가지다. 국세증가율을 보면 실적치와 전망치 간 차이가 2000년 11.6% 포인트, 2001년 –13.4%포인트 등 10%포인트 넘게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작년만 해도 국세가 1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3.6%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세수액으로 환산한 실적치와 전망치 간 오차 비율 역시 2002년 0.3%, 2003년 –0.2%, 2004년 –3.5%, 2005년 0.3%, 2006년 2.0%, 2007년 9.6%, 2008년 1.1% 등으로 등락폭이 비교적 큰 해도 적지 않았다.

다만 국세증가율 오차는 전망치보다 실제로 더 많이 걷힌 경우가 7차례로 더 많아 경상성장률에 비해 보수적인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적중률 가장 높다" vs. "낙관론 경계해야"

정부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가 많아져 전망치를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유가나 환율, 세계교역량과 같은 외생변수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 변수는 정부가 정책수단을 통해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 1980년대 초반까지와는 달리 시장경제의 자율성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시장에서 정부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도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인력수급 정원을 짜고 투자 분야까지 지정하는 등 사실상 계획경제에 가까웠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전망치를 꿰맞출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전망치가 목표치였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전망일 뿐"이라며 "그래도 각종 기관에서 쏟아지는 전망 중에서는 정부의 적중률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국세 수입 역시 들쭉날쭉하는 경기상황과 세제 개편,

과표양성화 등 정책적 요인의 효과를 모두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시장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차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은 단순히 정부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으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이나 재정운용계획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낙관적 전망이 재정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다.

2000년대 미국 부시 행정부가 감세정책을 시행할 때 성장률과 국세수입을 낙관적으로 예측함으로써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를 초래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박사는 최근 공청회 자료에서 "재정수지는 2004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지속적 개선을 계획했으나 2007년 한 해를 제외하면 추세적 개선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가채무 비율 역시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기본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거나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한 예비비 확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동기에 의한 낙관적 전망을 예방하도록 독립적 기구에 전망을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2009년 11월 2일자〉

[사설] 소득 재분배기능 강화대책 세워야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소득분배 동향 고찰'이라는 연구논문을 보면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전체 가처분소득 중 하위 10% 계층의 소득비중은 계속 떨어지는 반면, 상위 10% 계층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빈곤가구의 비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고,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서민들은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 불안과 영세 자영업의 몰락으로 소득이 줄고 있지만, 부유층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 혜택과 주식 부동산 등 자산소득에 힘입어 손쉽게 부를 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근로빈곤층(워킹푸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현재 근로빈곤층 규모는 300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소득이 낮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좌절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한번 벌어진 소득 양극화를 좁히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소득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봤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빈부격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남미형 불평등 사회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요즘 강조하는 사회 통합과 친서민 · 중도실용 분위기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세금과 복지 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선진국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부동산 등의 자산거품을 차단하고 부자 감세 철회,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 세제 개혁이 필수적이다. 다행히 여당 내에서도 소득세 · 법인세 추가 감면을 유예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경제성장률이나 조세수입 증가율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정부 예측이 들쭉날쭉하고 있다.

경제성장률과 국세증가율 전망은 예산 편성이나 중기

재정계획 수립시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 2009년 10월 24일자〉

무학력자, 여성 빈곤율 외환위기후 최고

국각 계층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무학력자와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재정포럼 10월호에 발표한 '소득분배 동향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추이 등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빈곤가구의 비율을 뜻하는 상대빈곤율은 지난해 8.5%로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대빈곤율은 1982년 5.2%에서 1990년 3.8%까지 떨어졌다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4.8%로 높아진 뒤 2001년에는 5.3%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높아져 2004년에는 8%대를 넘어섰고 작년에는 8.5%로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시기인 1997~1998년과 2006년(8.6%)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로 빈곤가구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연령대별로는 가구주가 20대 초반과 60대 이상인 가구의 빈곤율이 지난해 각각 20.6%, 20.3%로 평균치보다 배 이상 높았다.

학력별로 가구주가 무학력자인 가구의 빈곤율은 47.6%로 가구의 절반 정도가 빈곤층에 속했고, 초졸자 가구의 빈곤율 역시 23.7%로 평균치를 훨씬 상회했다. 이어 중졸자 가구의 빈곤율은 11.0%, 고졸자 가구는 7.5%, 전문대졸 가구 5.8%, 대졸자 가구 2.9%, 대학원졸 가구 1.4% 등 학력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낮아졌다.

성별로는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의 빈곤율이 17.0%로 남성 가구(6.6%)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해 여성 가구 빈곤율은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고치다.

계층별 소득격차도 확대됐다.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이 1982~2008년 사이 가구당 1,039만원에서 3,782만원으로 평균 3.6배로 늘어난 가운데 소득 하위 10%인 1분위가구의 소득은 같은 기간 3.0배(408만원 → 1,229만원)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중위층인 6분위는 3.8배(951만원 → 3,641만원), 고소득층인 10분위는 3.5배(2,286만원 → 8,101만원)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됐다는 뜻이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이처럼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된 것은 사회 · 경제적인 요인과 함께 급속한 고령화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저소득층의 인구구성에서 노인층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2009년 10월 23일자〉

최근 5년간『재정포럼』총목차

• 2005 •

2005년 1월호(통권 제103호)

〈권두칼럼〉
경제발전과 대학교육/ 권선주
〈현안분석〉
- 기혼여성 노동공급과 자녀보육 및 교육비용 / 김현숙
- 규모별 임금격차와 자발적 실업의 증가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김형준
- 우리나라 소득세의 계층별 부담구조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소고/ 성명재
-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 전병목

〈기획〉
최근 독일의 세제개편/ 김유찬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미국, 부시 "연금개혁 위한 세금인상 없다" 외
〈정책흐름〉
종합투자계획 추진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안 확정
04년 3/4분기말 현재 총대외채무 · 대외채권 현황 (잠정)
재정운용의 성과와 향후과제
현금영수증제도 본격 시행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Ⅱ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외

2005년 2월호(통권 제104호)

〈권두칼럼〉
작은 정부와 일 잘하는 정부/ 옥동석
〈현안분석〉
-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사항과 향후 정책과제/ 노영훈
-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박형수
-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 김진수

〈기획〉
2005년도 일본의 세제개정/ 원종학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일본, '법인세 면제 회사 허용' 추진 외
〈정책흐름〉
2004년 국세수입 실적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재산 · 소비 · 국제조세관련 시행령 · 규칙 개정
2005년도 재정집행계획 확정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Ⅲ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고령친화산업' 육성 빈 틈 없이 추진해야 외

2005년 3월호(통권 제105호)

〈권두칼럼〉
국세심판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 서희열
〈현안분석〉
- 정부부문 자본스톡과 생산성/ 류덕현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의 이해와 분석/ 박상원
- 부담금제도 현황과 향후 연구과제/ 정재호

〈기획〉
2004 미국의 세제개편과 향후 동향/ 장근호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미국, 자산부풀리기로 매년 290억달러 세수손실 외
〈정책흐름〉
신용카드결제액 분석을 통한 소비동향 파악
소득분배 현황 관련 참고자료
제252회 임시국회 재경위 업무현황보고 자료
2005년도 재정집행계획 확정
〈재정통계〉
특별소비세 Ⅰ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주택 양도세 실질석 면제 유지해야 외

2005년 4월호(통권 제106호)

〈권두칼럼〉
경제발전과 납세자 권리구제/ 김용민
〈현안분석〉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 안종석
- 경제학적으로 바라본 도시개발비용부담의 의미 / 김현아
- 교토의정서 체제의 환경세 관련 정책/ 권오성

〈기획〉
2006년도 미국의 예산안/ 박형수
〈정책연구〉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소득과세의 정책과제와 제도 정비/ 홍범교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Ⅱ)/ 박형수 · 최준욱 · 김 진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손원익 · 정재호 · 김형준 · 김상헌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박기백 · 김 진 · 전병목
여성인력 공급과 조세 · 재정정책: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김현숙 · 원종학
지방공공재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김현아 · 박상원 · 김형준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美, 세무행정 위기 외
〈정책흐름〉
한 · 칠레 FTA 발효 이후 교역동향
2004년 통합재정수지(잠정) 발표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으로 영세 자영업자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의 간소화 방안 검토
제26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서면심의 결과
〈재정통계〉
주세 Ⅰ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4년새 2배로 늘어난 기업 준조세 외

2005년 5월호(통권 제107호)

〈권두칼럼〉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위한 친환경적 세제개편의 필요성/ 구정모
〈현안분석〉
- 법인세 평준화/ 박기백
- 소득세 부담과 자영업자 규모 변화/ 전병목

〈기획〉
일본의 2005년도 예산안/ 류덕현
〈정책연구〉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및 개편방안/ 안종석
지방선거 이후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변화 / 박노욱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율 변화연구 / 정재호 · 류덕현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 정비방안 / 권오성 · 하헌구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옥동석

최근 5년간『재정포럼』총목차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영국, 어린이 · 노인에 세제혜택 외
〈정책흐름〉
부동산세제 향후 정책방향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적용시한 재연장
Ten-Ten 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획본부 역할 수행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 정기고시
〈재정통계〉
상속세 Ⅰ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당연하다 외

2005년 6월호(통권 제108호)

〈권두칼럼〉
조세개혁 논의에 붙여/ 이전오
〈현안분석〉
- 공공부문 제공의 효율성에 대한 일고: 인프라-시비스 구조를 중심으로/ 김 진
- 근로빈곤층을 위한 선진국의 조세제도 – 호주 및 뉴질랜드 사례/ 김재진
- 투명성 제고를 통한 재정개혁 정착/ 김종면

〈기획〉
독일 · 프랑스 · 호주 · 뉴질랜드의 2005년도 예산안/ 류덕현
〈정책연구〉
법인세 부담 연구-미시자료를 중심으로 / 박기백 · 김 진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수
성과관리와 사업평가 연구/ 박기백 외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미국, 상속세 폐지될라 숨죽인 자선단체들 외
〈정책흐름〉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정
토지분 재산세 부담 증가 완화
특별회계 · 기금 정비방안
〈재정통계〉
상속세 Ⅱ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종합부동산세 기업만 덤터기 쓰나 외

2005년 7월호(통권 제109호)

〈권두칼럼〉
경기를 살리려면/ 홍순영
〈현안분석〉
- 정부지출과 복기지출 수준의 국제비교에 관한 일고 / 박노욱
- 기업연구개발활동 조세지원 방안/ 원종학
- 추경편성에 대한 쟁점 분석/ 박형수

〈정책토론리포트〉
「한국형 EITC」도입 타당성 검토
〈정책연구〉
세무조사 방식과 납세순응 행위/ 김형준 · 현진권
토지세 강화정책의 경제적 효과: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노영훈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앞서가는 홍콩 세제 외
〈정책흐름〉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05. 6월 세법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재정통계〉
증여세 Ⅰ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집값 대책, 보유세제부터 바로 잡아라 외

2005년 8월호(통권 제110호)

〈권두칼럼〉
철도와 재정/ 배준호
〈현안분석〉
- 중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한상국
- 경제성장률의 감소와 소비의 침체/ 김형준
-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 김현숙
-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한 과세방침과 향후 검토과제 / 노영훈

〈정책토론리포트〉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 방안
〈정책연구〉
사회보장정책의 장기 재정지출 소요 추정과 정책방향 / 김종면 성명재
부문별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 성명재 김종면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 재정정책(2): 고령화 대응 조세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최준욱 · 전병목 · 김우철
〈최신조세 · 재정 해외동향〉
미, 담배소비세 과도한 인상은 오히려 역효과 외
〈정책흐름〉
최근 심리지표 움직임의 주요 특징 및 원인 분석
미국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 분석
2005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재정통계〉
기타세 1편
〈이런의견 저런생각〉
종부세 강화 막을 일 아니다 외

2005년 9월호(통권 제111호)

〈권두칼럼〉
정부재정의 정책기능/ 전주성
〈현안분석〉
- 상속 증여세의 현황 및 경제적 효과: 세대간 자산이전 모형을 중심으로/ 김 진
-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스톡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류덕현

〈특집〉
- 2005년도 세제개편 내용/ 변상구
- 2005년 세제개편안을 바라보는 시각/ 노영훈
- 2005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소고/ 김재진
- 2005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나성린
- 2005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김유찬

〈정책토론리포트〉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세제도 및 이전가격세제
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주세율 체계의 개편 방안
〈정책흐름〉
2005년 세제개편(안)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2005년 10월호(통권 제112호)

〈권두칼럼〉
감세논쟁을 보면서/ 안종범

〈현안분석〉
• 정부조달과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 박상원
• 개인소득세제 개혁: OECD 회원국의 동향과 시사점/ 안종석
〈특별기획〉
내년도 예산,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 / 정홍상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 류덕현
2006년도 예산안의 평가/ 박정수
〈최신조세 · 재정 해외동향〉
미, 재정적자 큰 폭으로 늘어날 듯 외
〈정책흐름〉
2005년 추경예산(안) 및 2006년 예산(안)
2006년 국세세입 예산(안)
음성 탈루소득자 등 세무조사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자치단체 교부기준 마련 추진
〈재정통계〉
기타세 2편
〈이런의견 저런생각〉
수도권 중기 세금 차별 안 된다 외

2005년 11월호(통권 제113호)

〈권두칼럼〉
재정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변재진
〈현안분석〉
• 영유아 보육정책의 방향: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 김현숙
• 재정분권이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 김현아
〈특별기획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토머스 셸링의 생애와 학문세계/ 안종석
로버트 아우만 교수의 경제학에의 공헌/ 김 진
〈정책토론리포트〉
환경친화적 조세 및 예산개혁의 방향
〈최신조세 · 재정 해외동향〉
일 자민당, 소비세 사회보장용 목적세로 추진 외
〈정책흐름〉
금년도 8월까지의 세수실적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
유가보조금 지급실적 및 전망
세무조사 운용 현황
〈재정통계〉
지방세 1편
〈이런의견 저런생각〉
연금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외

2005년 12월호(통권 제114호)

〈권두칼럼〉
학문의 전문성과 시장성/ 유일호
〈현안분석〉
• 근로빈곤층을 위한 선진국의 조세제도-영국사례 / 김재진
• 우리나라 재정부문 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박노욱
• 미국과 일본의 고령화 정책과 시사점/ 원종학
〈정책토론리포트〉
재정부문 성과관리제도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영유아 보육 교육과 정부의 역할
〈최신조세 · 재정 해외동향〉
미, 모기지론 세공제 대폭 축소 외
〈정책흐름〉
2005년 조세지출보고서 국회 제출
근로소득세 예산관련 쟁점
06년 주요세목별 05년 세입전망과 06년 예산 비교
제3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 결과
〈재정통계〉
지방세 2편
〈이런의견 저런생각〉
갑근세 26% 인상, 해도 너무 한다 외

• 2006 •

2006년 1월호(통권 제115호)

〈권두칼럼〉
2006년도의 한국경제와 조세 · 재정정책/ 최용선
〈현안분석〉
• 다년도 예산제도 고찰/ 김종면
•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정재호
〈최신조세 · 재정 해외동향〉
중국, 개인소득세제 변경 외
〈정책흐름〉
05년 세법개정 등에 따른 시행령 규칙 개정(안)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
2005 지방재정분석결과
2006년 경제운용방향
〈재정통계〉
지방재정 1편
〈이런의견 저런생각〉
양극화, 정치선전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외

2006년 2월호(통권 제116호)

〈권두칼럼〉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불명확성 / 김완석
〈현안분석〉
• 경매를 통한 조달효율성 제고에 대한 소고/ 김 진
• 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과 발전방안/ 김현아
〈최신조세 · 재정 해외동향〉
일본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외
〈정책흐름〉
2005 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
2005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 관련 추가설명
2005년 국세수입 실적(05년도 총세입 세출부 마감 관련)
06. 3월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제도
개정 교토협약(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금년 정부 R&D 투자 전년 대비 14.2% 증가
〈재정통계〉
지방세 4편
〈이런의견 저런생각〉
자영업자 과세기반 확대 실효 거둘까 외

2006년 3월호(통권 제117호)

〈권두칼럼〉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이준구
〈현안분석〉
• 목적세입(Earmarked Revenue)/ 박기백

• 미국의 FTA 관세유예기간 분석/ 정재호
〈정책토론리포트〉
ATP(Aggressive Tax Planning) 사례와 대응방안
〈정책연구〉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완석
〈최신조세 · 재정 해외동향〉
미 · 일 · 중 · 인도 등 양극화 해소 어떻게 외
〈정책흐름〉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
2005년 수출입 동향(확정치)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
102개 부담금, 운용 적정성 전면 재검토
〈재정통계〉
지방세 5편
〈이런의견 저런생각〉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외

2006년 4월호(통권 제118호)

〈권두칼럼〉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이에 대한 대책/ 김동건
〈현안분석〉
• 납세협력도 상승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모의실험을 중심으로/ 성명재
• 분야별 재정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류덕현
〈해외동향〉
독일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배경과 전망/ 김유찬
〈최신조세 · 재정 해외동향〉
日재무, 재정건전성 위한 소비세 도입 시사 외
〈정책흐름〉
2005회계연도 정부결산
05년말 국가채무 현황
2005회계연도 국유재산 결산결과
2005년 통합재정수지(잠정) 발표
07년 재정은 양극화 해소와 미래사회 대비에 중점
〈재정통계〉
GDP 대비 총조세 비중
〈이런의견 저런생각〉
론스타 과세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외

2006년 5월호(통권 제119호)

〈권두칼럼〉
조세비용의 관점에서 본 재정개혁/ 전주성
〈현안분석〉
•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홍범교
• 영유아 보육재정 지출방식 :기본보조금에 대한 검토/ 김현숙
〈최신조세 · 재정 해외동향〉
인도네시아 정부, 4대 중점산업 재생에 특별 감세안 추진 외
〈정책흐름〉
IMD의 2006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새명칭 공모
전국 871만호에 대한 2006년 공동주택가격 공시
2006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이런의견 저런생각〉
오도된 상속세 폐지론 외

2006년 6월호(통권 제120호)

〈권두칼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세 가지 오해/ 송대희
〈현안분석〉
• 복지지출에 대한 장기적 시각에서의 고찰/ 최준욱
• 법인-비법인 사이의 자원배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효과 분석/ 민희철
• 갬블관련 과세 및 재정정책에 관한 논의/ 김현아
〈정책연구〉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성명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 / 박기백 김현아
실업의 원인과 재정에 미치는 장기효과 / 원종학 김종면 김형준
미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 홍범교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가능성 / 이진규 김진수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한 조세 회피와 그 대응방안/ 노영훈
〈최신조세 · 재정 해외동향〉
일, 법인세 육아비 줄이고 소비세 인상 외
〈정책흐름〉
부담금 운용평가단, 13개의 부담금 폐지 등 제도개선 건의
1인당 지표의 의미와 영향 분석
정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
'국가회계법' 제정안 입법 예고
〈이런의견 저런생각〉
성공적 FTA의 조건 외

2006년 7월호(통권 제121호)

〈권두칼럼〉
결과중심의 예산사업 성과관리/ 최용선
〈창간 10주년 특별기획〉
『재정포럼』에 바란다/ 최 광 외
〈현안분석〉
• 청년실업의 장기비용과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 김종면
• OECD 국가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박노욱
〈정책토론리포트〉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정책흐름〉
경쟁과 정부조달의 효율성 연구
조세 · 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에 관한 연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日, 경기 좋을 때 세금 더 걷는다 외
〈정책흐름〉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2005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개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문제 외
〈권말부록〉
『재정포럼』 총목차(창간호~120호)

2006년 8월호(통권 제122호)

〈권두칼럼〉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조화/ 박완규
〈현안분석〉
적대적 M&A와 관련한 조세문제의 검토/ 김진수
출산율과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거시적 실증분석/ 류

덕현

〈정책토론리포트〉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
-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

〈정책연구〉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김우철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최준욱 류덕현 박형수

금융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과세특례에 대한 연구/ 안종석 권오성

특혜관세제도 확대와 경제적 효과 연구/ 정재호 이명헌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의 도입에 관한 연구/ 박노욱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미-페루 FTA, 미 의회 승인만 남아 외

〈정책흐름〉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부담 경감

2006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대폭 증가

2006년 2/4분기 실질 GDP(속보치) 평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인터넷 조회만으로 간단히

〈재정통계〉

OECD국가의 총조세수입

〈이런의견 저런생각〉

비과세 감면,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외

2006년 9월호(통권 제123호)

〈권두칼럼〉

글로벌 임밸런스하의 재정운영/ 김준영

〈현안분석〉

- 조세 이전소득의 분포/ 성명재
-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우철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지배구조/ 이기영

〈특별기획-2006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경제성장 지원과 조세제도의 선진화에 중점/ 김낙회

평가: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 박정수

평가: 세원투명성 제고의 계기로 삼아야/ 전병목

〈최신조세 · 재정 해외동향〉

세계 6대 조세피난처의 엇갈리는 명암 외

〈정책흐름〉

2006년 세제개편(안)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세제개편안 배경과 국세행정의 합리화 외

2006년 10월호(통권 제124호)

〈권두칼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 구정모

〈현안분석〉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세 및 예산개혁의 방향/ 김승래
-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박명호 · 박노욱

〈특집: 2007년 예산(안)〉

2007년 예산(안)의 주요내용/ 노형욱

2007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Ⅰ)/ 임주영

2007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Ⅱ)/ 박형수

〈기고〉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의 성과와 의의/ 이승재

〈기획〉

2006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 민희철

〈해외동향〉

OECD의 『Revenue Statistics』(2006년판) 발간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주택경기 침체 美GDP 1% 낮출 것 외

〈정책흐름〉

2007년 예산(안) 주요 내용

2007년 국세 세입예산(안)

〈재정통계〉

OECD 국가의 1인당 조세부담금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경제 위기관리 절실하다 외

2006년 11 월호(통권 제125호)

〈권두칼럼〉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 위한 '회계참여'제 도입 시급하다/ 임향순

〈현안분석〉

- 인구변화가 교육지출에 주는 의미/ 정재호
- 출산간격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민희철

〈기획〉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경제적 영향 외

〈정책흐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2006년 3/4분기 가계수지 동향 외

사회보험 적용 · 징수 통합을 위한 입법공청회

〈재정통계〉

OECD 국가의 총조세 세입 변동 추이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미시적 처방에 쏠린 부동산 대책 외

2006년 12월호(통권 제126호)

〈권두칼럼〉

2만달러 문턱을 넘으려면/ 강응선

〈현안분석〉

- 금융자산 양도차익 과세의 장기우대제도에 관한 국제비교/ 홍범교
- 자영업자 사업소득 추정방법에 대한 소고/ 김현숙

〈정책토론리포트〉

알기 쉬운 조세법체계로의 개편방향/ 김완석

〈해외동향〉

일본 세제조사회의 세제개편 건의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2007년도 미국의 소득공제 등 조정내용 외

〈정책흐름〉

최근 경제상황 평가 및 내년 정책방향

OECD, 경제전망 발표

재정보전금제도 개선으로 시 · 군간 재정형평화 효과 제고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및 총조세 대비 소득과세 비중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내년 민생예산 충분히 반영돼야 외

2007년 1월호(통권 제127호)

〈권두칼럼〉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혁의 필요성/ 최용선

최근 5년간『재정포럼』총목차

〈현안분석〉
•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일고/ 박노욱
• 일본의 저출산 · 고령화대책과 시사점/ 원종학
•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에 관한 분석/ 김우철
〈정책토론리포트〉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 방안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2007년 中수출입관세율 어떻게 달라지나 외
〈정책흐름〉
2007년 경제운용방향
내년도 예산 국회 통과
2007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
건물기준시가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총조세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이런 의견 저런 생각〉
2007 부동산 시장에 거는 기대 외

2007년 2월호(통권 제128호)

〈권두칼럼〉
차기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 유일호
〈현안분석〉
• 재정혁신의 평가 및 향후 과제/ 김종면
• 형평화보조금에 대한 논의/ 김현아
〈정책토론리포트〉
복권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EU, 역내 기업활동 활성화 위해 세제개혁 추진 외
〈정책흐름〉
2006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2007년 세법 시행령 · 규칙(안)
'07년 국채발행 및 국채시장 활성화 계획
'06년 재정집행실적 예년에 비해 대폭 개선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총조세 대비 원천징수 재산과세 비중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 개혁, 정치권 결단해야 외

2007년 3월호(통권 제129호)

〈권두칼럼〉
공평한 조세부담이란?/ 원윤희
〈현안분석〉
•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한 검토/ 박형수
•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전병목
〈정책토론리포트〉
납세자 의식과 세정개혁 방향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미국-도미니카공화국 간 FTA 발효 외
〈정책흐름〉
참여정부 4년 경제운영 평가 및 과제
2005년도 정부부문 전체 통합재정 결산 보고
한 · 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 경제교류 전망
〈재정통계〉
OECD 국가의 소비세 비중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조세피난처 더 이상 설 곳 없다 외

2007년 4월호(통권 제130호)

〈권두칼럼〉
예산과정과 예산정치/ 신해룡
〈현안분석〉
•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 비교/ 김진수
• 소득이동성과 빈곤의 관계/ 성명재
〈정책토론리포트〉
금융제도 및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제도
〈정책연구〉
기업인수 · 합병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 · 이준규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김현숙 · 성명재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박형수 · 류덕현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김완석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영국소득 · 법인세 2%p 인하 외
〈정책흐름〉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
한 · 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재정통계〉
OECD 국가의 소비세 비중 Ⅱ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시장실패적 현상과 정부정책의 색깔 외

2007년 5월호(통권 제131호)

〈권두칼럼〉
재정의 효율성과 비영리 조직의 역할/ 박태규
〈현안분석〉
• 주택시장 가격정책에 대한 소고/ 노영훈
•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김 진
〈정책연구〉
WTO DDA 협상과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정재호 · 박순찬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안종석 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평가와 발전방향/ 김정훈 · 김현아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중국, 일본 기업에 이중과세 철회 외
〈정책흐름〉
IMD의 2007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한-EU FTA 협상 개시 결정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금년도 재산세 평균 5.3% 오른다
〈재정통계〉
총재정 규모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한 · EU FTA의 성공전략 외

2007년 6월호(통권 제132호)

〈권두칼럼〉
조세문화의 창달/ 이만우
〈현안분석〉
•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관한 소고/ 안종석
•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 결정에 미치는 효과/ 우석진
•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에 관한 소고/ 정재호
〈정책연구〉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김현

숙 · 류덕현 · 민희철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안종석 · 홍범교
한국의 조세 · 재정정책 평가 모형/ 김승래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김완석 · 한상국 · 박 훈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중국, 이전가격 조작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외
〈정책흐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마무리
한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표
OECD, 경제전망 발표
〈재정통계〉
일반회계 일반재정 세입세출 결산규모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기회다 외

2007년 7월호(통권 제133호)

〈권두칼럼〉
국가재정법과 국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 이인실
〈현안분석〉
• 무형자산의 국제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소고/ 홍범교
• 기혼여성과 소득세: 최적조세이론 관점/ 김현숙
〈정책토론리포트〉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해외동향〉
일본의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7」
〈정책연구〉
과세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중국, 이자소득세 폐지한다 외
〈정책흐름〉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내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개정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확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개통
「OECD 한국경제보고서」발표
〈재정통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액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불투명한 NGO 회계 기부문화 죽인다 외

2007년 8월호(통권 제134호)

〈권두칼럼〉
개방과 국제환경의 변화/ 장근호
〈현안분석〉
• 지역간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김현아
• 소득세 누진구조의 효과와 한계/ 최준욱
〈정책토론리포트〉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 도입방안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클린 에너지법, 美 하원 통과 외
〈정책흐름〉
경유 및 LPG 부탄 세율 조정 적용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2007 지방세법 개정 추진
〈재정통계〉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고령화의 '해법' 주택연금 외

2007년 9월호(통권 제135호)

〈권두칼럼〉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현재와 미래/ 김유찬
〈현안분석〉
• 우리나라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및 평가/ 박노욱
• 공무원 및 공적부문 임금 결정/ 원종학
〈특별기획〉
2007년 세제개편의 방향 및 주요내용/ 김낙회
2007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Ⅰ)/ 이철인
2007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Ⅱ)/ 전병목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日, 소비세 1%p 인상추진…연금재원 확보 위해 외
〈정책흐름〉
2007년 세제개편(안)
금년도 국세징수 실적 호조
세수추계 오차 발생원인과 개선방안
〈재정통계〉
연도별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총괄내역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기금 독립 운용, 효율 높일 계기다 외

2007년 10월호(통권 제136호)

〈권두칼럼〉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국가재정/ 김동건
〈현안분석〉
• 수익자부담 원칙의 이해/ 박상원
• 경쟁위탁(competitive sourcing)의 이해와 현황/ 김 진
〈특별기획〉
저출산 · 고령화 대비 사회투자 확대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김용호
사회적 투자의 활성화를 실험하는 2008년 예산안/ 이원희
국가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편성/ 우석진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美 재무 · 상무부, 인터넷서비스 과세 영구유예 요청 외
〈정책흐름〉
내년도 예산 257.3조원 편성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도입 추진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
'세금부담 계산기' 다시 두드려 보니…
지방세 비과세 · 감면현황 일제 조사
〈재정통계〉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지출액(연도별)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수익률 2%P 상승, 갈 길 먼 국민연금 외

2007년 11월호(통권 제137호)

〈권두칼럼〉
세계화 그리고 양극화/ 유일호
〈현안분석〉
• 소득분배 및 재분배구조: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성명재
•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김승래
• 근로연계복지제도(In-Work Benefits)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전병목
〈특별기획〉
제도설계이론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김 진
〈최신조세 · 재정 해외동향〉
美-EU, 에탄올 면세 브라질案 거부 외
〈정책흐름〉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최소 43% 세부담 경감

최근 5년간『재정포럼』총목차

2007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7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소득증가 및 소득공제 확대로 지난 5년간 세부담 변화 미미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민자사업 발굴
내년부터 비상임이사·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실시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조정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200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표
〈재정통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규모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다 외

2007년 12월호(통권 제138호)

〈권두칼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과제/ 온기운
〈현안분석〉
• 지방정부 재정위기관리에 대한 논의/ 김현아
•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을 이용한 담배제품 수요의 추정/ 민희철
• 「매입사업자」제도 도입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합리화 방안/ 김재진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 민주 주자들 중산층 논쟁...오바마 과세확대 주장에 힐러리 반대 외
〈정책흐름〉
2007년도 조세지출 전망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160조 8,003억원 편성
2008년 경제전망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2007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과정별 성과향상 유도에 중점
경영평가제도,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경영을 확산
〈재정통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외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대선과 새해 예산안 외

2008년 1월호(통권 제139호)

〈권두칼럼〉
혜안이 필요한 올해 경제전망/ 최홍식
〈현안분석〉
• 실질소득 보장과 소득세제/ 전병목
• 정치적 연결이 공기업 보조금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민희철
〈정책토론리포트〉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정책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中, 성장 덕에 세수도 빠른 증가 외
〈정책흐름〉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안)
2007년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2008년 상반기중 예산의 62.4% 배정
창의적인 업무 개선으로 7,637억원 재정성과 제고
2007년 현금영수증 발급액 50조원 돌파
종합부동산세 신고결과(잠정치) 발표
2008 지방세법령 개정 시행
〈재정통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 외
〈이슈 & 포커스〉
새 정부, 경제정책 두 토끼잡기 3대 딜레마 외

2008년 2월호(통권 제140호)

〈권두칼럼〉
부동산정책과 실용주의/ 전형수
〈현안분석〉
•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김우철
•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시사점/ 손원익
•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방안/ 박노욱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中 투자기업, 10년 안 돼 청산땐 감면받은 세금 토해내야 외
〈정책흐름〉
2007년 국세징수 실적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2007년 12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계획 수립
정부 일자리사업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중국투자기업 세무 청산,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소득조적을 통한 세금탈루행위 엄정 대처
자동차세 세율규간 축소 및 세율 인하
〈재정통계〉
조세체계의 변천 외
〈이슈 & 포커스〉
'법인세 5% 인하' 실효성 논란 외

2008년 3월호(통권 제141호)

〈권두칼럼〉
조세제도 개혁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안종범
〈현안분석〉
• 주요국의 공무원 임금교섭 제도/ 김종면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추정모형에 대한 소고/ 전병힐
〈정책토론리포트〉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기고〉
일할수록 채워주는 희망살림이, 근로장려세제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中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세재개편 급물살 외
〈정책흐름〉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예산 10% 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을 적극 지원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도입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상 조치 마무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국가회계법」시행을 위한 후속업무 본격 추진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출범
〈재정통계〉
국세·지방세 비중 추이 외
〈이슈 & 포커스〉
국내기업 조세 역차별 없앤다 외

2008년 4월호(통권 제142호)

〈권두칼럼〉
공공부문 개혁이 성공하려면/ 오연천
〈현안분석〉
• 미국 PBGC(연금지급보증공사)의 재정위기 경험과

시사점/ 김진수
- 공공부문 평가와 성과정보에 관한 소고/ 김 진
- 유효세율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 분석/ 박명호

〈정책토론리포트〉
한 · 중 부동산 세제 개혁 국제 세미나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美상원, 주택시장 부양 세금 공제안 통과 외
〈정책흐름〉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2008년 OECD 통계연보(FackBook) 발간
서민생활안정 T/F 회의 개최
'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
국세행정 성과, 국민이 평가
〈재정통계〉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이슈 & 포커스〉
근로자가구 10% "일해도 빈곤층" 외

2008년 5월호(통권 제143호)

〈권두칼럼〉
바람직한 신정부의 세제개편 방향/ 김성태
〈현안분석〉
- 자동차 관련 세제정책의 방향/ 김승래
- 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현황과 정책과제/ 우석진 · 조진권

〈정책토론리포트〉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
〈정책연구〉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증분석/ 박기백 · 박상원 · 손원익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박형수 외
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김정훈 · 김현아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김우철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 · 김재진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미국, 1억 3천만가구에 세금 환급 외
〈정책흐름〉
'08. 1분기중 (1~3월)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3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 개최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재정전략 논의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조세감면제도의 대폭 정비
우리 지역 살림살이, 한눈에 확인
〈재정통계〉
내국세 납세 인원 외
〈이슈 & 포커스〉
재정부 법인세는 낮춰도...소득세 인하 고려 안 해 외

2008년 6월호(통권 제144호)

〈권두칼럼〉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민영화만이 해법인가?/ 김동진
〈현안분석〉
- 분기소득과 연간소득의 연계성으로 살펴본 소득재분배의 정책방향/ 성명재
- 법인세 부담 구조 분석/ 전병목
-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소비 대체효과 추정/ 송호신

〈정책연구〉
자본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안종석 · 전병목
출산율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 · 재정정책/ 우석진 · 민희철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노영훈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원종학 · 성명재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김승래 · 김우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김승래 · 박명호 · 홍범교
보건 · 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김종면 · 김우철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김형준 · 박명호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유로존 재무장관, 유류세 인하 반대 외
〈정책흐름〉
근로자 ·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정책
'08년상반기 세법 · 시행령 개정(안)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폐지를 2008. 6. 1. 시행함
IMF와의 조세개혁 워크숍 개최
2007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국세청 홈택스 방문자 2억명 돌파
7월 1일부터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재정통계〉
조세범칙 조사 실적 외
〈이슈 & 포커스〉
국민연금 등 공적지출, 5년새 54.4% ↑ 외

2008년 7월호(통권 제145호)

〈권두칼럼〉
개혁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이만우
〈현안분석〉
-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위험/ 박기백
- 예산절감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제도의 개선방향/ 김재진

〈정책토론리포트〉
납세자 권리보호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정책연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김승래 · 박명호 · 홍범교
보건 · 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김종면 · 김우철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손원익 · 박태규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러시아 등 식량수출 규제 완화 외
〈정책흐름〉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경제안정 종합대책: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보도 관련 입장
6월 및 08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신용카드전표 보관의무 폐지 및 공제신청 간소화
지방 미분양주택 취 · 등록세, 빠른 곳은 7월 1일부터 감면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중산 · 서민층 유류비 지원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도모
〈재정통계〉
연도별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외
〈이슈 & 포커스〉
〈하반기 경제운용〉 소득세율 1%p 인하되나 외

2008년 8월호(통권 제146호)

〈권두칼럼〉
활기찬 시장경제 정권교체 정체성에 길이 있다/ 배병휴

최근 5년간『재정포럼』총목차

〈현안분석〉
• 기준조세체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김종면
• 평균 은퇴연령에 대하여/ 전병힐
〈정책토론리포트〉
조세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해외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미, 세름환급 효과 '반짝' 외
〈정책흐름〉
주 · 토공 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착수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및 재정사업 발주 현황
'07년도 경영평가 부진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본격 착수
7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08. 6월 및 2/4분기 산업활동동향 분석 및 평가
외부전문가 세무조사대상 선정절차에 참여
경영애로 기업의 납세유예시 담보면제 대폭 확대
갑급세 등 원천세, 매월 신고 · 납부에서 6개월에 한 번으로
지방재정에대한 궁금증, 한 번에 푼다
〈재정통계〉
소득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교육세 · 농특세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외

2008년 9월호(통권 제147호)

〈권두칼럼〉
규제철폐, 공기업 민영화 드라이브로 정권 정체성 찾아야/ 추창근
〈현안분석〉
•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예결산 분석/ 박노욱
• 보세판매장제도 개선방안/ 원종학
• 한국 지방상수도사업의 광역화 논의에 대한 실증분석/ 김지영
〈기획특집〉
2008년 세제개편안의 방향 및 주요내용/ 최영록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Ⅰ/ 손원익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Ⅱ/ 이 영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주택경기촉진법 시행 외
〈정책흐름〉
2008년 세제개편(안)
'08년 세제개편 세수효과 및 세부담귀착 변동사항
신고하지 않은 세금까지도 국세청에서 찾아드립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재정통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외
〈이슈 & 포커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 "부동산 투기 잡는 데 세금 쓰면 곤란" 외

2008년 10월호(통권 제148호)

〈권두칼럼〉
기본에 충실한 정책연구를 기대하며/ 전주성
〈현안분석〉
• 조세 ·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 구조 및 빈곤율에 미친 영향 분석/ 성명재
• 국방조달계약에서의 비용절감유인/ 김 진
•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 박명호
〈기획특집〉
2009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조규홍
2009년 예산안 평가 Ⅰ/ 박정수
2009년 예산안 평가 Ⅱ/ 송호신
〈정책토론리포트〉
2008년 세제개편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주요국의 조세동향〉
중국 첨단기술기업 지위에 대한 세부요건 외
〈정책흐름〉
2009년 예산안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공포
2009년 국세세입 예산(안)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08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세제
알쏭달쏭 중소기업 해외세금문제, 국세청이 도와드립니다.
〈재정통계〉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외
〈이슈 & 포커스〉
"유가환급금 지급시 GDP 0.05%↑" 외

2008년 11월호(통권 제149호)

〈권두칼럼〉
적극적 경기부양이 필요하다/ 온기운
〈현안분석〉
• 영국의 정부간 재원배분 현황과 시사점/ 안종석
• 정부지출의 국제비교/ 박기백
• 비권장재(demerit goods) 관점에서 본 담배 · 주류 · 갬블 과세/ 박상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수웨덴 수상 감세안 발표 외
〈정책흐름〉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한 · 미 양국간 통화스와프 체결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정기 세무조사 전면 유예
〈재정통계〉
업종별 표준소득률 조정 현황(1987~2001) 외
〈이슈 & 포커스〉
"소득세 등 '직접세 감세' 양극화 키운다" 외

2008년 12월호(통권 제150호)

〈권두칼럼〉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정책/ 이인실
〈현안분석〉
•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손원익
• 재정수지가 민간저축에 미치는 효과/ 김우철
• 카드결재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호주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김재진
〈정책토론리포트〉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성과 및 과제
〈주요국의 조세동향〉
아일랜드 2009 예산안 외
〈정책흐름〉
세법 개정에 따른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적용사례 및 08년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변동사례(환급금액)
2008년도 조세감면액(잠정)
IMF, 아시아지역 경제성장 전망 발표
최근 감세안 재정지출 관련 주요 이슈 정리
2008년 3분기 가계수지 동향 분석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일용근로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안내
예산성과금, 지역주민에게도 지급한다
〈재정통계〉
양도소득세 부과 외
〈이슈 & 포커스〉
4대 국책㈜ 원장 경제진단 "위기상황 아래선 타이밍

이 가장 중요" 외

2009년 1월호(통권 제151호)

〈권두칼럼〉
경제위기와 재정의 역할/ 원윤희
〈현안분석〉
• 국제비교를 이용한 참여정부 재정분권 수준 평가/ 김현아
• 사회 서비스의 민간위탁과 성과계약 :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박노욱
• 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김종면
〈정책토론리포트〉
중소기업 상속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해외동향〉
독일의 2008/2009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평가
〈주요국의 조세동향〉
독일 상속세법 개정 외
〈정책흐름〉
2009년 경제운용방향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발간 계획
'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재정통계〉
법인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경제위기와 재정의 역할 외

2009년 2월호(통권 제152호)

〈권두칼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민영화/ 송대희
〈현안분석〉
•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 분석/ 김우철
•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송호신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소고/ 전병힐
〈해외동향〉
2009년도 일본의 세제개편
〈주요국의 조세동향〉
프랑스 경기부양 종합대책 외
〈정책흐름〉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2008년 국세징수 실적
08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IMF의 G-20 국가 경제성장전망 수정 발표
유가환급금 수령자 설문조사
선진 조세체계 구현을 위한 목적세 정비 추진 필요성
근로사실이 불확실한 53만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미분양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확대
〈재정통계〉
업종별 법인 수 외
〈이슈 & 포커스〉
"자본소득 세제 일원화를" 외

2009년 3월호(통권 제153호)

〈권두칼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소고/ 박완규
〈현안분석〉
• 성과예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김 진
• 미분양 완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에 대한 소고/ 박명호
〈기획〉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정책토론 리포트〉
주요국 국세행정 개혁사례 및 시사점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의 경기부양법안 외
〈정책흐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추진
제43회 납세자의 날 행사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에 따른 우리 경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발표
세법 개정으로 발생되는 양도세를 조기에 찾아 돌려드립니다
납세자 2천만명 세금포인트 부여·우대혜택 제공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경제회복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자금 조기배정
〈재정통계〉
법인세 환급금 외
〈이슈 & 포커스〉
경제인문사회硏 "성장 1%p 올리려면 최대 20조 필요" 외

2009년 4월호(통권 제154호)

〈권두칼럼〉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한다/ 임주영
〈현안분석〉
• 가계소득구성의 변화와 소득불평등 기여도 분석: Shorrocks 분해를 중심으로/ 성명재
• 유류세의 이해 및 국제 비교: 휘발유와 경유를 중심으로/ 조명환
• 양도소득 중과제도 개정안의 의의와 향후 과제/ 박명호
〈정책연구〉
저소득층 소득보전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성명재·강신욱·이철인
물가연동세제의 도입 연구/ 성명재·박상원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 김우철·이우진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박형수
간접투자세제의 개선방안/ 홍범교·김재진·김진수·전병목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융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 전환 연구/ 김지영·박상원
소득세 과세단위에 관한 연구/ 전병목·박명호·김완석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의 조세회피방지 노력 외
〈정책흐름〉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08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 소득세 부담 줄어
경제회복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자금 추가배정
〈재정통계〉
자산재평가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탄소세 도입하고 환경세는 통합 외

최근 5년간『재정포럼』총목차

2009년 5월호(통권 제155호)

〈권두칼럼〉
경제패러다임 시프터/ 김준영
〈현안분석〉
- 탄소세 도입과 경제적 효과/ 김승래
-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제도의 비교 조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정재호

〈정책연구〉
적정 조세체계에 관한 연구/김승래 · 김형준 · 이철인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박노욱 · 원종학 · 김 진 · 박명호
우리나라 성 인지 예산 및 조세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박노욱 외
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김정훈 · 김현아
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관한 연구/김승래 · 박상원 · 김형준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관한 연구/안종석
〈정책토론리포트〉
소득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국제조세 관련 조세개혁 방안 발표 외
〈정책흐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 추진
우리나라의 1인당 GDP에 대한 IMF 전망 관련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국회 본회의 의결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 국회 의결
내년 재정목표 '위기 후 기회 선점 · 재정건전성 확보'
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전국 지방세 고지서 전자메일로 받아요!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조세연구원장 "양도세 중과폐지 필요"외

2009년 6월호(통권 제156호)

〈권두칼럼〉
선진화는 제도보다 의식이 중요/ 강응선
〈현안분석〉
- 유럽 지역정책과 신지리경제학/ 김정훈
- 골프장의 조세문제/ 노영훈
- 미국 EITC의 태동과 시대상황/ 김재진

〈정책연구〉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 최준욱
고령자의 노동공급과 조세 · 재정정책/ 원종학 · 김종면 · 전병힐 · 우석진
관세율 체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재호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박명호 · 김봉근 · 김정권
조세 · 재정모의실험모형/ 성명재 · 전병목 · 전병힐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재정정책의 세대간 형평성 효과 연구/안종범 · 이상협 · 전영준 · 김진
〈주요국의 조세동향〉
대만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인하 국회 승인 외
〈정책흐름〉
제10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
2009년도 1/4분기 가계동향 분석
2009년도 1/4분기 통합재정수지(잠정)
상속 ·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인하
행정안전부, 고액 · 상습 체납액 강력한 정리 추진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외
〈이슈 & 포커스〉
아이 안 낳는 코리아 '재앙폭탄' 째깍째깍 외

2009년 7월호(통권 제157호)

〈권두칼럼〉
금융세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최흥식
〈현안분석〉
-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박노욱
-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 서울시와 세계의 대도시 비교를 중심으로/ 김현아

〈정책토론리포트〉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익 향상 방안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외부불경제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 개편방안
거대경제권과 FTA체결에 따른 기본관세율 개편방안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
〈주요국의 조세동향〉
대만 법인세 및 조세징수법 개정 외
〈정책흐름〉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117.5조원 집행, 목표 대비 106.8% 달성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외
〈이슈 & 포커스〉
조세감면 증가율, 국세수입 증가율 상회 외

2009년 8월호(통권 제158호)

〈권두칼럼〉
성급한 주택정책 전환은 시기상조/ 손재영
〈현안분석〉
-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최준욱
-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분야의 에너지 수요 탄력성 추정/ 김지영
- 조세구조(tax mix)에 대한 일고/ 김진
-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 보유 제한에 대한 타당성 검토/ 김진수

〈정책토론리포트〉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스위스 탄소세율 3배 인상 외
〈정책흐름〉
친(親)서민 세제지원 방안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
한-인도 CEPA 현상결과 및 기대효과
2009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2008년도 재정사업 평가결과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현황 점검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국세청 홈택스 방문자 3억명 돌파
지방세납부영수증 별도로 보관하지 마세요
〈재정통계〉
특별소비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법인 · 소득세 감세 유지하되 공제는 축소" 외

2009년 9월호(통권 제159호)

〈권두칼럼〉
녹색성장과 새 문화창달을 위하여 철도 투자는 확대

되어야/ 김동건

〈현안분석〉

- 확률적인 전망 방법을 이용한 국가채무 전망/ 송호신
- 일반균형모형에서 Ramsey의 규칙에 대한 재해석/ 김형준
- 주요국의 조세지출예산제도 운용사례와 시사점/ 박명호

〈특집〉

서민친화적 세제개편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 방안/ 안택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장근호

2009년 세제개편안 평가: 총평 중심으로/ 박상원

2009년 세제개편안 평가: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박명호

〈기고〉

재산평가에 대한 小考 외

〈주요국의 조세동향〉

영국 경기침체에 따른 급격한 세수감소 외

〈정책흐름〉

민생안정 ·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도 세제개편안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재정부문 대응방안

국세청, 최초로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발표

2008년 세무조사 실적 공개

〈재정통계〉

주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녹색성장 바람직한 세제개편은..." 외

2009년 10월호(통권 제160호)

〈권두칼럼〉

친서민 친기업은 동반관계/ 배병휴

〈현안분석〉

- 우리나라의 의료수요 탄력성 추정/ 전병목
- 소득분배 동향 고찰/ 성명재

〈특집: 2010년 예산안〉

민생안정 · 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 · 기금안 주요 내용/ 안일환

2010년 예산안 평가/ 홍승현

〈정책토론리포트〉

우리나라 조세, 대외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의 중장기 예산안 발표 외

〈정책흐름〉

민생안정 · 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 · 기금안 주요 내용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지침 마련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민간 실집행률 94.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녹색성장산업 지원방안 마련

IMF, 세계경제 전망 발표

『영세납세자지원단』 4개월 만에 1만명에게 서비스 제공

〈재정통계〉

상속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외국기업, 한국은 세금으로 가장 힘든 나라 외

이 내용들의 원문들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 (www.kipf.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포럼

2009년 11월호 통권 제161호

■ **발 행 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 행 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 집 위 원** /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 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월간 재정포럼**
2009년 11월 16일 발행 / 제14권 제11호(통권 제161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 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 · 전화 · FAX · 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 · 이름 ·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